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8월

박사학위논문

OECD 국가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치 원

# OECD 국가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Women's  
Fertility Rat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OECD Countries

: Focusing on Social Capital and Work-Family Balance Policy

2022년 8월 2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치 원

# OECD 국가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중심으로 -

지 도 교 수 김 용 섭

공동지도교수 박 희 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 치 원

## 최치원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오세운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진동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성백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희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삼	(인)

202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방법 .....	7
<b>제2장 이론적 배경</b> .....	8
제1절 출산율 .....	8
1. 출산율의 개념 .....	8
2. 출산 페리다임 변화와 저출산 정책 .....	10
3. 출산율의 영향요인 .....	15
제2절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	32
1. 주관적 삶의 질 개념 .....	32
2. 주관적 삶의 질 구성요인 .....	36
3.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	39
제3절 사회자본 .....	51
1. 사회자본의 개념 .....	51
2.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	54
3. 사회자본 연구의 과제 .....	57
제4절 일·가정양립정책 .....	59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	59
2. 일·가정양립정책의 구성요인 .....	63
3. 일·가정양립정책 연구의 과제 .....	67
제5절 본 연구의 개념 틀 .....	68

<b>제3장 연구 설계</b> .....	70
제1절 연구모형 .....	70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71
1. 분석자료 .....	71
2. 분석대상 .....	72
제3절 주요변인의 정의 및 측정도구 .....	72
1. 출산율 .....	73
2. 주관적 삶의 질 .....	74
3. 사회자본 .....	74
4. 일·가정 양립정책 .....	76
5. 통제변인 .....	76
제4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	78
1. 분석방법 .....	78
2. 분석모형 .....	81
<b>제4장 실증분석</b> .....	83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83
1. 개인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	83
2. 국가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	85
3. 주요변인 기술통계 .....	86
4. 주요변인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	96
제2절 연구모형 분석 .....	104
1. 기초모형 분석 .....	104
2. 중간모형 1 :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	107
3. 중간모형 2 :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	112
4. 중간모형 3 :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	115
5. 중간모형 4 : 출산율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	118
6. 연구모형 1 :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	120

7. 연구모형 2 :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	128
제3절 논의 .....	131
1. OECD 9개국별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 사회자본, 일·가정양립 정책 수준 .....	131
2.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다층분석 타당성 검토 .....	133
3.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	133
<b>제5장 결론</b> .....	14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4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145
1. 이론적 시사점 .....	146
2. 실천적 시사점 .....	149
3. 정책적 시사점 .....	153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	155
<b>참고문헌</b> .....	158
<b>부    록</b> .....	185

## 표 목 차

<표 1> 출산율 측정 .....	73
<표 2> 주관적 삶의 질 .....	74
<표 3> 사회자본 .....	75
<표 4>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측정 .....	76
<표 5> 공공가족급여 측정 .....	76
<표 6> 개인수준 통제변인 측정 .....	77
<표 7> 국가수준 통제변인 측정 .....	78
<표 8>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 .....	80
<표 9> 개인수준변인 일반적 특성 .....	83
<표 10> 국가수준변인 특성 .....	85
<표 11> 출산율의 기술통계 .....	87
<표 12> 주관적 삶의 질 기술통계 .....	88
<표 13> 사회자본 기술통계 : 대인신뢰 .....	91
<표 14> 사회자본 기술통계 : 조직신뢰 .....	92
<표 15> 사회자본 기술통계 : 관계망 .....	93
<표 16> 사회자본 기술통계 : 규범 .....	94
<표 17> 일·가정양립정책 기술통계 .....	95
<표 18> 다중공선성 진단 .....	98
<표 19> 자료의 정규성 검증 .....	99
<표 20> 개인·국가수준 요인 상관관계 .....	103
<표 21> 행복감 기초모형 분석결과 .....	104
<표 22> 삶 만족도 기초모형 분석결과 .....	105
<표 23> 출산율 기초모형 분석결과 .....	107
<표 24> 행복감에 대한 개인요인 분석결과 .....	109
<표 25>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요인 분석결과 .....	111

<표 26> 출산율에 대한 개인요인 분석결과 .....	114
<표 27> 행복감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	116
<표 28> 삶 만족도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	117
<표 29> 출산율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	119
<표 30>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	123
<표 31>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	125
<표 32>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	130

## 그림 목 차

[그림 2-1] 삶의 질 통합모형 .....	36
[그림 2-2] 연구의 개념적 틀 .....	68
[그림 3-1] 연구모형 .....	70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Women's Fertility Rat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OECD Countries

: Focusing on Social Capital and Work-Family Balance Policy

Choi, Chi Won.

Advisor: Prof. Kim, Yong seob, Ph.D.

Co-Advisor : Prof. Park, Hwie seo,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social capital measured at the individual level and work/family By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policies measured by 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n women's fertility rat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using multi-layered analysis, we identify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explanatory variables that explain women's fertility rat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to improve women's fertility rat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fertility rate is the number of children in wome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s evaluated as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variables of social capital are private interpersonal trust, social interpersonal trust, social organization trust, government organizational trust, informal group network, formal group network, As a norm, the

sub-variable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were examined as wealth-paid maternity leave, breast-feeding maternity leave, public family benefit cash, and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Individual level measurement control variables are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The national level measurement control variable is income inequality.

Personal level analysis data is the World Value Survey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which has been surveying items on estimated rates,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values every five years in more than 80 countries from 1981 to the present. For national level analysis,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mothers/fathers (2018) was used to secure data on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and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15) was the latest data on public family allowance expenditure.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2017) indicators were used.

The subjects of individual level analysis are women aged 20-49, and the subjects of national level analysis are 9 OECD countries. A total of 4,113 wome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 the nine OECD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ere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Mexico, Turkey, Greece,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for Window 27,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HLM 8.20 for Windows program.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effect does social capital (private interpersonal trust, social interpersonal trust, social organization trust, government organizational trust, informal group network, formal group network, norms) have on women's fertility rat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happiness, life satisfaction) does it affect

Second, how does work-family balance policy (wealthy paid maternity leave, breast-fed maternity leave, public family benefit cash,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affect wo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happiness, life satisfacti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female fertility rate, the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female fertility rate showed that when only individu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put, the higher the trust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higher the informal group network, the higher the fertility rat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trust in social organization, the lower the fertility rate. It was found that private interpersonal trust, social interpersonal trust, formal group networks, and norms had no effect. Even after additional nation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added, the birth rate was still higher as trust i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informal group networks increased, and the higher the trust in social organizations, the lower the birth rate., the norm appeared to have no effec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women's happiness, when only individu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pu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ivate interpersonal trust, the trust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e higher the informal group network, the higher the norm.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ocial interpersonal trust and the higher the official group network, the lower the sense of happiness. It was found that trust in social organization had no effect. Even after additional nation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added, the sense of happiness increased as the private interpersonal trust, government organizational trust, informal group network, and norms increased. was found not to be reach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women's life

satisfaction, when only individu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put, life satisfaction increased as private interpersonal trust, government organization trust, formal group network, and norms increased., the informal group network did not affect the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additional input of nation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life satisfaction increased as private interpersonal trust, government organizational trust, formal group networks, and norms increas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on women's fertility rate, when only nation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put, the fertility rate increased as wealth paid maternity leave, public family benefit cash, and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increased. The higher the number, the lower the birth rate. After additional individual 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added, the feeling of happiness increased as the amount of wealth paid maternity leave and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increas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on women's happiness, when only nation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put, the feeling of happiness increased as wealth paid maternity leave, public family benefit cash, and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increased. It did not affect happiness. Even after adding individual-level measurement variables, the feeling of happiness increased as the amount of maternity leave, public family benefit cash, and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increased, and breast-feeding leave did not affect happines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on women's life satisfaction, when only national 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put, life satisfaction increased as the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increased. Cash had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fter additional individual level measurement variables were added, maternity leave, breastfeeding leave, public family benefit cash, and public family benefit in-kind had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if the multi-layered analysis is conducted with the fertility rate and life satisfaction as dependent variables and population/economic factors, work-family balance policy factors, and social capital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demographic/economic factors, work-family balance, etc. While the influence of some variables, such as policy factors, disappeared, social capital factors continued to have an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although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and work-family balance policy factors affect the fertility rate and life satisfaction for women, it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greater effect when combined with social capital factors. Conclusion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Keywords: Women's Fertility Rate, Subjective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Feeling of Happiness, Social Capital, Work-Family Balance Policy, HLM**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출산율 제고에 대한 고민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 국가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일찍이 OECD 국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험되어 온 저출산 현상은 현재도 미주, 유럽의 많은 국가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Kohler, et al., 2002).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 노인부양비용 증가,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김영미, 2018; Sleebos, 2003)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1983년 대체출산율 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초저출산(lowest-low) 수준인 1.3명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통계청, 2021) 2018년(0.98명)에 처음 1명 밑으로 내려간 뒤에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0.81명(통계청, 2022)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적 추세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겪어온 다른 나라들의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하는 특징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욱 어려운 점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집행되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6년부터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들이 수립·운영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06~10)에 19.7조 원, 제2차 기본계획(11~15)에는 61.1조 원이 투입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108.4조 원을 투입하였다(통계청, 2020).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20)은 15년 동안 약 189조 이상이 최종 집행되었고 2022년 현재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4차 기본계획(21-25)이 실행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22).

출산이 여성 또는 개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적 선택(Freedman, 1979; d'Addio & d'Ercole, 2005)이며 정책이 적용되는 시차와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적 문제의 가능성(양영철, 2019)을 고려할 때 그 동기와 행태를 국가 단위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제3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이렇다 할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 내년에는 0.68명으로 더 떨어진다는 전망(통계청, 2021)이 나올 정도로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출산은 경제적, 문화적, 상황적 요인이 특정한 시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까지 포괄하여 선택하는 개인과 가족의 중대 사안으로 특정 하나의 요소에 의존하거나 결정되어 지지 않는다(Balbo, et. al., 2013). 그러나 기존 출산율 정책은 출산율 향상과 국가의 경제적 이득 측면, 즉 미래의 노동력 확보 혹은 국가의 발전 측면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에(홍성희, 2021) 정부 출산율 대응 정책 역시 수치적·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에만 관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이 머무르지 않았느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나아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출산율 기피하는 젊은이들 개인의 가치 의식까지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 의한 정책적 과욕의 결과로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박휴용·여영기, 2014; 현정환, 2005; 윤성호, 2012)로만 인식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학문별 연구들 또한 저출산 문제의 일반적 원인요인을 찾는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증연구가 부족하며(이삼식 외, 2016; 정성호, 2009) 경험 연구의 경우에서도 국가·지자체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분석 단위로 발생 되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과 같은 거시 단위의 수치적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출산 주체인 여성의 다양한 삶을 살펴보거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위 요인들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규명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16; 오민지, 2021). 더불어 개인을 단위로 진행된 출산 관련 연구들의 경우 인구·경제학적 요인에 대한 논의 외에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에 요인에 관해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오늘날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초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론만을 두고 보면, 기존 저출산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적 연구가 간과해 왔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출산으로 갖는 행복과 삶 만족이 홀로 생활하는 개인의 그것보다는 더 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많은 OECD 국가의 여성들은 현재의 행복과 삶 만족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김경희 외, 2018). 출산은 개인 혹은 여성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내가 키우는 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아이를 키우는 성인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다. 일상생활에서 양육 시간과 개인의 일상 자유시간이 서로 거래관계(trade-off)인가 또는 상승 관계(synergy)인가에 따라 출산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양자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엇갈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존 저출산 정책효과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출산을 관련 연구에서는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대체적인 관계성 추이에 관한 연구조차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김경희 외, 2018; 이도훈 외, 2020). 이는 기존 저출산 문제에 관한 대응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정책수요자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한 상황과 다양한 욕구(needs)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기인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출산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며 특히 경제의 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여성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구가 변화하고(Inglehart, 1997) 있는 오늘날 출산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개인의 인구·경제적 변수 이상으로 인간 관계적 측면인 사회자본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인 일·가정양립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희봉, 2009; 김경희 외,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누락 되거나 간과되었던 출산 결정요인들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적(개인) 요인과 국가정책 요인을 살펴보았다.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단위 사회자본을 OECD는 개념, 가치, 그리고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를 함께 공유하는 친구, 가족, 동료 등의 인간관계를 지칭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2007). 이러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자원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어려움 해소,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같은 유용한 방식으로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어(김두섭, 2008; 정미숙·김준수, 2021) 여성의 삶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출산율 저하와 여성의 사회적 삶에서 동등한 기회 제공의 제한이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최정화, 2022).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양립정책 요인 또한 출산율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 운용은 출산의 주체나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이도훈 외, 2020; 오민지, 2021). 이러한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정책효과와 정책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의 문제는 여성(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관련 대응 정책의 가장 주요한 정책대상이며 출산의 1차적 주체인 여성 개개인의 상황과 다양한 삶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는 세 차례 진행된 저출산 기본계획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기반으로 양적인 출산을 제고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세계적 조사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현상에 관한 기존 정책과 선행연구의 한계는 무엇이며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개인 단위 사회자본 요인과 국가 단위 일·가정양립정책을 고려한 다층적 연구를 통해 요인들이 미칠 수 있는 일반화된 영향력을 실증적 관점에서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문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의 사려 깊은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면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여 개인 단위 사회자본 요인과 국가 단위 일·가정양립정책 요인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반한 정부의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인 신뢰(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관계망(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은 OECD 국가 여성의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일·가정양립정책(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은 OECD 국가 여성의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WVS2020(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의 조사 시기는 2017년~2019년이며 2019년에 최종자료수집 및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어 2020년에 자료가 공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WVS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와 복지제도를 갖춘 자본주의 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국가의 경제, 정치의 체계와 복지제도의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출산율,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류아현·김교성, 2022)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OECD 9개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981년부터 5년마다 세계 8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출생아, 주관적 삶의 질,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에 관하여 조사 해온 미국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데이터에 포함된 OECD 국가 중 호주,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일본,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이다. 이는 본 연구가 활용하는 두 가지 자료인 WVS와 OECD Family Database의 가용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패널 자료 각각의 문항이 응답자의 폭넓은 생애 전반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있고, 연구에서의 이론적 논의 또한 출산 및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한 광범위한 선행연구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실제적인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보다 넓다고 할 수 있겠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식과 행태에 따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며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왔거나 학문 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실증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인 수준의 패널 조사 자료와 국가 수준의 정책 자료들을 병합하여 검증을 시행하였다.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WVS데이터의 WVS2020년 자료와 각 국가의 일·가정양립정책 자료를 수집한 후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여 일원 분산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출산율

#### 1. 출산율의 개념

##### 1) 출산율 정의

한 국가의 출생에 대한 지표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율 등이 있으나, 국가의 저출산 현상의 판단과 논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 TFR)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코호트(cohort) 합계출산율로 여성 1명이 가임기 또는 특정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견되는 평균적인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당해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율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학자마다 이견의 여지를 나타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은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 수준으로(Craig, 1994) 저출산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보다 낮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은 초(超)저출산 수준에 해당된다(Teitelbaum, et, al., 2004; Kohler, et, al., 2006). 근래에는 대체출산율 수준으로 규정되는 합계출산율 2.1명 대신 출생아 수 1.5명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안전선(safety zone)으로 삼고 이를 논의의 기준으로 두기도 한다(McDonald, 2006; 최윤희, 2019).

‘저출산’이라는 단어의 함의가 인구문제의 책임을 개인인 여성에게 지우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2018년을 기점으로 ‘저출산’을 대신하여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국회의원 발언이나 정부의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살펴보면 이들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모성을 도구화하려는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편견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出産)과 출생(出生)이라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

차이를 고려할 때, 출산을 출생이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대체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또한 국가정책의 관점에서도 각기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맞춘 정책과 출생아 수에 기반한 정책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어(오민지, 2021) 단어의 세세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2) 저출산 영향

통계청(2022)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2). 이러한 저출산은 여성의 임신·출산의 지연과 연결되며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질 의향이 없다거나 현재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Kohler, et. al., 2006). 또, 기본적으로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여성의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개인 또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게 되는(Kohler, et. al., 2002)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바라볼 수 있다(d'Addio & d'Ercole, 2005).

저출산 현상이 초래하는 사회문제는 개인의 선택사항을 넘어 인구절벽 문제를 심화시키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시장 둔화의 원인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장기화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McDonald, 2006). 구체적으로, 노동력 감소에 따른 투자, 소비 및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의 감소가 예상되며(국회예산정책처, 2018) 고령 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공공서비스 비용과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양 부담을 커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ohler, et. al., 2001).

이러한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는 한 국가에 포괄적이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ohler, et. al., 2001) 많은 OECD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McDonald, 2006). 이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출산이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저출산 현상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한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변화하였다.

## 2. 출산 패러다임 변화와 저출산 정책

### 1) 출산에 관한 가치관 변화

가족 중심적 규범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더해지면서 여성의 경우 자녀를 낳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의무와 주요한 역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근대화(modernization)·산업화(industrialization) 이후 여성의 출산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여성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김은정, 2018). 개인주의 및 핵가족화의 영향은 여성의 삶에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존의 역할이나 전통적인 사회규범보다 개인의 독립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사회에서 일과 여가의 증가는 출산이 여성 개개인의 다양한 삶에서 가지는 가치에 변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공교육의 발달로 인한 여성의 높은 학력 수준은 여권신장과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McDonald, 2006) 여성의 직업 유지나 자아실현 욕구도 증가하게 하였다.

과거 여성의 삶이 가정 내에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로 한정되었다면 현재의 여성은 자녀 여부에 따라 여가활동, 경제 활동상태 및 사회활동 등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출산을 여성이 갖는 희생이나 손해로 여기며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따라서 출산에 관한 연구에 있어 변화되고 매우 다양해진 여성 가치관과 욕구를 반영한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2) 개인에서 사회 책임으로 변화

여성의 삶의 과정(life course)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 중 하나로 출산을 간주하고 이러한 개개인 선택을 존중한다면(Kohler, et. al., 2002; d'Addio & d'Ercole, 2005)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선택에 따른 사적 영역에서의 결과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속과 연결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개인 선택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정책 사안이 되었다(신경아, 2007; 강이수, 2009). 따라서 초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 육아 및 돌봄이 사회가 함께하는 공적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필요성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하에서 여성 또는 부부의 의무와 역할로 여겨져 왔던 출산과 양육이 개인과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와 국가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사안이 된 것이다.

오늘날 출산은 여성 고유의 역할이나 개인이 해야만 하는 인생 과업이 아니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 역시 여성의 인생 모두로 대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 개인이나 부부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오민지, 2021)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개인 차원의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주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강화는 여성에게 있어 출산의 가치 및 책임 소재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과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도록 하기보다는 정책지원을 통해 여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 또는 자발적인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배우자가 돌봄과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가족 친지를 포함한 타인, 사회조직 그리고 정부 등의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공조하여 책임을 나누고 원활한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면(Beck, 2002; Lewis 2009), 출산으로 야기되는 여성의 가중되는 부담이 갖는 우려와 역할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여성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며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방향과 실행의 측면에서도 출산을 제고를 위한 합계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를 독려하는 정부 주도의 규범적 접근방식보다는 출산이라는 선택이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한편, 주변 환경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사회 전반의 구조 및 환경이 여성의 욕구와 상황에 충족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정책 기조와 지금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관련 연구들이 앞서 언급한 여성의 욕구에 따른 최근의 출산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2001년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면서부터 수립·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5년 단위의 중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들이 수립·운영되어 2020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이 마무리되었다(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집행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중·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인구정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기간별 또는 분기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각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중점과제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주요 정책대상을 저소득 가정으로 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집행되었다. 1차 계획의 추진 방향에는 양성평등 문화나 일·가정 양립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행에서는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부 주도의 한정된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9). 또, 1차 계획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초기 인구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경제적 요인에만 한정하고 정책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정책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 지원 등 경제적 요인 등에 치중하여 효과적인 처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2차 기본계획(11-15)에서는 1차 계획에서 한계로 제시되었던, 한정된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 또한 출산과 양육에 알맞은 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계획의 목표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1차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활성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커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세 개 정책 방향에 95개 과제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저소득 가정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과 맞벌이 가정을 정책수혜자로 포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주된 정책 수혜대상이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로 한정되었다는 점, 출산과 양육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한계를 보인다(오민지 2021). 또, 정책의 추진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정책 공조가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범사회적 참여는 부족한 채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우해봉, 2020)에서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기존 기본계획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제3차 기본계획(16~20)은 출산과 양육에 집중된 이전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개인 생애 이행단계(결혼 이전, 결혼 이후 첫 자녀 출산 전, 결혼 이후 둘째 자녀 출산 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정성호, 2018). 또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책대상은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되었고, 정책의 범위는 기존 기혼자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 노동시장, 사회구조와 문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확장된 것이다(정성호, 2018). 이러한 3차 기본계획의 성패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정부는 3차 기본계획 종료를 한 해 앞둔 2019년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제시하였다.

#### 4)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 한계

지금까지 정부 수준에서 추진되어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정책대상과 정책영역의 한계다. 정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 2차 기본계획은 정책대상 및 정책 범위가 특정 계층과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부 지원정책 선정에 관하여도 기존 정책들은 육아보육비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요인들 위주로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기존 1, 2차 기본계획이 보였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가임기 여성(20-40)으로 확장하고 정책 범위 면에서도 출산, 취업 및 결혼 문제를 포함하려 하였으나(정성호, 2018) 오히려 출산과의 관계성이 약하고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3차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모든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이라는 국가출산율의 양적 향상만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계량적 지표에만 주목하는 정책목표의 한계를 보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이에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형성 노력은 부족하며, 출산의 주체인 여성(수요자)을 도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저출산 현상의 책임을 여성(개인)에게 전가하려는(이철희, 2018; 장경섭, 2011)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3차 기본계획은 생애 이행단계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 맞는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저

출산 정책목표가 여전히 ‘합계출산율 1.5’라는 수치적 접근에 맞춰져 있다는 점과 개인 단위에서 여성 욕구와 삶의 다양성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여전히 범사회적 공조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존 기본계획들을 통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였으나(대한민국 정부, 2015) 아직까지 직장인 기업과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는 미진해(오민지, 2021) 앞선 기본계획들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가족친화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발달과 공동육아 등 같이하는 육아 및 보육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가사·육아 노동에 따른 지금의 경력단절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와 직장(민간) 영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효과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 사회 전반의 더 적극적인 역할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 3. 출산율 영향요인

#### 1) 선행연구의 동향

##### (1) 국가단위 출산율 연구의 동향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국가단위 선행연구들은 주로 저출산 현상의 보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대이론(grand theory), 중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ies) 수준 이상에서 저출산의 몇 가설과 제2차 인구변천 이론 등 일반 이론이나 분석 틀을 제시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일반 이론을 찾으려는 논의들은 관련 학문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이론의 발전에 폭넓게 기여 해왔으나 논의의 접근방법과 분석 단위에서 설명력의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학문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저출산의 원인에 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 또한 거시경제지표, 인구수 등 측정 가능한 소수 지표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경희 외, 2018; 오민지, 2018).

출산율에 관한 국가단위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각 나라의 출산율 변화추세와 패턴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 조출산율 등 인구 및 출산에 관한 시계열에 따른 지표의 나열을 통해 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현상의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특히 저출산 원인과 출산율 현황에 관한 대다수의 국제기구와 국가 내 연구보고서 등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Castles, 2003). 주된 논의의 예로는 OECD 가입 국가 간 비교, 미국과 유럽의 비교, 유럽 내 국가 간 비교 등이 포함되며(박시내, 2017; 김경희 외, 2017)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등의 요인들을 활용하여 한 국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추세와 패턴을 설명하려는 연구들(김두섭, 2007) 또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기술 연구에 포함된다.

출산율의 추세 비교와 패턴 연구에서 나아가 국가 단위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 단위 연구의 경우 주로 국가별 경제성장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인당국민소득 등 거시경제지표들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논의로 이루어져(Gauthier, 2007; 이삼식·최효진 2012) 왔으나 최근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관련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경험적 분석을 활용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영향요인은 국가 단위로 분석되며 각 국가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Gauthier & Hatzius 1997; 최상준·이명석, 2013; 이석환, 2014).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등의 국가단위 출산율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구학적 요인

저출산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1차적 주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 인구의 감소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을 중심(Billari, 2008; Kohler, et al., 2006)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왔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 15~49세 사이의 여성 인구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청(2019)의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경우 2005년에서 2017년에 약 809만 명에서 681만 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보여 지는 상황에서 ‘음(-)의 관성효과(negative population momentum)’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저출산 문제의 바탕이 될 수 있다(Lutz, et. al., 2003; 우해봉·장인수, 2017). ‘음(-)의 관성효과’ 이론에 따르면 세대를 넘어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되는 경우 여성 인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여 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하여도 전체 출생아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Goldstein, 2002). 따라서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와 함께 출산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국가의 인구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심화될 것이다.

### ②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 요인 또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국가단위 출산율 결정요인에 관한 보편적인 논의들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와 상황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국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기능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보고서에서 GNI, 고용률, GDP,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평균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지표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보고해 왔다(Kohler, et. al., 2001).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살펴보면 1997년 경제위기(오창섭·최성혁, 2012)나 높은 부동산 가격과 같은 거시 경제요인들이 앞서 언급한 경제 성장 지표들과 더불어 국가단위 출산율 결정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오창섭·최성혁, 2012; McDonald, 2006).

국가단위 출산율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논의들이 국가 경제요인과

출산을 간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요인과 국가 출산율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ryant, 2007). 이는 각 나라의 GDP, GNI, 또는 경제성장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요인을 준거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 수준에 비례해서 출산율 역시 낮거나 높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진숙·김태원, 2014). 더불어 OECD 회원국이나 유럽 혹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일정 단계 이상 발전된 나라의 경우, 각 나라의 출산율을 경제 수준이나 개발 수준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오민지, 2021)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출산율과 관련한 연구들이 국가 경제지표들을 통해 국가 단위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개별국가들의 저출산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경제적 요인들을 통한 설명방식이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출산율 설명에 있어 경제개발지표의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최근의 논의들이 경제적 요인이 갖는 영향력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국가 단위 경제지표 외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사회문화 요인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사회·문화적 요인

저출산과 관련한 초기 이론적 논의들은 경제학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낮은 출산율에 대해 규명해 왔으나 최근 논의들은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Westoff, 1983; McDonald, 2006; Lutz, et al., 2006). 사회·문화적 요인의 논의는 인구·경제학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구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유사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 간 합계출산율 차이와 저출산 현상을 보인 국가들의 시간에 따른 해결 방법 차이를 설명하려는데 매우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단위 출산율 결정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는 최근 논의들은 출산율을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Van de Kaa(1987)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를 통해 각각의 국가마다

다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구변화와 관련한 설명에 있어 사회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사회적 가치관은 각각의 국가 현재의 정치체제, 경제 발전, 그리고 인구학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기능하게 된다(Van de Kaa, 1987).

Lutz, et, al.,(2006)는 ‘저출산의 덩( low fertility trap)’ 가설을 이론모형의 틀로 제시하면서 인구·경제·사회학적 요인의 상호영향에 따른 출산의 악순환 현상에 관해 기술한 바 있다. 이론에 따르면,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과 이상적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제지표하락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기대소득과 기대소비 간 격차 증가가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저출산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Lutz, 2008).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 Kohler, et, al.,(2006)의 연구 역시 저출산 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시장의 축소 등의 경제·사회적 요인의 변화는 합리적 개인으로 하여금 출산하지 않거나 미루도록 이끌며 이러한 변화는 나아가 국가 저출산 현상의 원인요인이 된다. 다른 한편에서 그들은 정책적 환경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경제적 요인에 상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의 역할을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들은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이 저출산 현상의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 함께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cDonald(2006)의 연구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들을 특히 강조하여 지금의 국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McDonald(2006)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겪어온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발달과 노동시장의 탈규제화(labor market deregulation)인 두 차례의 큰 사회변화들을 저출산 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거대한 사회변화들은 각각의 개인 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이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능력과 가

능성(capacity)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발달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탈규제화(labor market deregulation)로 발생한 문화 및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 관련 욕구(aspirations)의 실현을 이루기 힘들게 하였다는 주장으로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저출산 현상의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이론적 논의나 소수의 국가 간 사례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실증연구로 규명되기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경우 국가 인구지표나 경제 지표들과 달리 측정되기 어렵고 개별국가가 가진 국가의 특수성에 가깝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저출산 관련 국가단위 실증적 연구들은 여전히 경제 지표하락이 고용률을 낮추고 장기실업의 원인요인이 되어 청년들이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며(오창섭·최성혁, 2012; 조명덕, 201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임금이 출산율과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손홍숙, 2004) 인구·경제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국가단위 출산율 영향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 개인단위 출산율 연구의 동향

개인 단위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왔다. 신가정경제이론은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이 갖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출산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적 요인을 기반으로 분석모형들을 제시해왔다(Becker, 1981). 신가정경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 경제활동 참여 및 교육수준 등이 개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출산율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기존 연구에서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신가정경제이론의 논의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론이 가지는 영향력은 막강하다(오민지, 2021).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여성학·행정학에서 신가정경제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개인의 출산 결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심리학에서는 출산 이후 나타나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여성의 심리적

변화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논의되고 있다( Collins, et. al., 1993; 황정은·한송이, 2017).

여성학에서는 출산에 대한 기존 규범적 논의나 신가정경제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성의 탈 귀속주의, 남성 중심 성별 분업구조 및 도구적 가족주의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설명한다(김경아, 2017).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 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 및 사회자본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이삼식, 2006).

행정학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그 효과성에 주된 논점을 갖기 때문에 개인단위에 관한 연구보다는 합계출산율을 주요 종속변수로 하는 거시 단위 경험연구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개인 단위 영향요인 연구들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개별 정책들이 개인의 출산 결정이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논의해 왔다(최상준·이명석, 2013; 이석환, 2014). 더불어 출산에 관한 연구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김태희·오민지, 2017; 오민지·김태희, 2018). 이들 연구는 사회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도입과 같은 사회적 지원 역할이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태도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이 개인과 가정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과 큰 관련성을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시단위에서 수행된 출산율에 대한 연구는 앞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출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어 개인단위의 출산율 영향요인의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개인단위에서 수행된 출산 관련 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인구·경제학적 요인을 출산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저출산 현상의 규명에 있어 전통적으로 인구·경제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또한 미시영역에서 Becker(1960)가 제시한 신가정경제이론이 강력한 이론으로 설명력을 이어왔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관계성 연구들은 나이, 성별, 가구소득, 교육 수준은, 경제활동 여부 및 종사상 지위와 같은 인구·경제학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연도별 통계자료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출산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박다운·유계숙,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통계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들의 경우, 고용 형태(중사상 지위/정규직 여부), 여성의 취업 여부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이삼식·최효진, 2014)이나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노동시장의 이탈과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력 규명(곽현주·최은영, 2015)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신가정경제이론은 성별, 교육수준, 소득 및 경제활동 참여 등을 통해 개인단위의 출산율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 단위 경험 연구들은 출산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따라, 더러는 관심 변수에 따라 수행된 논의들은 여성의 출산 영향요인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며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개인단위 출산 관련 분야의 경험적 연구들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진 영향요인들에 관한 대안적 논의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출산율 선행연구 평가

이전까지 국가단위 출산율에 관한 논의들은 거대 혹은 중범위 수준에서 보편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즉, 국가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저출산을 설명하는 보편적 원인을(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규명하고 여러 이론을 논의하는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실증 자료를 활용한 일부 연구들의 역시 거시 단위에서 국가 간 출산율 변화추세를 분석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된 국가 인구정책(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에 관해 규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거시 단위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국

가단위 경제지표나 인구지표 활용 외에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에 관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특히, 근래 인구·경제학적 영향요인 외에 사회·문화적 요인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요인을 활용한 일반 이론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이론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낸다.

둘째, 국가 단위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내 개인들이 유사한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수행하기에 개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관련 요인이나 다양한 개인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거시적 사회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개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양영철, 2019), 개인 단위에서 여성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들에서는 출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논의가 개인 단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가정경제학의 이론을 제외하면 미시단위에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개인을 검증 단위로 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출산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이 신가정경제이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신가정경제이론은 높은 설명력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개인의 출산 결정과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이론으로 건재해 왔다. 그러나 이론에서 주장하는 인구·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근래 경험적 연구에서 일관적인 논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출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신가정경제학 연구에서 수행되어지지 않은 개인의 가치관이 나 정책 등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보완된 대안적 이론 모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개인 단위 실증적 연구들 역시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다. 국가 저출산 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저출산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미치는 개인단위 영향요인을 규명한 실증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개인 단위 실증연구라 할지라도 신가정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구·경제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검증하거나, 학문별 분야에 따라 소수의 관심 변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들은 소득, 나이, 경제활동상태,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경제학적 요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려가 있었던 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경험연구를 통해 규명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변수들을 면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학, 가정학, 심리학, 경제학, 행정학 등 학문별 분야에서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고 있고, 국책 연구기관의 일부 보고서에서도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하거나 출산 결정요인들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출산 관련 개인요인과 정책요인들을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유의한 영향력을 규명하는 시도는 미비했다. 따라서 기존 경험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 여성의 출산에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요인들이 갖는 실증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 3) 본 연구의 출산을 영향요인

#### (1) 사회변화와 새로운 논의 필요성

근래 국가 단위에서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논의들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cDonald(2006)는 저출산의 원인을 국가의 자유주의 발달(Social liberalism)과 노동시장의 탈규제화(Labor

market deregulation)로 설명하려 한다.

‘제2차 인구변천’을 주장한 Lesthaeghe와 Van de Kaa(1986)는 오늘날 청년들은 전통적인 사회규범이나 제도보다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 여가 등 라이프 스타일 추구를 위해 출산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Inglehart(1977)의 탈물질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Beck(1999)의 저서 「위험사회」에 따르면 경제 발전은 초기에는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지만, 후기로 갈수록 구성원과 사회는 일상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며, 경제발전이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고용은 보장되지 않고 경기 불안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상적 위험들이 커진다는 것이다. 합리적 개인은 이러한 일상적 위험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경력단절 위험, 낮은 소득, 경제적 책임 강화, 높은 소비지출 등의 불안정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일찍이 높은 경제성장 경험을 갖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개인의 보여주는 위험회피(risk aversion) 행태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ck, 1999).

McDonald(2006)는 불안정한 사회로 인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위험회피 성향을 저출산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논의와 개인단위에서 보고되고 있는 학문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출산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점차 심화되어가는 요즘, 경제발전 및 서구 문물의 유입 등의 영향력에 따라 가족이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자유주의 또는 탈물질주의로 대변되는 청년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여성의 삶에서 출산의 의미는 ‘꼭 해야만 했던’ 의무와 규범이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으로 변화하였다(김주희·고선강, 2018). 더불어, 청년이 라이프 스타일, 자아실현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특히 여성 삶에 있어 일(work)과 여가(leisure) 등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중에서도 일영역은 오늘날 여성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필수영역으로 기능한다(Frone, et. al., 1992). 이러한 최근의 사회변화는 개인 가치관이 출산율에 미

치는 영향(김주희·고선강, 2018; 정성호,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에 대한 논의나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개인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이삼식, 2012).

과거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었던 여성 삶이 오늘날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 개인에게 출산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결과라면 이에 대응하는 사회문화 개선이나 국가의 정책 제공이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N. Balbo et, al., 2013). 즉, 사회자본 및 정부 지원인 일·가정양립정책 등의 존재는 개인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폭넓게 증가시키고 필요한 역할 부담을 감소시켜 의사결정의 범주를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의 책임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국가 및 사회가 함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 되었다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여성에게 알맞은 자원을 제공해줌으로써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출산의 지연과 포기를 막고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에 긍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Thevenon, 2011; 송헌재·우석진·이진 2015; 이슬기, 2020).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의 출산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다만, 최근 신가정경제학 논의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가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정서적 지지 등 심리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현재까지의 개인 단위 연구들은 개별적 학문별로 논의된 요인들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국가요인이 통합된 관점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출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개인의 출산 영향요인으로 논의되던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경제학적 요인 중심의 연구들이 누락된 변수로 인해 논의에 편의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본 연구가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 ‘여성의 출산에 관한 분석 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변수에 대한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해보았다.

## (2) 사회자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물질·경제적인 면 외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다양한 행동 양상을 이해하고 개입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3). 이에 사회자본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박희봉, 2009).

사회자본이란 행위자 간의 사회관계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자원을 의미한다(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또는 넓은 사회적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자원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ortes, 2000). 앞서 언급한 사회자본의 속성 때문에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개인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 배태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도 사회 공동체 구성의 관계 속에서 배태되어 상호 이익과 사회적 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김동수, 2008). 즉, 규범과 신뢰, 상호 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해소, 긍정적인 자녀 가치관 형성, 가정 내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같은 유용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준수·정미숙, 2019). 특히,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이나 단체 활동 등의 사회 참여를 통해 가정 밖에서도 사회자본이 축적되면서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자본은 여성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유해선, 2004; 박희봉, 2009). 또한,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심리적 자본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보다 많은 상호 이익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박홍빈·이호연 2006). 위와 같은 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반영할 때, 여성의 사회자본 형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면 출산이 높아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은 여성 중심의 네트워크로 인해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낮고, 계층적 가교역할이 부족한 낮은 사회적 계층과 연결됨으로써, 확장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특성도 있다(Lin, N., 2000). 또한, 여성의 직장 생활로 좋은 이웃 관계와 사회적 신뢰 관계,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 되면서 가족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자본 축적이 불리해진다는 특성도 있다(Putnam, 1995). 이는 여성이 갖는 사회자본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여성의 가족과 관련한 사회자본이 줄면서, 출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자본과 출산에 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의 사회자본과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과 출산에 관한 김동수(2008)의 연구에서 외국인 아내들이 다양한 개인들과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또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의 직업 위세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됨으로써 사회자본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 여성의 사회자본과 출산 간의 연구가 미흡한 바 본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출산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 (3) 일·가정양립정책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만족감은 출산율 제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일 경우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환경은 취약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최은영, 2016)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산 결정요인으로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는 출산·양육의 책임을 개인 또는 가족에게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확장하고 관련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가 더불어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즉, 사적 지원, 사회적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여성에게 추가적인 정서적·도구적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형성과 유지에 요구되어지는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여성의 양육지원제도가 20~30년을 앞서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선진국에서는 양육관련 정책인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의료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보완 등 사회 전반적 시스템 변화를 통해 취업여성 가정 전체를 아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Sundstrom & Stafford, 1992).

이러한 제도에 대한 만족도 상승은 출산율 증가로 직결되어 2015년을 기준으로 스웨덴 출산율 1.92명, 영국 1.9명, 프랑스 2.0명, 아일랜드 2.01명 등 저출산율 극복한 나라가 다수 존재한다(통계청, 2016). 또한 선진국들의 일·가정양립정책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갈등 해소로 연결 되어질 수 있어(Saltzstein, Ting, & Saltzstein, 2001) 여성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Ahmad, 1996; Holeyannavar & Khadi, 2013)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의 제공은 출산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최근 개인(여성)의 가치관 및 욕구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미시-거시 간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개인변인과 함께 유급육아출산휴가, 공공가족수당지출 등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개인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요구된다.

#### (4) 통제변인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사회계층, 결혼여부, 종교, 교육수준이며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은 소득불평등도이다.

### ① 주관적 재정 만족도

Easterlin(1968)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상대적 소득을 통하여 출산율을 설명하는 상대소득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출산율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아닌 기성세대 또는 동시대의 기준 그룹과의 상대적 소득수준의 비교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Easterlin, 1968). 또한 류덕현(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 및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과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상대적 소득수준 만족도가 높아지면 소득으로 양육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재정만족도가 낮아지면 양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Robertson, & Roy, 1982).

### ② 결혼여부

서구사회에서는 전통적 결혼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보다 느슨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출산도 높은 편이다(진미정, 2017).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첫 동거연령과 초혼연령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는데, 미국은 2010년 기준 여성의 초혼연령이 25.9세이고 첫 동거연령은 21.87세이다(Manning, Brown, & Payne, 2015). 유럽도 동거비율이 높고 혼외출산 비율이 높아서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이 40.5%이다(진미정, 2017). 또한, 한국의 청년세대 내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지만 동시에 탈 전통적인 관계설정과 출산에 대해서도 거부적이지 않는 것(진미정 외, 2019)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결혼이 출산에 미칠 수 있는 원인을 찾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③ 종교유무

둘째 자녀 출산결정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종교유무를 지목한 마미정(2008)의 연구와 기혼여성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박소영(2018)의 연구에서 종교는 출산율을 높이는 유의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적 관점의 생명존중 사상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다거나 다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서(통계청, 2017) 출산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종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포함한 개인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출산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높고,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될수록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가설이 있다(이현옥, 2011). 그리고 강병구 외(2003)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간의 관계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율 간의 상관성이 항상 일관성이 있게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수준과 출산율 간의 인과성을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 ⑤ 주관적 건강 만족도

여성의 건강상태가 임신이 가능한 상태여야 출산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연령, 생식능력, 미피임 기간 등에 의해 임신 및 출산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ttmacher, 1956). 유산 및 사산 등은 임신 소모를 초래하며, 이는 생식능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황나미, 2007). 윤인해(202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데 여성의 생식능력도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고령 임신부의 경우 젊은 임신부에 비해 임신 합병증, 산과적 중재 빈도와 산후출혈 등의 위험이 증가하며 미숙아 출산 위험, 태아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기형 발생률 증가 및 유산, 사산의 위험이 높아(민혜영 외, 2015)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의 건강상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 ⑥ 소득불평등도

소득 및 자산 등의 가구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출산율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김은정(2013)의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행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 출산을 기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소득 하위 30%는 출산 자녀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상위 30%에서는 출산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은정 외, 2011). 이와는 다르게 김현식(201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김두섭(2007)의 연구에서 중간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출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제2절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 1. 주관적 삶의 질 개념

#### 1) 주관적 삶의 질 정의

삶의 질에 관한 수많은 연구만큼 삶의 질은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연구의 목적, 주제 및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행복감(Happiness),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복지(Well-fare), 만족감(Satisfaction), 삶만족도(Life Satisfaction), 안녕감(Well-being),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등이 있으며,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서정아, 2013; 김선아·박성민, 2015).

삶의 질은 객관적 또는 물리적인 양적 측면을 강조하는지 주관적 또는 심리적인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지 혹은 두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서정아, 2013; 김선아·박성민, 2015) 객관적

측면이 강조되는 연구에서는 삶의 질,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주관적 측면이 강조되는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 삶 만족도, 행복감 등을 활용한다.

삶의 질의 구성요소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다양한 개념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용어들을 행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Seligman, 2002). 주관적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의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ener(1984)는 인간 삶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 구성물로 삶의 질을 정의했으며, Kahneman & Deaton(2010)도 삶의 질의 개념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로 정의했다. Schneider(1976)는 연구에서 삶의 질이란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어지는 물리적 상태와는 무관하며 각 개인이 경험하는 직접적 복지와 상관이 높다고 했으며, McDowell & Newell(1987)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을 물리적 상황의 적절성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모든 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김애련·채옥희(2001)는 삶의 질을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여건,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건강요인,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요인, 주변 환경요인 등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 상태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Diener(1984)는 인간 삶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 구성물로 삶의 질을 정의했으며, Kahneman & Deaton(2010)도 삶의 질의 개념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로 정의했다. OECD(2011)는 BLI(Better LifeIndex,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2개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하며 자산, 소득, 주거환경, 직업과 같은 물질적 삶의 조건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노유자(1988)는 삶의 질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김태현(1998) 등은 삶의 질을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복지감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즉 행복감, 안녕감, 만족감, 실망감, 좌절감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삶의 질은 행복감, 만족감과 같은 개인의 긍정적 정서, 개인의 현재 생활 및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느낌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Quality of Life)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사회발전지표들을 살펴보면, 중·단기적 경제지표, 발전도, 성숙도 등을 중심으로 물질적 차원에서의 사회발전을 측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점차 삶의 질, 행복, 사회자본 등 비물질적 차원인 정서적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서정아, 2013; 이효주 외, 2020).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에서 주관적 측면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이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관적 삶의 질의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써 행복감과 삶 만족도는 서로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서정아, 2013; 방성아, 2017).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과 인지적 요소인 삶 만족도 (Life satisfaction)로 구분하여(Pacek & Radcliff, 2008)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삶의 질의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은 우울, 슬픔, 질투와 같은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환희, 즐거움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접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진다(Diener & Diener, 1995). Foydyce(1972)는 행복감을 개인의 현재와 과거의 모든 경험이 고려된 상황에서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만족,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였다(Diener & Diener, 1995).

둘째, 주관적 삶의 질의 인지적 요소인 삶 만족도는 사회의 일반적인 준거 기준 또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에 따른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개인 삶의 만족에 대한 평가 결과로 정의된다(Diener & Diener, 1995). 따라서 현실과 개인이 가진 기준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삶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Dutt & Radcliff, 2009).

보편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인 행복감은 지속 기간이 짧으며 생리적 상태나 무의식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지적 반응인 삶 만

족도는 보다 의식적이고 장기적인 평가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행복감과 삶 만족도가 주관적 삶의 질에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Gundelach & Kreiner, 2004; 서정아, 2013; Helliwell & Putnam, 2004)이 지배적이나 단일 연구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행복감과 삶 만족도로 구분하여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각기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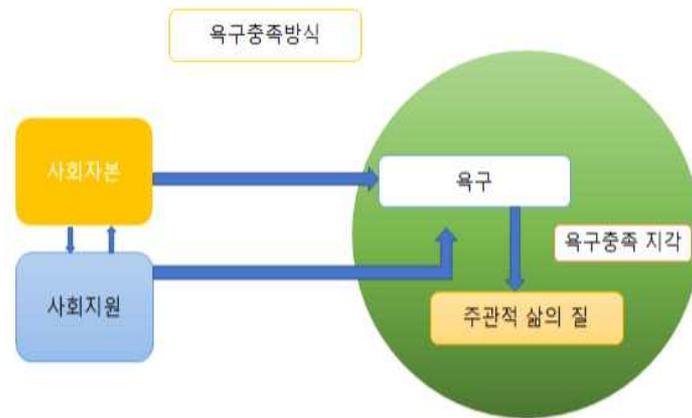
## 2) 삶의 질 통합이론

삶의 질 통합 모델(Integrative model of quality of life)은 사회자본, 사회정책,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과 인지적 요소인 삶 만족도 구분하여(권용현, 2009; Constanza et. al., 2008) 사회자본, 일·가정양립정책을 독립변수로 행복감과 삶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Costanza(2007)등은 이론모델에서 사회자본을 구성원의 욕구 실현을 위한 자원이자 기회이며 국가정책은 기회를 형성 및 배분하고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구성원의 욕구 실현을 위한 투입물이라면 주관적 삶의 질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통합 모델에서는 사회자본, 사회정책이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 및 상호작용 효과 모두를 언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우선 규명하였다. 또한 삶의 질 통합 모델에서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이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지,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어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림 2-1>은 삶의 질 통합 모델에 관한 개념도이다.



<그림 2-1> 삶의 질 통합모델

삶의 질 통합 모델은 논의에 있어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첫째,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의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개인과 지역사회 및 국가 등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Yip, et. al., 2007; Kawachi, et. al., 2004).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질, 즉 주관적 삶의 질에 향상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은 공동체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 통합 모델은 기존 이론들이 간과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과 주관적 삶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 2.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요인

### 1) 행복감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life quality),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등 학문의 영역과 논의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활용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하기는 어렵다(Seligson, Huebner, & Valois, 2003).

이러한 행복을 철학 영역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행동의 궁극적 동기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Diener, 2000;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와는 다르게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요인을 소거하면 적응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왔으나, 점차 기존 연구가 갖는 그 한계를 느끼고 긍정적으로 잘 기능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Ryan & Deci, 2001).

동일한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와 가치가 다르고, 본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복감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인이 경험해 온 삶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연구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행복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Bradburn(1969)은 개인의 삶의 경험에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합을 활용하여 행복감을 측정하였으며, Diener(1984)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인지적인 요인과 긍정 및 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Ryff(1989)는 삶의 목적, 자율성, 자기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를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Lyubomirsky와 Lepper(1999)는 행복의 구성요인들을 나누어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방식은 개인이 실제로 행복한가와 얼마나 행복한가를 본질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삶에서 경험되는 행복감과 관련은 있으나 ‘당신은 행복합니까?’와 같이 직접적으로 행복감에 관해 묻는 문항이 누락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Lyubomirsky와 Lepper(1999)는 행복감을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으로 명명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평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Lyubomirsky와 Lepper의 개념에 근거하여 행복감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경험적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삶 만족도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정의되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건강, 소득, 재정적 자산, 사회경제적 지위(박순미, 2011), 육체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Iwatsubo, et, al., 1996)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삶의 만족도는 관찰자의 가치체계가 중시되는 객관적인 기준들보다 개인이 부과한 기준을 통해 스스로 삶의 상황을 비교하여 갖게 되는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Shin & Johnson, 1978).

이는 기존의 객관적 지표들만을 가지고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만큼 주관적 평가가 개인의 실제적 관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Medley, 1976). 따라서 초기에는 주로 객관적인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짐에 따라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삶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종교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 객관적 주거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평가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서 당사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Campbell, et, al., 1976).

이러한 관심의 변화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특성과 선호도 및 주관적 가치체계에 따라 객관적 지표가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는 주관성의 이유 때문이었다. 즉, 객관적 기준과 지표에

의한 평가가 반드시 모든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영주(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그 밖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을 객관적 조건과 기준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는 삶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슷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이라도 개인의 삶에 대한 질적 평가는 각 개인의 가치와 욕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Sirgy, 1986). Neugarten(1961) 등은 삶 만족도를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기쁨,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Havighurst(1968)는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삶의 만족스러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ousa와 Lyubomirsky(2001)는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과 수용의 의미로써 인간 전체의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최성재(1986)의 연구에서는 생활 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경험적 평가와 미래의 활동과 삶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삶의 만족도란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활이나 활동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지적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나 성취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 1) 주관적 삶의 질 선행연구 동향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과업은 공동체와 사회 모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주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보람·이학준, 2021).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삶의 질 증진 논의는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공동체의 근간을 유지하는 출산,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여성의 삶의 질 증진이 곧 국가 전체의 삶의 질 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여성의 생의 목표 달성 및 행복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오금숙·김윤정, 2013)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지며(권구영, 2012; 박현옥 외, 2018),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연령, 직업, 소득, 성별,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연령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커진다는 연구(Spreitzer & Snyder, 1974)와 연령이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경·이주일, 2010; 황보람 외, 2018)가 있다. Blanchflower와 Oswald(2000)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기혼자, 백인, 여성, 고소득자, 높은 교육수준, 자영업자, 퇴직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을 지정하고 있다. 직업은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복감, 삶의 질에 높은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여성의 직무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의 간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이 검증되었다(김성현·박미석, 2000; 이수애, 1999). Compton(2001)은 근로 가치관은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이 크다고 하였으며, 박혜신 외(2005)의 연구에서도 근로 가치관이 여성의 인지 평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평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과 교육수준은 상관성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제되면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Spreitzer & Snyder, 1974)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국내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명신·이훈구, 1997; 이수애, 1999). 이처럼 여성의 교육수준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의 측면에서는 이현송(2001)은 개인 혹은 가정 소득이 기혼취업 여성의 행복감과 상관이 있으며, 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소득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온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부가 여성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Diener, et, al. (1999)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 있어서 1인당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Oswald(1997)는 실업이 행복을 저하시킨다고 하였고, Graham, et, al. (2001)는 물가상승률과 실업수당의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반대로 Easterlin(1995)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Bjornskov 2003) Inglehart, et, al. (2000)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 오히려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심리적 변인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영향요인은 주로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삶의 질과 매우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차경호, 1995; Diener, et, al., 2000). 특히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였으며(차경호, 2004; 여정희2004; Lucas, et, al., 1996), 유양숙·조옥희(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 삶 만족도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넷째, 직접적인 경제적 측면 이외에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지금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지만 점차 개인의 문화성향이나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문화성향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경우, 문화성향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평가에 있어서 주요변인으로 작용하며(Diener, 1984; 김명소·김혜원, 2000;

Suh, et, al., 1999), 문화성향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궁호, 1996, Suh, et, al., 1999). 특히 물질적 지표로 삶의 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서정아, 2013; 방성아 2017).

이상에서 살펴본 개별 실증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따라 수행된 연구들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 2) 주관적 삶의 질 선행연구 평가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삶의 만족이라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주목받아온 것은 우선 경제적 안정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요인이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회의적인 시각이 증폭되고, 경제·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삶의 만족에 인간 관계적 측면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희봉, 2009; 서정아, 2013).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특성과 국가 수준의 특성 등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인구·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요인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삶이 영위되는 기반으로 사회구조와 기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전승봉, 2018)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의 욕구와 정부 정책의 질 및 공공가치 등의 사회수준 영향요인들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관련 분야의 실증적 연구들은 연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 영향요인들에 관한

대안적 논의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절대적인 부보다는 상대적인 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신창환, 2010; Proctor, et, al., 2009),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부분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서 발생 되는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희봉, 2009).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 여성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한다는 Inglehart(1997)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삶의 만족에 경제적 부 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이상으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오민지, 2021).

따라서 삶의 질, 특히 여성의 주관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시대별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가 의미하는 함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삶의 질 통합모델을 분석의 틀로 하여 여성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에 기존의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Costanza, et al.,(2007)의 삶의 질 통합모델(Integrative model of quality of life)은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생활환경에 내재된 다양한 자원을 제시한다. 삶의 질 통합모델에서 사회자본은 욕구 충족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자 기회이며 삶의 질은 이에 따른 산출물이다. 그동안 사회자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개인의 삶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드물었다.

삶의 질 통합모델은 사회자본과 삶의 질의 단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투입된 사회자본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다양하게 작용하여 도출되는 최종 결과물임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즉 개인이 소유한 자원이 욕구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구체적인 경험들이 삶의 질에 관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본을 토대로 그들이 가진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삶의 질 통합모델을 중심으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살피고자 한다.

### 3) 본 연구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사회자본(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과 정부정책(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정급여현물)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논의에 포함시켰다. 개인수준 통제변인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여부, 종교, 교육수준이며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은 소득불평등도이다. 단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가족변인, 심리적 변인은 데이터상의 한계로 분석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변인은 선정된 국가 수가 9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행연구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소득불평등도를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1) 사회자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어 그 구성원이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사회자본은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각종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냄과 동시에 개인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박희봉, 2009). 친구, 가족, 동료, 면식자가 도덕적 토대를 제공하고, 더욱이 사회 내에 사회자본이 축적되게 되면 사회 내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회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보다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된다(박희봉, 2009). 따라서 Inglehart(1997)와 박희봉(2009)의 연구결과로 살펴보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증진의 목표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행복감 또는 삶 만족도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물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던 삶의 만족도 지표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오민지, 2021), 사회자본이 여성의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신뢰: 대인신뢰와 조직신뢰

Leung 등(2011)의 연구에서 사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반면, 타인에 대한 사회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서정아(2013)의 연구에서도 사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 사회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사회자본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방성아(2017)의 연구에서는 사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사회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ung 등(2011)의 연구에서 군대, 경찰, 정당 등의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와 사업가, 은행, 의료보호 체계 등 사회조직에 대한 조직신뢰는 모두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Rodríguez(2014) 또한 유럽연합 국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법제도, 중앙정부, UN 등에 대한 조직신뢰와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서정아(2013)의 연구에서는 사법부, 의회, 군대, 경찰, 정당 등의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와 대기업, 신문, 노동조합, 여성운동 단체 등 사회조직에 관한 조직신뢰는 모두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는 삶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조직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방성아(2017)의 연구에서는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 조직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인신뢰와 조직신뢰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Rus와 Iglic(2005)은 국가 간 차이를 보고하면서 Slovenia의 사업가들은 조직신뢰에 Bosnia의 사업가들은 대인신뢰에 더 의존 한다고 하였다. 캐나다의 노동자에 대한 연구(Helliwell & Huang, 2005)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 조직신뢰가 주관적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isenkopfs(2008) 등은 현대사회에서 대인신뢰보다 조직신뢰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② 관계망: 비공식적 집단관계망과 공식적 집단관계망

관계망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는 혼재된 연구결과가 나타난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 같은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행복과 정(-)의 상관성을 보인다고 한 연구가 있는 반면(Helliwell & Putnam, 2004; Poortinga, 2006)관계망이 행복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도 있다(Sahu, 2013). 서정아(2013)의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관계망이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방성아(2017)는 노인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은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중국 상동 지방의 농촌에서 사회자본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ip등(2007) 또한 관계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Bjornskov(2006)은 공식적 집단관계망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삶의 질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혼재된 연구결과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인지적 측면과 관계망의 하위영역을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Uphoff, 2000; Yip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 ③ 규범

사회자본의 영역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큰 규범은 실증적 논의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Fortier, et, al., 2015) 규범과 행복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결과 또한 혼재되어 있다. Bjornskov(2006)은 사회규범 측정도구로 탈세 혹은 뇌물수수와 같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여 규범과 행복감 간에 관계를 연구

하였으나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방성아(2017)는 규범이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Fortier등 (2014)은 다른 척도로 규범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여 규범이 행복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서정아(2013)는 규범이 청소년의 행복과 삶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규범이 여성의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2) 일·가정양립정책

일·가정양립정책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삶의 질과 일·가정양립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김경미·계선자 2018)와 일·가정양립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성미영 외, 2021; 최하영, 2022). 먼저 일·가정양립정책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기혼 직장여성 1,501명을 연구대상으로,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김난주·권태희, 2009)는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 사이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일·가정양립 갈등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 현장에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유사산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남편 육아휴직 등의 유급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정책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휴직제도, 탄력 근무제 등의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에 이바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Kim & Wiggins, 2011; Saltzstein et al., 2001).

더불어 건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보육·교육서비스 등의 공공가족수당 지원은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직장 및 가정생활 만족 수준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혁준, 2003; 도미향·이소희, 2000).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여성은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양육 문제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정책으로서 보육시설 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의 제공은 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논의들에서 강조되어 왔다(유계숙, 2012; 장영은 외, 2011). 또한 하민지·권기현(2010)은 보육 서비스가 양육부담감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적은 편이나, 보육서비스 이용 가구와 이용하지 않는 여성의 주관적 생활 만족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Ezra와 Deckman(1996)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보육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직장과 가정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adsworth와 Owens(2007)는 보육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정책을 통한 지원이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지원정책은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홍승아 외, 2009), 이러한 정책노력이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많지 않았다(Abendroth & Dulk,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지원정책이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경험적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 (3) 통제변인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사회계층, 결혼여부, 종교, 교육수준이며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은 소득불평등도이다.

#### ① 주관적 재정 만족도

신창환(2010)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재정 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Proctor, et, al., 2009) 따라서 주

관적 재정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② 결혼 여부

대부분의 연구에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Beatton, 2011), 사별을 한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riyanto, 2014).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보다 삶 만족도에서 있어서도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ubaker, 1990).

## ③ 종교 유무

대체로 종교활동은 주관적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특히 개신교의 종교활동은 천주교, 불교를 포함하는 타 종교보다 삶의 질 개선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오랜 종교활동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주연, 2009). 반면 이운복(2011)과 방성아(2017)은 종교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 ④ 교육 수준

일부 연구들은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주관적 복지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Blanchflower & Oswald, 2004), 또 다른 연구들은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Stutzer, 2004).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교육수준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ahey & Smyth, 2004; Priyanto, 2014). 교육수준과 행복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Flouri, 2004) 교육수준이 낮은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Clark, 2003). 이러한 교육수준은 지능, 가족배경, 동기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Dolan, et, al., 2008).

### ⑤ 주관적 건강 만족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삶 만족이 높은 반면에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건강해도 삶 만족이 낮다고 하여 지각된 건강 상태가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lmore & Luikart, 1972). 선행연구(백소영·최자윤, 2018; 이은주, 2017; 성혜연, 2021)에서도 여성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관적인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 상태는 삶의 만족감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서 주관적 건강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⑥ 소득불평등도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수로는 1인당 소득불평등도(GINI)이다. 소득불평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WVS 데이터를 활용한 Fahey와 Smyth(2004)는 소득 불평등이 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Hagerty와 Veenhoven(2003) 또한 소득불평등도와 주관적 삶의 질의 부(-)적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Haller와 Hadler(2006)는 소득 불평등이 삶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국가단위 데이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국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Bjørnskov, 2003). 특히 상대적으로 행복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지 않은 탈사회주의 국가가 공평한 소득분포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또한 혼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Clark(2003)는 40세 미만, 평균소득 이하, 전일고용 노동, 최근 3년간 높은 소득 증가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삶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로바로미터를 분석한 O'Connell(2004)은 소득불평등도와 주관적 삶의 질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반면, Alesina등(2004)은 종단자료에 다양한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소득불평등이 삶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은 구성원이 불평등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Clark(2003)와 Alesina등(2004)은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주관적 복지감을 향상시킨 원인에 대하여 이들이 불평등을 기회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주장한다.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유동성을 대하는 인식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동성이 높다고 여기는 경우 소득불평등이 하나의 기회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유럽과 독일처럼 유동성이 낮게 인식되는 경우 불평등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Dolan, et, al., 2008).

## 제3절 사회자본

### 1. 사회자본의 개념

Coleman(1988, 1990)과 Putnam(1993a, 1993b)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연구 분야 및 관점은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학에서의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자원의 획득과 관련하는 일련의 신뢰, 관계망, 규범 등을 말하며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와 민주적 발전, 참여 등의 전통적인 분야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경제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시장기능을 향상 시키며 제도와 법률 그리고 생산조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고려한다(박희봉, 2009).

학문별 연구목적과 관심에 따라 사회자본에 관련한 연구는 이웃, 지역사회, 조직, 국가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왔으며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및 측정지표 또한 학자들의 연구 분야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사회문제의 해결 방편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연구 영역이 다양화하면서 사회자본의 정의에 대한 관점이 확대되고 있어 사회자본 정의와 연구에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학자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자본은 Jacobs, Bourdieu와 Loury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Coleman, Putnam, North 등의 연구로 광범위하게 발전되었다(Woolcock, 1998).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건 또는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간에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Bourdieu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또한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Bourdieu, 1986).

North(1990)는 사회자본을 정권, 정부, 법원 체제, 법의 지배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협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친밀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Putnam(1993b)은 사회자본을 일련의 공동체가 갖는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라고 주장한다. World Bank에서도 사회자본을 “한 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을 형성하는 기관, 관계, 그리고 규범”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사회자본의 주요한 특징은 사회자본이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Segageldin & Grootaert, 2000). 즉,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이 보이는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Putnam, 1993b).

사회자본이 Putnam의 정의와 같이 수평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Coleman(1988)의 입장이다. Coleman(1988)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 내에 포함된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넓게는 사회구조를 포함할 뿐 아니라 개인 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포함한다(Seragedin & Grootaert 2000).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보통 두 개 이상의 요소와 함께 하는 다채롭고 다양한 실체라고 한다. 사회자본은 어떤 사회구조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누가 행위자 이건 간에 행위자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주어진 가치 있는 사회자본은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없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Coleman의 (1988) 정의는 사회자본을 수평적 단체뿐 아니라 수직적 단체를 포함하고, 구조 내 행위자의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개인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사회자본이 포괄하고 있는 관점은 사회적 규범이 발달할 수 있고 사회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을 포함한다. Putnam이 제기한 수평적 관계에 Coleman이 확대한 수직적 관계에 더하여 정권, 정부, 사법 체계, 법의 지배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인 관계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공식화·제도화된 관계와 구조를 포함한다(Seragedin & Grootaert, 2000). 따라서 사회자본은 개인 간의 비공식적 관계뿐 아니라 공식적·제도화된 관계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앞의 정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자본은 그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의 방면에서 그 구조 내에서 지정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 시킨다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경우와 다르게 사회자본은 행위자 속에 존재하지 않고 구조의 관계 안에 존재하면서 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Coleman, 1988). 또한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사회와 관련된 규범과 신뢰로부터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다분히 실제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특정한 이익을 위해 상호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Putnam, 1993a).

사회자본은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Segageldin & Grootaert, 2000). 사회자본 이론의 핵심 전제는 단체 구성원 간의 일정한 관계가 사회적 사건의 가치 있는 행위를 위한 유익한 자원을 형성하여, 구성원에게 집단적인 자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Bourdieu, 1986). 따라서 사회자본은 인적자본 개발(Coleman, 1988 ; Loury, 1987)과 더불어 지역단위(Putnam, 1993b ; 1995b), 국가단위(Fukuyama,

1995)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자본은 국가, 사회, 조직의 가치 있는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관계망 등 인간 관계 속에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신뢰, 관계망, 규범이므로(Coleman, 1990; Putnam, 1993)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1) 신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신뢰는 사회자본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이며(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개인과 집단의 행태유형 및 잠재된 성향 등을 구성하는 개념이다(Putnam, 1993; Fukuyama, 1995). Simmel(1950)은 신뢰를 “사회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위적 힘”으로 정의하며 사회 내 축적된 신뢰의 크기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갖는 역량 또한 달라진다고 한다.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기 구성원의 협조는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자본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이며 행동유형인 동시에 잠재된 성향이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신뢰는 단일한 영역이 아니라 대인신뢰와 조직신뢰로 구성된다(Rus & Igllic, 2005; Paxton, 1999). 이러한 신뢰는 일반적으로 집단 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대인신뢰와 사회나 정부의 제도에 대한 확신으로 명명되는 조직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인신뢰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농도를 바탕으로 두터운 사적신뢰와 상대적으로 얽은 사회적 신뢰로 유형화 된다(Putnam, 2000; Newton, 2007; Khodyakov, 2007). 두텁고, 사적인 관계에서 저절로 습득되는 특수한 유형의 사적신뢰는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타인을 향한 긍정적 태도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주변의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이다.

Uslaner(2002)는 사적신뢰를 윤리, 성 및 문화적 배경이 같은 사람 간의 결합

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유형의 신뢰로 명명하며, 이들 모두 사회 내에서 강한 감정적 연계와 구성원 간의 유사성을 강조한다(Khodyakov, 2007). 이러한 사적신뢰는 전형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사람들이 상호 의지하며, 상대적으로 작고 분명한 경계를 갖고 응집력 있는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형성된다(Williams, 2001). 이들 구성원의 사적신뢰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신뢰는 경계가 분명하고, 집단 내에서 사회적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이 크다는 장점을 갖지만 낮은 사람을 포함한 외부 집단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Gambetta, 1988).

이와 달리 옹고, 일반적인 유형의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집단이나 제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 기초한 일반적 신뢰이다(Newton, 2007). 오늘날 다원화 사회에서는 상호교류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인 옹고의 사회적 결합 관계를 낮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시켜갈 수 있다. 외부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타인도 우리의 기대에 맞춰 정직하며,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나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옹고의 대인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Solomon & Flores, 2001). 물론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친밀한 사람 위주로 형성되는 두터운 사적신뢰보다 받을 수 있는 신뢰의 이익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Khodyakov, 2007). 하지만 오늘날 거대해지고 지역적 유동성이 크며 혼합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와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지 않은 낮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반화된 사회적 신뢰가 현대 사회의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높이거나 형성하는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Newton, 2007).

둘째, 조직신뢰는 점차적으로 하락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정부조직신뢰에 대한 우려감에서 시작되어, 정부와 사회 내 각종 조직이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 맞춰 있다. 정부제도신뢰가 정부 성과만 있으면 단기간에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제도론자(Dasgupta, 2001; Coleman, 1990)에 비해 문화론자(Inglehart, 1997; Fukuyama, 1995; Putnam, 1993; Foley & Edwards 1990; Almond & Verba 1963)는 신뢰가 사회화를 통해 서서히 증가된다는 전제하에 신뢰형성 과정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며 정부조직신뢰와 사회조직

신뢰가 대인신뢰의 상위 개념이라는 신뢰 간 위계성에 연구초점을 둔다.

Putnam(1993)은 대인신뢰가 조직신뢰를 가져온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주장한다. Fukuyama(1995) 역시 대인신뢰와 조직신뢰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들은 대인신뢰 증진 방안으로 정당, 교회, 공동체 개선 조직, 볼링 단체, 스포츠클럽과 같은 각종 단체에의 가입을 주장한다. 단체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른 사회적 대인신뢰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사회제도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Khodyakov, 2007).

## 2) 관계망

관계망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말한다. 연구자(Bekkers, et. al., 2008)들은 관계망에 관여하여 협력하고, 공통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 사회관계를 활용하는 능력이 가치 있다고 전제한다. Garbarino (1983)은 관계망을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세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순돌(1999)은 관계망을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 되어지는 하나의 울타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계망은 특정한 집단이나 구성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 다른 공동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Ploeg, et. al., 2008). 이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폐쇄적인 관계망이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Putnam, 1993). 즉, 지나친 관계망은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망의 측정은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인 가족, 친구 등과의 사회관계 빈도 및 지속기간(Lelkes, 2006; Powdthavee, 2008)과 공식적 집단관계망인 자원조직 등에 대한 시민참여(Bjornskov, 2006; Putnam, 2000)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관계망을 비공식적 집단관계망과 공식적 집단관계망으로 설정하였다.

### 3) 규범

규범은 집합적 인구행동에 대해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편적 목표를 위해 유익한 행동을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로 정의 할 수 있다(Azar, 2004).

Bjornskov(2006)는 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규범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순돌·성민현(2012)은 규범을 준범에 대한 인식 수준, 공공성, 공동도덕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영은·나건(2015)은 규범을 네트워크와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규칙, 일반적 질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범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를 나타내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이는 규범이 사회자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jornskov(2006)가 제시한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등과 관련하여 규범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 3. 사회자본 연구의 과제

사회자본은 1990년대 이래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점진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으며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Coleman, 1987; Hughes, et, al., 2014). 따라서 여성의 다양한 삶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결과물로서 사회자본 뿐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의 교육과 기술인 인적자본, 개인 혹은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물적자본, 개인 혹은 집단의 재정적 자원인 재정자본 등이 여성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가장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자본을 통해서만 개인이 다른 집단구성원의 물적, 인적, 재정 심지어 사회자본까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Kennan & Hazleton, 2006; Bassani, 2009). 이러한 관점은 사

회자본과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인적자본, 경제자본 등 다른 자본이 미치는 효과를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자원이 사회자본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Coleman, 1987; Lin, et, al., 2001). 사회자본이 집단 내에서 자원에서 자본으로의 다양한 변형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Bassani, 2009).

셋째, 사회자본의 또 다른 관점은 사회자본 및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긍정적 상관성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다. Coleman(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수십 년간 상당한 연구들이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부정적 혹은 비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Reimer, et, al., 2008; 서정아, 2013). 사회자본이 과도할 경우, 즉 지나친 관계망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특정 집단 내의 지나친 유대로 인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고립될 경우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Ream, 2005; Van Deth, et, al., 2010).

넷째, 사회자본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Rothstein & Stolle, 2001; Van Deth, et, al., 2010; 서정아, 2013). 따라서 신뢰, 관계망과 규범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서문기·오주현, 2011; 방성아, 2017; Putnam & Goss, 2002).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신뢰, 관계망과 규범을 사적 측면이 강조된 유형과 공적 측면이 강조된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며(박종민·김왕식, 2006; 서정아, 2013; Putnam & Goss, 2002) 대체로 대인신뢰(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조직신뢰(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관계망(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적 대인신뢰는 가족·이웃·면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 사회적 대인신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열은 신뢰, 사회 조직신뢰는 종교단체·사회단체·언론매체 등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는 입법·행정·사법·경찰·군대 등 국가조직에 대한 신뢰, 비공식적 집단관

계망은 예술·문화·여가관련단체 참여 수,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정당·전문가협회·사회단체 참여 수로 정의된다(박종민·김왕식, 2006; Putnam & Goss, 2002). 박종민(2003)과 박희봉(2009)은 사회자본의 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을 비공식적, 공식적 영역으로 이분화해 ‘좋은 사회자본’에 기여하는 사회자본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제4절 일·가정양립정책

### 1. 일·가정양립정책의 개념

2018년 기준 절반 이상의 여성(53.5%)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통계청, 2018), 맞벌이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양립은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통계청, 2019).

일·가정양립 지원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김은정, 2012). 이처럼 중요한 정책적 이슈인 일·가정양립(Work-Family Balanc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은 다양한 어휘로 표현된다.

일·가정양립(work-family balance)은 일·가족갈등, 일·가정갈등, 직장·가족양립, 일과 삶의 조화, 일·삶 양립, 일·가족균형, 가족친화, 일·생활균형, 일·가정균형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활용된다(권혜원·권순원, 2013; 엄명용·김효순, 2011; 박예송·박지혜, 2013). 기본적으로, 일·가정양립의 개념은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미시체계인 일과 가정이 상호 연계되어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연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정은희 외, 2012). 이러한 개념적 전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미시체계를 나타내는 일, 직장, 가정, 가족, 삶이라는 단어와 상호연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립, 조화, 균형, 친화, 갈등 등의 단어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일·가정이슈에 관한 연구를 위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개념 및 측정이 일·가정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김준기·양지숙, 2012; 류성민·안성익, 2012) 하였기에 일·가정양립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 중, 일·가정 갈등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과 가정생활은 상호 의존적이나 한 가지 영역에서의 역할이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에 시간, 부담, 행동의 측면에서 영향을 주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역할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Greenhaus & Beutell, 1985) 일·가정갈등은 어떤 한 영역과 관련된 요구가 다른 영역과 관련된 요구와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된다(Allen, et, al., 2000).

정리하자면, 일·가정갈등은 일과 가정영역의 역할압력이 어느 정도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일종의 상호역할 갈등의 한 형태인 것이다(Allen, et. al., 2000; 김준기·양지숙, 2012; Greenhaus et al., 1985). 이는 일·가정양립갈등이라고도 표현되며,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로, 가정 내에서는 가사와 양육담당자로 역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영역의 압력으로 인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이 곤란하게 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강민재 외, 2017). 이러한 일·가정양립 갈등은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여 어느 영역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며, 직장-가정갈등 혹은 가정-직장갈등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구분되기도 한다(Frone, 2000; 강민재 외, 2017).

일·가정양립의 또 다른 표현인 일·가족균형은 일과 가족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며, 최소한의 역할갈등으로 직장과 가정의 영역 모두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Clark, 2001). Clark(2000)은 일과 가족의 체계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모두 일과 가족이라는 세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영역 사이에서의 경계를 형성하며 매일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보았다.

Greenhaus, et, al.,(2003)은 일·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일·가정강화(work-family enrichment), 일·가정통합(work-family integration) 등 일과 가정의 관계를 표현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일·가정양립(work-family balance)이라는 단어를 가장 널리 인용되는 표현이라고 소개하며 일·가정양립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시간균형, 참여균형, 만족도 균형으로 제안하였다. 즉, 일·가정양립이란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동등한 소요시간을 갖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동등한 심리적 참여 수준을 가지며, 그 역할에 대한 동일한 만족도를 가지는 것이다(Greenhaus, et, al., 2003).

Grzywacz, et, al. (2007)은 일·가정양립을 직장(일)과 가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 관련 기대치에 대한 성취로 정의하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수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역할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역할과 관련된 책임의 고유한 사회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전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취와 만족을 포함하였지만, Grzywacz, et, al. (2007)의 정의는 역할 관련 책임달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가정양립을 사회적인 영역에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이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은 개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 즉,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태로 두 영역에서의 관점이 충돌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일과 가정, 두 영역 간의 시간과 책임, 그리고 중요성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도혜, 2022; 왕이서, 2022). 또한, 이러한 일·가정양립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출산율, 가족의 형성,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왕이서, 2022).

하지만 일·가족갈등, 일·가정갈등, 일·가족균형, 일·가정양립 등과 같은 용어는 가족, 가정이라는 개념 안에 개인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으며(왕이서, 2022), 혼자 사는 개인, 독신 가정의 삶의 영역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미시체계를 가족 혹은 가정이 아닌 삶 혹은 생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일 이외의 영역을 가정이 아닌 생활 혹은 삶으로 확장하게 시킴에 따라, 성별 여부뿐 아니라, 결혼 여부, 자녀 여부와도 무관하게,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하영, 2022). 이러한 대상의 확대 측면뿐 아니라, 개념적 측면에서도, 생활 혹은 삶이라는 개념은 가족생활과

더불어 개인의 건강, 여가활동 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개념의 확대 또한 가져올 수 있기에, 일·생활균형, 일·삶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김연희, 2022; 오수진, 2022).

Thompson(2022)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일과 생활의 체계는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이기에 모든 생활영역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Johnston(2002)는 ‘일’을 일반적으로 유급고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삶’은 일 이외의 활동으로 정의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은유의 한 형태로 설명하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와 측정 모두를 가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는 일·생활 갈등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에 따라 성취되는 일과 생활의 균형상태(최하영, 2022; 오수진, 2022)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과 삶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제공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차원으로도 설명된다(김리아, 2022; 김연희, 2022).

위와 같은 개념적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일·가정양립이란, 서로 다른 역할을 갖는 이질적인 영역인 동시에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일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이 각각 갈등이 아닌 균형을 이루며 각 영역에서의 조화를 통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일·가정양립은 그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 한정지어 직장영역에서의 근로의 책임과 가정영역에서의 돌봄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 여부, 자녀의 여부, 나아가 결혼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정보다 더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생활양립 혹은 일·생활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과 정책 및 제도에 ‘일·가정양립’이라는 용어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2. 일·가정양립정책의 구성요인

### 1)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거나 퇴직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성휴가, 부성휴가 그리고 부모 육아휴직으로 구성된다.

출산휴가 또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는 주로 직장여성이 출산시점 전후 일정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직장복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제103호 ILO 협약(2000)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최소 14주로, 적용대상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신휴가와 출산휴가를 이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출산 직전과 직후의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출산휴가와 관련된 소득 지원제도(income support payments)를 도입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출산휴가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없지만, 관련 규정은 육아휴직제도에 통합되어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탄력적인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촉진되고 있다. 현재 국가마다 여성에게 제공되는 출산 육아휴직의 기간과 소득대체율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법적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미국이 있는 반면에 핀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국가처럼 160 주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허용한 국가들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이 비슷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천차만별이다. 칠레와 벨기에는 여성들에게 약 30주의 모성 휴가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전자는 휴가 중인 여성에게 원 급여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원 급여의 40%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성휴가 또는 배우자휴가(paternal leave)는 자녀가 태어난 지 몇 달

안에 아버지로서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이 또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다(남국현, 2022). 현재 배우자휴가는 국제협약에 의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성휴직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도입 시기도 늦은 편이다. 각 국가는 자율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은 법적으로 남성들에게 52.6주의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OECD국가 중 부성휴가를 가장 많이 제공된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원급여의 약 30%만 보장되고 있어 남성에게 50주의 휴가를 제공하는 일본에 비해 소득대체율은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무급휴가 혹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을 제공한 나라들에서는 휴가를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이와는 다르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독일 등 나라는 양도 불가능한 아빠 전용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아이슬란드 육아휴직제도는 모성휴가(3개월), 부성휴가(3개월), 양도 가능한 부모휴가(3개월)을 도입하여 타 국가들에 비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월등히 증가 시켰다(Hegewisch & Risman, 2022).

셋째, 부모 육아휴직(parental leave)은 일을 하는 부모에게 허용되는 고용보호를 받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휴가나 배우자휴가를 사용한 후에 보충하는 제도로 간주 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하고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에 소득지원금은 대부분 가구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많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여성 혹은 남성에게만 부여하고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추가 장려 주(bonus paid weeks)’까지 받을 수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모성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반 이상의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12개 국가에서 남성만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인의 일-가정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가구 경제적 복지수준의 보장, 산모와 영유아 건강의 증진 그리고 남성의 가정노동 참여의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편 학자들이 육아휴직이 가정이나 여성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관련 논의는 주로 기간과 이용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ertolini & Musumeci, 2022; Kunze, 2020; Perry & Gerstel, 2020). 우선 기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직장복귀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자의 관계는 ‘U’자형으로 나타났다. 출산 여성의 직장 복귀여부와 복직 시기는 유급 출산, 육아휴직의 관대성과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짧은 육아휴직은 여성의 직장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긴 휴가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Boeckmann et al., 2015; Gangl & Ziefle, 2015; Ferragina, 2019). 이에 대해 Kunze(2020)는 40~50주 이내의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여성들이 출산 전의 직장과 직위로 복직한 확률이 높은 반면, 지나친 긴 휴가를 제공할 경우에는 여성의 재취업과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직장 내의 여성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고 남녀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육아휴직이 정책의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육아휴직의 이용 상황에 있어서 뚜렷한 남녀차이가 포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주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혹은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외에 대부분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산모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문화 등이 있다(김진욱, 2008; 조선주 외, 2020). 즉, 대부분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성은 휴가 기간 동안 제대로 소득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적게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아휴직 이용에 나타나는 남녀차이는 휴가사용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의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자신에게 허용된 휴가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며,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남성은 자신을 직장

이나 업무에서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휴가에서 기존의 소득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가 정책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 2) 공공 가족수당지출

공공 가족수당지출은 가족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재정적 지원 등을 의미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아동수당과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지원금 등을 포함한 유자녀 가정에게 현금지원(cash transfers)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국가마다 구체적인 지급 수준이 다른데 대부분 아동의 연령 혹은 가구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보건이나 주택 등과 관련된 보조나 지원들도 가족의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 가정양립 관련 OECD의 지표에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 두 번째는 유자녀 가정에게 현물 서비스(benefits in kind)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주로 보육과 조기 교육 시설의 운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보조금, 부모에게 제공되는 공공보육 특별 지원금 가족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시설중심의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세금면제(taxemptions), 아동세 수당(child tax allowances), 그리고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s) 등 일련의 면세제도를 통해 유자녀 가족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OECD, 2021).

이런 의미에서 가족수당 지출 비중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공적 가족수당지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헝가리 3.37%, 덴마크 3.4%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소폭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1.3%로 OECD 평균치(2.34%)보다 낮으며 35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지원은 부모권보장의 한 중요한 영역이며 최근의 정책은 육아에 대한 서비스나 보조금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해 주는 경향이 더욱 명확해졌다. 유럽은 오랫동안 현금보조를 통해 부모의 아동 돌봄을 지원해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족 현금지원은 가족수당 및 아동수당인데 급여(wage packet)

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럽에서 보편화되면서 유자녀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유자녀가정과 무자녀가정 간의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현금지원 중심적인 가족정책들은 2000년대부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에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지불되어왔던 수당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으로 바뀌었다. 즉, 새로운 정책은 여전히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지불하는 방식과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아동 돌봄 지향적인 정책으로 변신하고자 하였다(Daly, 2022; 강지원, 2022). 공공 가족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1990년대부터 대부분 국가는 현금 이전보다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OECD, 2011). 현재 여전히 대부분 국가에서 현금지원보다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높지만, 점점 전자의 대비 지출이 GDP 줄어 들고 후자에 대한 공공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 3. 일·가정양립정책 연구의 과제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심각하게 감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출산 관련 연구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제도, 보육지원과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배광일·김경신, 2011; 배정연·홍석자, 2010)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은 실제로 시행되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로 현 정책에 대한 유효성이나 실효성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출산율 결과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고(이혜정·유규창, 2011), 지원정책의 수혜는 오히려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정성호, 2012). 윤나라 외(2021)는 여성의 근무 일수나 근로시간과 같은 제반적 처우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일·가정양립정책은 영향이 없음을 밝혀 지원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하였고, 이승주·문승현(2017)의 연구에서는 근무 형태나 직장 형태와 같은 근로 관련 요인은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휴가나 출산장려금과 같은 제도요인은 유의하지 않게 작용했다. 또한 일·가정양립정

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였으나, 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오히려 출산계획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검증된 연구도 있다(정성호, 2012).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일·가정양립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연 출산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이 어떠한 사회자본의 하위변인을 통해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제5절 본 연구의 개념 틀

기존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 오늘날 여성의 삶에 있어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 논의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 요인들 포함한 간략한 형태(reduced-form)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은 <그림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2> 연구의 개념적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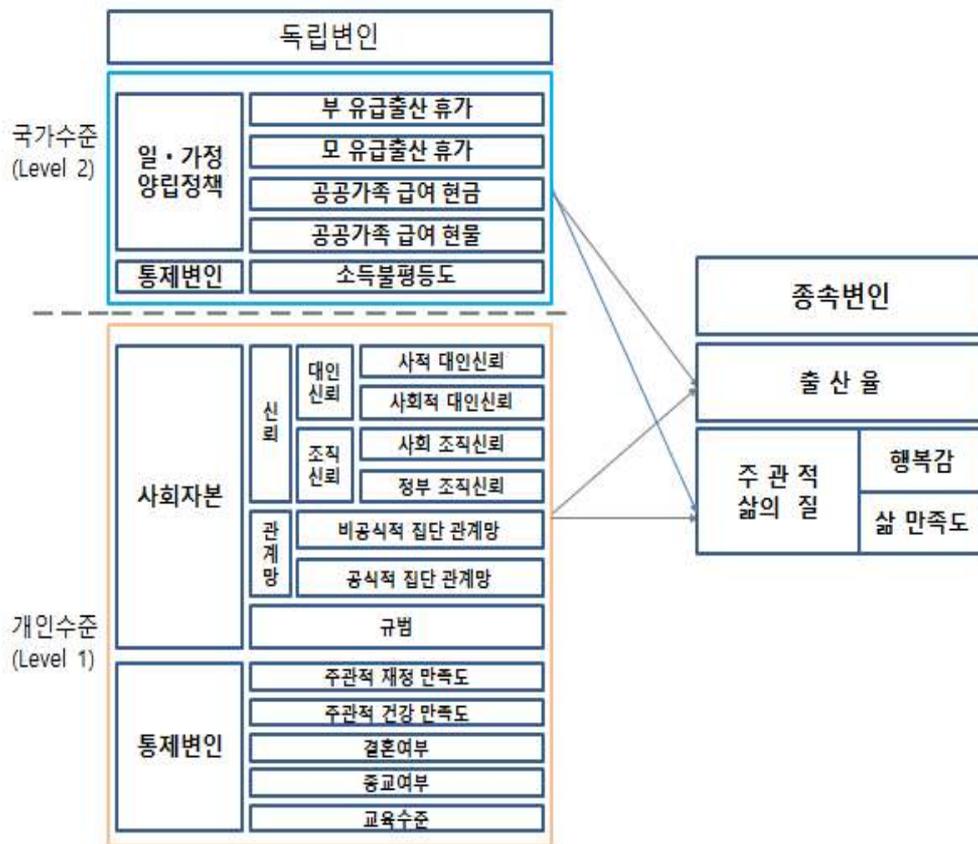
먼저, 결과(outcome) 변수에 해당하는 출산율은 여성의 자녀 수로 주관적 삶의 질은 행복감과 삶 만족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의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O)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인구·경제학적 요인(D)과 자원의 단위에 따라 개인요인인 사회자본(S)과 국가요인인 일·가정양립정책(W)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출산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개인요인인 사회자본(S)과 국가요인인 일·가정양립정책(W)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다층적 접근 방식은 인구학적, 경제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해왔던 기존의 단편적인 논의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한 출산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의 설정은 자원의 획득에 기반하여 이를 설명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 및 욕구에 의한 출산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여성(개인)의 효용(utility)이나 삶의 질 추구의 관점에서 출산과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가정경제학과 삶의 질 통합이론의 논의에 반(反)한다기보다는 오늘날 여성의 현실에 맞게 확장·보완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요인인 사회자본과 국가요인인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국가 여성의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그림 3-1>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1. 분석자료

#### 1) 개인수준 분석자료

본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자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5년마다 세계 80여 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출생아, 주관적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 사회, 정치에 대해 조사해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이다. WVS의 조사 대상은 전 세계 80여 개국의 18세 이상 인구이며 한 회차당 국가별 조사대상 인원은 최소 1,000명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WVS2020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은 한 국가당 최소 169(뉴질랜드)명에서 최대 864(미국)명이다. WVS의 자료표집은 각각의 국가별로 완전 확률표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확률적으로 선택한 군집 내에서 할당표집을 실시한다. 설문은 1:1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화, 메일, 인터넷을 활용한다.

WVS2020의 조사시기는 2017년~2019년이며 2019년에 최종자료수집 및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어 2020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2월 OECD 34개국 중 WVS2020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13개국을 제외한 21개 국가 중 분야별 일·가정양립정책 통계를 제공한 OECD 9개국 호주, 독일, 그리스, 일본,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의 개인단위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 2) 국가수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국가수준 분석자료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네 가지 주요 하위제도에 관한 내용은 OECD Family Database를 소득불평등도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orldbank, 2019)를 활용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들이 모두 포함된 최신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활용 가능한 최신자료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에 관련된 자료는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mothers/fathers(2018)를 활용하였고 공공 가족수당 지출 자료는 최신 데이터인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2017) 지표를 활용하였다.

##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9개 OECD 국가(호주, 독일, 그리스, 일본, 한국, 뉴질랜드, 터키, 멕시코, 미국)의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총 4.113명 여성이다. 20~40대 여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출산의 1차적 주체가 여성이며 출산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여성의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령 기준의 경우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조출생율 등의 출산에 관한 지표를 산정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출산이 가능한 기준 나이를 15세에서 49세 사이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통계청, 2019; OECD, 2019)을 고려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2차 데이터의 연구대상인 여성의 실제 출산연령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상으로 연령 범위를 최종결정하였다.

### 제3절 주요변인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절에서는 종속변인인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 사회적 사회적 관계인 독립변인 사회자본(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 일·가정양립정책(유급출산휴가와 공공가족급여), 개인수준측정통제변인(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여부, 종교, 교육수준),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소득불평등도)의 정의 및 척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출산율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자기 생애전망과 재생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국가의 출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as: TFR) 지표는,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기반으로 단지 출산율의 제고에만 정부 인구정책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재생산적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 및 관련 권리의 보장과 여성들의 선택에 따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확보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검토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보다 여성의 실제 자녀수를 출산율의 척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출산율은 <표 1>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 1> 출산율 측정

문항	응답	비고	출처
당신은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음		WVS 2020
	② 한명		
	③ 두명		
	④ 네명		
	⑤ 네명		
	⑥ 다섯명		
	⑦ 여섯명		
	⑧ 일곱명 이상		

## 2. 주관적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여성이 그들이 경험하는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 인지적 측면인 주관적 삶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은 <표 2>와 같이 측정하였다.

<표 2> 주관적 삶의 질

문항	응답	비고	출처
행복감			
모든 상황을 고려할시 당신의 행복은 현재 어느 정도로 여기십니까?	① 완전히 행복하다.	역으로 재부호화	WVS 2020
	② 행복한 편이다.		
	③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④ 전혀 행복하지 않다.		
삶 만족도			
모든 상황을 고려할 시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어느 정도로 여기십니까?	① 대단히 불만족한다.	-	
	...		
	⑩ 완전히 만족한다.		

## 3.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주어진 공동체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긍정적 행위를 하도록 촉진하고 유도하는 대인신뢰(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조직신뢰(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관계망(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은 <표 3>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 3> 사회자본

구분	문항	응답	비고	출처	
신뢰	사적대인신뢰			W V S 2020	
	대인신뢰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로 여기십니까?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① 완전히신뢰한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문항수(3) 으로나눔
			② 약간신뢰한다		
			③ 별로신뢰하지않는다		
			④ 전혀신뢰하지않는다		
	사회적대인신뢰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로 여기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① 완전히신뢰한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3)으로나눔
			② 약간신뢰한다		
			③ 별로신뢰하지않는다		
			④ 전혀신뢰하지않는다		
	조직신뢰	사회 조직신뢰			
귀하는 아래와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로 여기십니까? (텔레비전, 대기업, 환경운동단체, 교회, 신문, 여성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노동조합)		① 완전히신뢰한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8)로 나눔		
		② 약간신뢰한다			
		③ 별로신뢰하지않는다			
		④ 전혀신뢰하지않는다			
정부 조직신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군대, 경찰, 사법부, 행정부, 정당, 의회)	① 완전히신뢰한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문항수(6) 으로 나눔			
	② 약간신뢰한다				
	③ 별로신뢰하지않는다				
	④ 전혀신뢰하지않는다				
관계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귀하께서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가 있으시면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스포츠·레크레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적 활동, 종교나 교회단체)	① 회원아님	②를 ①로 재부호화한 후회원으로 있는 단체 수를 합산		
		① 소극적회원			
		② 적극적회원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귀하께서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가 있으시면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정당, 노동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환경보호단체, 인권 혹은 자선단체, )	① 회원아님	②를 ①로 재부호화한 후회원으로 있는 단체 수를 합산			
	① 소극적회원				
	② 적극적회원				
규범	귀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여기십니까? (탈세, 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뇌물수수)	① 전혀정당화될 수 없다.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문항수 (4)로 나눔		
		...			
		⑩ 항상정당화된다			

## 4. 일·가정양립정책

본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이질적인 영역인 동시에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일과 가정의 영역이 균형을 이루며 각 영역에서 역할의 조화를 통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가정양립 정책은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표 4>, 공공 가족급여지출 <표 5>로 측정하였다.

### 1)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표 4>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측정

요소	측정방법	출처
부유급출산휴가	남성의 출산 육아휴직 기간(주)	OECD Family Database(2018)
모유급출산휴가	여성의 출산 육아휴직 기간(주)	

### 2) 공공가족급여

<표 5> 공공가족급여 측정

요소	측정방법	출처
공공가족급여현금	GDP대비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에 지출한 비율(%)	OECD Family Database(2017)
공공가족급여현물	GDP대비 시설 및 가족지원 등 현물에 지출한 비율(%)	

## 5. 통제변인

본 연구의 개인수준 통제변인과 국가수준 통제변인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살펴보았다.

### 1) 개인수준 통제변인

개인수준 통제변인에는 주관적 재정 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유무, 종교,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이 있다.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은 <표 6>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 6> 개인수준 통제변인 측정

요소	문항	응답	비고	출처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생활을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① 초등학교중퇴	-	WVS 2020
		② 초등학교졸업		
		③ 중학교중퇴		
		④ 중학교졸업		
		⑤ 고등학교중퇴		
		⑥ 고등학교졸업		
		⑦ 전문대		
		⑧ 대학교		
재정상태	귀하 가정의 재정 상태는?	① 매우 불만족	-	
		...		
		⑩ 완전히 만족		
종교		①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①로 더미화	
		① 개톨릭		
		② 개신교		
		③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④ 유대		
		⑤ 무슬림		
		⑥ 힌두		
		⑦ 불교		
		⑧ 기타		
혼인상태		① 기혼	① ②를 ①으로 ③ ④ ⑤ ⑥을 ①로 더미화	
		② 동거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미혼		
주관적 사회계층	귀하는 다음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여기십니까?	① 상류	역으로 재부호화	
		② 중상위		
		③ 중하류		
		④ 근로계층		
		⑤ 하류		

## 2) 국가수준 측정 통제변인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에는 소득불평등도가 있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을 <표 7>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 7> 국가수준 통제변인 측정

요소	내용	비고	출처
소득불평등도	GINI계수(세후) 0(매우 평등)~ 1(매우 불평등)	해당값은 자연Log 치환하여 분석	OECD StatExtracts(2019)

## 제4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 1)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개인·국가 요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초자료로 개인수준 변인의 일반적 특성, 국가수준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주요변인 자료로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 사회자본, 일·가정양립정책 수준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SPSS for Window 27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수준 변인과 국가수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 2)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HLM 8.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단위 특성 요인인 사회자본과 국가단위 특성인 일·가정양립정책의 위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2수준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은 다층선형모형(multilevel linear model, Mason, Wong, & Entwisle, 1983) 또는 혼합선형모형(mixed linear model, Goldstein, 1986), 무선회귀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s, Rosenberg, 1973),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Raudenbush, & Bryk, 2002)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수준(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인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조직신뢰, 정부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을 투입하고, 2수준(정책 수준)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에 속하는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해당하는 행복감, 삶 만족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일반적 회귀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이것이 집단 내 상관을 고려하여 개인들 간의 표준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집단 내에 있으면서 많은 집단들이 함께 표집된 경우, 즉 자료 내에 위계적 구조가 존재할 상황에는 개인자료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기 어렵다. 이는 동일한 사회나 집단에 속하는 개인 간에는 더 강한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자료도 여러 국가의 개인 자료가 하나의 데이터로 연결된 것으로써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확인에 있어서도 국가요인의 영향을 받는 동일한 국가 내 개인들이 다른 국가의 개인들보다 더 강한 유사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의 다층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층모형은 각 군집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집 되었다고 전제하는데

분석을 위해 활용된 본 연구의 집단은 OECD 9개국으로 그 분포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군으로 알려진 국가들을 고루 포괄하고 있어 무작위 표집으로 전제하더라도 연구결과 도출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은 <표 8>과 같다.

<표 8>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

내 용	분석방법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 및 사회지원의 변량	기초모형 분석(HLM) • (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연구문제 1] •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중간모형 분석(HLM) •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연구문제 2] •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중간모형 분석(HLM) •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연구모형 분석(HLM) • (Intercepts as Outcome Model)

변수들은 각 수준에서 전체 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였고, 2수준 다층모형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주어진 데이터가 다층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지(종속변수의 집단 간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아무런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무선효과 일원 분산분석모형(random effects one-way anova)으로, 아무런 설명변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모형이라고도 칭해진다(정혜원·전현정, 2015).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평균과 신뢰구간을 알 수 있으며, 종속변수의 전체 관찰분산 중 몇 %가 1수준과 2수준 분산인지를 알 수 있는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분석에서 각 수준의 분산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강상진, 2017).

둘째, 출산율과 주관적 삶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설명 변량을 산출하고자 집단 내 모형에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요인을 투입하는 중간모형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단위 변인을 투입하고 국가단위 변인은 투입하지 않는다. 이는 절편, 기울기의 계수가 국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형에 해당하며,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과의 변량 추정치 비교를 통해 개인단위 설명 변량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국가단위에 해당하는 변인만을 투입한 후 기초모형과의 변량 추정치 비교를 통해 국가단위 변량을 산출하였다.

셋째, 개인단위 및 국가단위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절편 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단위 및 국가 단위 변인의 순수 변량을 산출하였다.

## 2. 분석모형

### 1) 기초모형(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기초모형은 집단 내, 집단 간 모형에 독립변인인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 정책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인인 출산율, 행복감 및 삶 만족도와 집단 구분만 있는 최소 모형에 해당한다.

### 2) 중간모형(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중간모형은 출산율, 행복감 및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단위 변인인 사회자본과 개인단위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변량을 산출하는 모형과 국가단위 변인인 일·가정양립 정책과 국가단위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변량을 산출하는 모형에 해당한다. 무선효과 검증과 모형의 간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형

에서 주요 관심 이외의 변인들의 회귀계수를 0으로 고정하였다.

### 3) 연구모형(Intercepts as Outcome Model)

연구모형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내 모형에 개인단위 변인인 사회자본과 개인단위 통제변인을 투입하였고 국가 간 모형에서는 국가단위 변인인 일·가정양립정책과 국가단위 통제변인을 투입하였다.

## 제4장 실증분석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 개인수준 변인의 일반적 특성

개인수준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개인수준변인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혼인여부	배우자 유	2695	65.5%
	배우자 무	1418	34.5%
	전체	4113	100%
종교유무	종교유	2649	64.4%
	종교무	1464	35.6%
	전체	4113	100%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업	89	2.2%
	중학교 졸업	574	14%
	고등학교 졸업	1720	41.9%
	전문대	385	9.4%
	대학교 이상	1345	32.7%
	전체	4113	100%
건강상태	매우나쁨	149	3.6%
	나쁨	817	19.9%
	보통	2062	50.1%
	좋음	1068	26%
	매우 좋음	17	0.4%
	전체	4113	100%

구분		빈도	백분율(%)
사회계층	매우낮음	303	7.4%
	낮음	1038	25.2%
	보통	1685	41%
	높음	1050	25.5%
	매우높음	37	0.9%
	전체	4113	100%
수입정도	매우 불만족	214	5.2%
	2단계	221	5.4%
	3단계	400	9.7%
	4단계	758	18.4%
	5단계	882	21.4%
	6단계	700	17%
	7단계	545	13.3%
	8단계	250	6.15
	9단계	93	2.3%
	매우만족	50	1.2%
	전체	4113	100%
국가	호주	439	10.7%
	독일	340	8.3%
	그리스	298	7.2%
	일본	308	7.5%
	한국	336	8.2%
	멕시코	519	12.6%
	뉴질랜드	169	4.1%
	터키	840	20.4%
	미국	864	21%
	전체	4113	100%

혼인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은 65.5%, 배우자 없음이 34.5%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를 살펴보자면 종교가 있음이 64.4%, 종교가 없음이 35.6%로의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초등교육이하는 2.2%, 중등교육은 14%, 고등교육은 41.9%, 전문대 9.4%, 대학교육 이상은 32.7%로의 분포를 나타냈다. 여성

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나쁨 3.6%, 나쁨 19.9%, 보통 50.1% 좋음 26%, 매우 좋음 0.4%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주관적 사회계층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낮음 7.4%, 낮음 25.2%, 보통 41%, 높음 25.5%, 매우 높음 0.9%로 나타났다. 재정만족도를 살펴보면 4단계 18.4%, 5단계 21.4%, 6단계 17%, 7단계 13.3%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9단계 2.3%, 매우만족 1.2%로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다. 국가별 여성 인원은 미국 21%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터키 20.4%, 멕시코 12.6%, 호주 10.7%, 독일 8.3%, 한국 8.2%, 일본 7.5%, 그리스 7.2% 뉴질랜드 4.1% 순으로 나타났고, 총 4,113명의 여성이 조사대상에 포함 되었다.

## 2. 국가수준 측정변인 일반적 특성

<표 10> 국가수준변인 특성

구분	여성1인당 GDP	여성 고용율	소득불평등도
호주	39287	66	34.4
독일	45277	73.2	31.9
그리스	24062	47.5	34.4
일본	30584	70.7	32.9
한국	27734	56.7	31.6
멕시코	12765	47	45.4
뉴질랜드	31233	72.2	34.9
터키	17854	29.7	41.9
미국	50590	62.2	41.4
평균	33291	54	38
빈도	9	9	9
표준편차	11857.90	15.22	4.84
최소값	17854	29.7	31.6
최대값	50590	73.2	45.4

국가수준 측정변인의 전체와 국가별 일반적 특성은 <표-10>과 같다. 9개 OECD 국가의 여성 1인당 GDP는 33,291\$이며 여성 고용률은 54% 달한다.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GINI 계수는 .38로 나타났다. 국가별 여성 1인당 GDP, 여성 고용률,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성 1인당 GDP는 미국 50.5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독일 45.227, 호주 39.287, 이룬 30.587, 한국 27.734, 그리스 24.062, 터키 17.845, 멕시코 12.765 순이었다.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독일이 73.2%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72.2%, 일본 70.7%, 호주 66%, 미국 62.2%, 한국 56.7%, 그리스 47.5%, 멕시코 47%, 터키 29.7% 순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여성 1인당 GDP와 비슷한 순위를 고용률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는 멕시코가 45.4%로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터키 41.9%, 미국 41.4%, 뉴질랜드 34.9%, 그리스 34.4%, 호주 34.4%, 일본 32.9%, 독일 31.9% 한국 31.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9개국만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성 1인당 GDP, 여성 고용률은 높지 않으나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보인다.

### 3. 주요변인 기술통계

본 절에서는 주요변인인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 수준과 국가별 수준을 살펴 보았다.

#### 1) 출산율

출산율 전체평균은 1.40명으로 최소값 0, 최대값 15이다. 국가별로 멕시코가 2.0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1.48, 미국 1.47, 뉴질랜드 1.42, 호주 1.39, 한국 1.20, 터키 1.20, 독일 1.12, 그리스. 99 순이었다. 한국은 OECD 9개국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어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기술통계는 <표 11>과 같다.

<표 11> 출산율의 기술통계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호주	439	1.39	1.27
독일	340	1.12	1.21
그리스	298	.99	1.00
일본	308	1.48	1.14
한국	336	1.20	1.04
멕시코	519	2.06	1.27
뉴질랜드	169	1.42	1.23
터키	840	1.21	1.37
미국	864	1.47	1.61
전체	4113	1.40	1.35
F값	25.210***		
최소값	0		
최대값	15		

\* : p<0.05, \*\* : p<0.01, \*\*\* : p<0.001

## 2)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의 두 가지 항목은 행복감과 삶 만족도이다. 행복감 전체 평균은 3.17(최소값 1, 최대값 4)이며 삶 만족도 전체평균은 7.16(최소값 1, 최대값 10)으로 여성의 행복감, 삶 만족도는 중간보다 높으나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 기술통계는 <표 12>와 같다.

<표 12> 주관적 삶의 질의 기술통계

구분	행복감			삶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호주	439	3.24	.60	439	7.48	1.66
독일	340	3.20	.62	340	7.71	1.66
그리스	298	2.97	.74	298	6.78	1.90
일본	308	3.30	.57	308	6.82	1.90
한국	336	2.94	.34	336	6.81	1.23
멕시코	519	3.51	.63	519	8.07	2.12
뉴질랜드	169	3.28	.55	169	7.48	1.57
터키	840	3.08	.68	840	6.60	1.87
미국	864	3.11	.64	864	7.10	1.97
전체	4113	3.17	.64	4113	7.16	1.90
F값	34.69***			36.10***		
최소값	1			1		
최대값	4			10		

\* : p<0.05, \*\* : p<0.01, \*\*\* : p<0.001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4.69, p<.001). 여성의 행복감은 멕시코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3.30, 뉴질랜드 3.28, 호주 3.24, 독일 3.20, 미국 3.11, 터키 3.08, 그리스 2.97, 한국 2.94 순으로 한국 여성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한국은 호주, 독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삶 만족도 또한 통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6.10, p<.001). 여성의 주관적 삶 만족도의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멕시코가 8.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 7.71, 호주 7.48, 뉴질랜드 7.48,

미국 7.10, 일본 6.82, 한국 6.81, 그리스 6.78, 터키 6.60 순으로 한국 여성의 주관적 삶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한국 여성의 주관적 삶 만족도가 멕시코, 호주, 독일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의 국가별 순위와 관련하여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높은 수준이거나(멕시코, 뉴질랜드)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경우(그리스)가 있는가 하면 행복감의 순위는 비교적 높지만, 주관적 삶 만족도는 낮은 경우(일본, 한국)도 있어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행복감에서 최하위를 주관적 삶 만족도에서도 하위로 분석되어 한국 여성의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3)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대인신뢰, 조직신뢰, 관계망, 규범으로 구분하고 대인신뢰는 사적, 사회적 대인신뢰로 조직신뢰는 사회 조직, 정부 조직 신뢰로 관계망은 비공식적, 공식적 집단관계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의 대인신뢰(최소값 1, 최대값 4) 중 사적 대인신뢰는 3.13, 사회적 대인신뢰는 2.33이다. 조직신뢰(최소값 1, 최대값 4)와 관련하여 사회조직신뢰는 2.41, 정부조직신뢰는 2.35이다. 평균 .23개의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최소값 0, 최대값 3)과 평균 .13개(최소값 0, 최대값 6)의 공식적 집단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상대적으로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규범은 8.61(최소값 1, 최대값 10)이다. 각각을 백분위로 환산해 보면 사적 대인신뢰는 78.25점, 사회적 대인신뢰는 58.25점, 사회 조직신뢰는 60.25점, 정부 조직신뢰는 58.75점, 규범은 86.1점으로 여성의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가 대인신뢰, 규범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사적 대인신뢰 및 규범은 백분위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즉, 여성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은 비교적 신뢰

하고 있지만 언론·사회단체 등 사회조직, 잘 모르는 사람, 정치·행정 등을 관찰하는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수준은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것을 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국가별 사회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 대인신뢰( $F=49.02, p<.001$ ), 사회적 대인신뢰( $F=149.18, p<.001$ ), 사회 조직신뢰( $F=47.72, p<.001$ ), 정부신뢰( $F=190.43, p<.001$ ),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F=70.28, p<.001$ ), 공식적 집단관계망( $F=78.08, p<.001$ ), 규범( $F=88.18, p<.001$ )은 국가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적 대인신뢰는 뉴질랜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주 3.30, 독일 3.30, 한국 3.18, 터키 3.18 그리스 3.17, 일본 3.05, 멕시코 2.8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인신뢰는 호주가 2.78로 가장 높았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뉴질랜드 2.77, 미국 2.74, 독일 2.51, 터키 2.14, 일본 2.06, 그리스 2.00, 한국 1.99, 멕시코 1.9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적 대인신뢰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사회적 대인신뢰는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사적 대인신뢰는 가장 높은 수준인 뉴질랜드와 가장 낮은 수준인 멕시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적 대인신뢰는 한국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호주, 독일, 뉴질랜드, 미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의 기술통계는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자본의 기술통계 : 대인신뢰

구분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호주	439	3.30	.40	439	2.78	.55
독일	340	3.30	.38	340	2.51	.61
그리스	298	3.17	.46	298	2.00	.69
일본	308	3.05	.42	308	2.06	.47
한국	336	3.18	.39	336	1.99	.61
멕시코	519	2.82	.64	519	1.90	.79
뉴질랜드	169	3.38	.33	169	2.77	.49
터키	840	3.18	.47	840	2.14	.71
미국	864	3.08	.51	864	2.74	.60
전체	4113	3.13	.50	4113	2.33	.73
F값	49.02***			149.18***		
최소값	1			1		
최대값	4			4		

\* : p<0.05, \*\* : p<0.01, \*\*\* : p<0.001

사회 조직신뢰는 뉴질랜드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2.58, 독일 2.56, 한국 2.55, 터키 2.48, 호주 2.41, 미국 2.41, 그리스 2.16, 멕시코 2.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증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인 미국, 그리스, 멕시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 조직신뢰의 경우 터키 2.80, 뉴질랜드 2.65, 독일 2.59, 일본 2.46, 호주 2.39, 한국, 2.35, 미국 2.22, 그리스 2.04, 멕시코 1, 67 순으로 나타나는데 사후검증 결과 터키, 뉴질랜드, 독일은 한국 여성에 비해 높은 신뢰수준을 그리스, 멕시코는 한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정부 조직신뢰 수준이 나타났다.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의 기술통계는 <표 14>와 같다.

<표 14> 사회자본 기술통계 : 조직신뢰

구분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호주	439	2.41	.43	439	2.39	.52
독일	340	2.56	.43	340	2.59	.51
그리스	298	2.16	.47	298	2.04	.52
일본	308	2.58	.41	308	2.46	.50
한국	336	2.55	.45	336	2.35	.52
멕시코	519	2.10	.62	519	1.67	.63
뉴질랜드	169	2.59	.38	169	2.65	.49
터키	840	2.48	.59	840	2.80	.66
미국	864	2.41	.53	864	2.22	.54
전체	4113	2.41	.54	4113	2.35	.66
F값	47.72***			190.43***		
최소값	1			1		
최대값	4			4		

\* : p<0.05, \*\* : p<0.01, \*\*\* : p<0.001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호주가 평균 .44개의 관계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뉴질랜드 .39, 독일 .35, 미국 .31, 멕시코 .24, 한국 .14, 그리스 .11, 일본 .10, 터키 .08개 순으로 한국은 중위에 위치하며 최상위인 호주, 뉴질랜드, 독일, 미국, 멕시코 보다는 유의미하게 적은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집단관계망 크기는 미국이 .25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호주 .20, 뉴질랜드 .17, 멕시코 .16, 독일 .07, 터키 .05, 그리스 .05, 한국 .04, 일본 .03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호주 보다 공식적 집단관계망 크기가 작은 것으로 사후검증 결과 나타났다. 관계망의 크기와 관련하여 미국 호주 같은 국가들이 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및 공식적 집단관계망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의 기술통계는 <표 15>와 같다.

<표 15> 사회자본 기술통계 : 관계망

구분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호주	439	.44	.39	439	.20	.22
독일	340	.35	.37	340	.27	.14
그리스	298	.11	.26	298	.05	.14
일본	308	.10	.23	308	.03	.09
한국	336	.14	.30	336	.04	.16
멕시코	519	.24	.39	519	.16	.32
뉴질랜드	169	.39	.37	169	.17	.20
터키	840	.08	.24	840	.05	.14
미국	864	.31	.38	864	.25	.28
전체	4113	.23	.35	4113	.13	.23
F값	70.28***			78.08***		
최소값	0			0		
최대값	3			6		

\* : p<0.05, \*\* : p<0.01, \*\*\* : p<0.001

규범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 9.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독일 9.26, 그리스 9.12, 터키 9.04, 호주 8.87, 뉴질랜드 8.73, 미국 8.25, 한국 8.13, 멕시코 7.31 순이었다.

일본과 독일의 규범수준은 한국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멕시코는 한국보다 규범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규범의 기술통계는 <표 16>과 같다.

<표 16> 사회자본 기술통계 : 규범

	규범		
	N	평균	표준편차
호주	439	8.87	1.44
독일	340	9.26	1.07
그리스	298	9.12	1.19
일본	308	9.52	.78
한국	336	8.13	1.62
멕시코	519	7.31	1.99
뉴질랜드	169	8.73	1.42
터키	840	9.04	1.68
미국	864	8.25	1.69
전체	4113	8.61	1.69
F값	88.18***		
최소값	1		
최대값	10		

\* : p<0.05, \*\* : p<0.01, \*\*\* : p<0.001

사회자본의 하위영역별로 국가별 위치가 다양하지만 대인신뢰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조직신뢰는 뉴질랜드, 일본, 터키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관계망 또한 뉴질랜드를 비롯한 호주 미국에서 규범은 일본, 독일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사적 대인신뢰 수준은 낮게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적 대인신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열악하게 나타났다. 조직신뢰와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 신뢰 수준이 낮았다. 관계망과 관련해서는 공식적 집단관계망 크기 또한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한 규범 수준은 멕시코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4) 일·가정양립정책

사회지원은 국가수준 측정 변인이며 유급출산휴가와 공공가족급여로 나누어진다. 분석 결과 OECD 9개국은 부유급출산휴가에 평균 9.59주, 모유급출산휴가에 29.88주 지원하고 공공가족급여 현금에 GDP의 평균 .54%, 공공가족급여 현물에 GDP의 평균 .63%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정책의 기술통계는 <표 17>과 같다.

<표 17> 일·가정양립정책 기술통계

구분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가정지원 현금	가정지원 현물
호주	2	18	1.4	.7
독일	8.7	58	1.08	1.25
그리스	.4	43	1.3	.32
일본	52	58	.65	.93
한국	54	64.9	.15	.95
멕시코	1	12	.34	.54
뉴질랜드	0	26	1.27	1.19
터키	1	26	.22	.26
미국	0	12	.07	.56
평균	9.59	29.88	.54	.63
빈도	9	9	9	9
최소값	0	12	.07	.26
최대값	54	64.9	1.3	1.25

부유급출산휴가는 한국이 54주를 지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일본 52주, 독일 8.7주, 호주 2주, 멕시코 및 터키 1주 순이었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유급휴가를 지원하지 않았다. 모유급출산휴가는 한국이 64.9주로 가장 높은 지원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일본 및 독일 58주, 그리스 43주,

뉴질랜드와 터키 26주, 호주 16주, 미국과 멕시코 12주 순이었다.

공공가족급여현금은 호주가 GDP의 1.4%로 가장 높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리스 1.3%, 뉴질랜드 1.27%, 독일 1.08%, 일본 .65%, 멕시코 .34%, 터키 .22%, 한국 .15%, 미국 .07%순이었다. 공공가족급여현물을 살펴보면 독일이 GDP의 1.25%로 가장 높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1.19%, 한국 .95%, 일본 .93%, 호주 .7%, 미국 .56%, 멕시코 .54%, 그리스 .32%, 터키 .26% 순이었다.

유급출산휴가와 공공가족급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은 유급출산휴가와 공공가족급여 모두의 지원이 높은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급출산휴가의 지원의 수준은 낮지만 공공가족급여의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 일본은 유급출산휴가의 지원 수준은 높지만 공공가족급여의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에 따라 유급출산휴가와 공공가족급여의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의 방향성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 4. 주요변인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본 절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국가단위, 개인단위 자료들의 결측, 다중공선성 및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 앞서 요구되어지는 중심점 교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체계적 결측에 대한 확인과 처리

연구 자료에 결측치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자료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므로 정확한 연구결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자료 결측의 형태와 양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사례 수가 수백 개를 초과할 때 10-20여 개 정도의 자료 손실일 경우 분석에 있어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독립요인의 결측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요인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결측이 나타나 체계적인 결측에 대한 확인과

자료의 처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료가 갖는 결측의 형태가 체계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결측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와의 자료가 내포하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측된 응답만으로 추정된 연구결과를 보편화하기 어렵다(배병렬, 2002). 연구 자료에서 체계적 결측이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결측치가 포함된 집단과 결측치가 포함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는데(Bourque & Clark, 1992)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결측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조직 신뢰, 주관적 사회계층 간에 무작위 결측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자료가 갖는 결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 MI)을 활용하였다. 다중대체방법은 결측값을 하나의 값으로 치환함으로써 나타나는 단일 대체방법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Schafer, 1999; Rubin & Little, 2002). 다중대체는 단일대체법이 한 개의 대체값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다수의 후보 값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각의 자료에 대해 대체값을 투입한 추정된 계수를 통합하는 방법이다(King, et, al., 2001; Rubin & Little, 2002). 다중대체의 횟수로는 3회에서 10회의 대체를 반복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무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uglas, et, al., 2006). 다중대체방법은 결측의 유형이 임의적 결측이고 각 변수가 정규분포의 조건이 만족되고 분석모형에 포함된 요인을 대체모형에서 모두 포함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추정된 요인의 값에서 편위의 오차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ng, et, al., 2001). 앞선 다중대체방법으로 결측치를 보완하여 모든 사례가 포함된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중대체 분석을 위해 SPSS Window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2)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 결혼여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종교, 교육수준,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불평등도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진단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8> 다중공선성 진단

	출산율		행복		삶 만족도	
	공차	VIF	공차	VIF	공차	VIF
사적대인신뢰	.702	1.424	.702	1.424	.702	1.424
사회적대인신뢰	.647	1.546	.647	1.546	.647	1.546
사회조직신뢰	.648	1.543	.648	1.543	.648	1.543
정부조직신뢰	.635	1.576	.635	1.576	.635	1.576
비공식적집단관계망	.656	1.524	.656	1.524	.656	1.524
공식적집단관계망	.639	1.565	.639	1.565	.639	1.565
규범	.872	1.147	.872	1.147	.872	1.147
주관적재정만족도	.854	1.170	.854	1.170	.854	1.170
주관적건강만족도	.880	1.136	.880	1.136	.880	1.136
결혼여부	.963	1.039	.963	1.039	.963	1.039
종교여부	.673	1.485	.673	1.485	.673	1.485
교육수준	.698	1.432	.698	1.432	.698	1.432
부유급출산휴가	.214	4.677	.214	4.677	.214	4.677
모유급출산휴가	.132	7.567	.132	7.567	.132	7.567
공공가족급여현금	.244	4.099	.244	4.099	.244	4.099
공공가족급여현물	.426	2.347	.426	2.347	.426	2.347
소득불평등도	.139	7.219	.139	7.219	.139	7.219

### 3) 분포의 정규성 검증

각 요인의 왜도와 첨도를 참조하여 연구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각 요인의 첨도는 절대값 10 미만, 왜도는 절대값 3 미만의 경우 연구 자료는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Kline, 1998). 주요요인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한 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요인은 모두 정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자료의 정규성 검증

요소	구분	왜도(S.E)		첨도(S.E)	
개인단위 척도					
종속변인	출산율	1.207	.038	4.527	.076
	행복감	-.480	.038	.550	.076
	삶 만족도	-.682	.038	.291	.076
사회자본	사적 대인신뢰	-.825	.038	1.136	.076
	사회적 대인신뢰	-.179	.038	-.534	.076
	사회 조직신뢰	-.174	.038	.058	.076
	정부 조직신뢰	.012	.038	-.199	.076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1.182	.038	-.073	.076
	공식적 집단관계망	2.170	.038	4.373	.076
	규범	-1.458	.038	1.856	.076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	주관적재정만족도	-.425	.038	-.279	.076
	주관적건강만족도	-.312	.038	-.450	.076
	결혼여부	-.653	.038	-1.574	.076
	종교여부	-.602	.038	-1.638	.076
	교육수준	-.199	.038	-.900	.076
국가수준 척도					
사회지원	부유급출산휴가	1.839	.038	1.467	.076
	모유급출산휴가	.729	.038	-1.033	.076
	공공가족급여현금	.694	.038	-1.232	.076
	공공가족급여현물	.566	.038	-.695	.076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소득불평등도	-.059	.038	-1.571	.076

#### 4) 중심점 교정

HM 분석에서 사용되는 요인의 척도는 크게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원자료를 편차점수로 치환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특히 예측변수의 원자료를 편차점수로 치환하는 방법인 중심점 교정법이 주요한 척도전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Raudenbush & Liu, 2001).

2수준 다층모형의 중심점 교정은 1수준 예측요인에 대한 교정과 2수준 예측요인에 대한 교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층모형에서 예측요인의 척도를 치환하는 방법으로는 예측요인의 원자료 척도를 활용하는 방법(uncentered), 예측요인의 전체 평균값을 원점으로 교정하는 방법(grand mean centering), 각 집단의 평균을 원점으로 교정하는 방법(group mean centering)이 대표적이다(Bryk & Raudenbush, 1992; 서정아, 2013; 방성아, 2017). 또한, 0의 값이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경우 원자료 척도를 활용한다. 또한 예측요인이 가변수(dummy variable)일 경우에도 절편계수에 유의미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심점 교정을 실행한다.

#### 5) 상관관계

개인수준 측정변인(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 주관적 재정 만족도, 주관적 건강 만족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 소득불평등도)을 동시에 투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수준 측정변인 중 행복감( $p < .01$ ), 삶 만족도( $p < .01$ ),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p < .05$ ), 결혼상태( $p < .01$ ), 종교( $p < .05$ )는 양(+)의 상관관계를 사적 대인신뢰( $p < .05$ ), 사회 조직신뢰( $p < .01$ ), 규범( $p < .01$ ), 주관적 건강만족도( $p < .01$ ), 교육수준( $p < .01$ )은 음(-)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수준 요인 중 모유급출산휴가( $p < .01$ ), 공공가족급여현금( $p < .01$ )은

음(-)의 관계를 소득불평등도( $p < .01$ )는 양에 관계를 나타냈다. 즉 개인수준 측정변인에서 행복감, 삶 만족,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결혼상태, 종교, 소득불평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았다.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은 자녀 수( $p < .01$ ), 삶 만족( $p < .01$ ), 사적대인신뢰( $p < .01$ ), 사회조직신뢰( $p < .01$ ), 정부조직신뢰( $p < .01$ ),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p < .05$ ), 주관적 재정만족도( $p < .01$ ), 주관적 건강만족도( $p < .01$ ), 결혼상태( $p < .01$ ), 종교( $p < .01$ ), 교육수준( $p < .01$ )이며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수준 변인 중 부유급출산휴가( $p < .01$ ), 모유급출산휴가( $p < .01$ )는 음(-)의 상관관계를 공공가족급여현금( $p < .05$ ), 공공가족급여현물( $p < .01$ )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개인수준 측정변인에서 자녀 수, 삶 만족, 사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수준 변인에서는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수준이 클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국가수준 변인에서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의 수준이 클수록 오히려 여성의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은 자녀 수( $p < .01$ ), 행복감( $p < .01$ ), 사적 대인신뢰( $p < .01$ ), 사회적 대인신뢰( $p < .01$ ), 정부 조직신뢰( $p < .01$ ),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p < .01$ ), 공식적 집단관계망( $p < .05$ ), 주관적 재정만족도( $p < .01$ ), 주관적 건강만족도( $p < .01$ ), 결혼상태( $p < .01$ ), 교육수준( $p < .01$ )이며 주관적 삶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국가수준 변인 중 부유급출산휴가( $p < .01$ ), 모유급출산휴가( $p < .01$ )는 음(-)의 상관관계를 공공가족급여현금( $p < .05$ ), 공공가족급여현물( $p < .01$ )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개인수준 측정변인에서 자녀 수, 행복감,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상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수준 변인에서는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수준이 클수록 높은 삶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국가수준 변인에서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의

수준이 클수록 오히려 여성의 삶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모유급출산휴가와 소득불평등도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 있는  $-.803(p<.001)$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이는 앞에서 모유급출산휴가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와 상대적으로 멕시코, 터키가 모유급출산휴가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다중공선성 검토에서는 모유급출산휴가와 소득불평등도 요인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분석 과정에서 소득불평등도,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등이 동시에 포함되어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정책인 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는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한 요인이 누락되는 경우 연구목적과 필요성이 상당부분 소실될 위험성이 있다.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는 상관계수인 .9를 넘지는 않았으므로 연구자는 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를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인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면 전체 평균 센터링을 통해 요인을 재구성하여 실행하는데 HLM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센터링이 활용되므로 상관계수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다소 감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20> 개인·국가수준 요인 상관관계

요소	출생율	주관적 삶의 질		사회 자본							개인수준 통제변인					사회 지원				국가수준 통제변인
	자녀수	행복감	삶 만족도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조직 신뢰	정부조직 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여부	종교유무	교육수준	부유급출산유가	모유급출산유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 불평등도
자녀수	1																			
행복감	.062**	1																		
삶만족도	.055**	.524**	1																	
사적 대인신뢰	-.038*	.136**	.147**	1																
사회적 대인신뢰	-.008	.020	.063**	.385**	1															
사회조직 신뢰	-.054**	.037	.028	.330**	.276**	1														
정부조직 신뢰	-.024	.046**	.043**	.331**	.166**	.513**	1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031*	.090**	.088**	.072**	.175**	.069**	.012	1												
공식적 집단관계망	.019	.028	.040*	-.002	.192**	.096**	-.010	.531**	1											
규범	-.063**	.016	.002	.156**	-.012	.046**	.188**	-.097**	-.173**	1										
주관적 재정만족도	-.022	.363**	.543**	.154**	.066**	.059**	.099**	.096**	.055**	.004	1									
주관적 건강만족도	-.083**	.319**	.306**	.178**	.025	.037	.041**	.062**	.030	.063**	.258**	1								
결혼여부	.414**	.126**	.123**	.064**	.016	.005	.066**	-.016	-.035*	.022	.092**	.011	1							
종교유무	.035*	.041**	.010	.004	-.115**	-.069**	.057**	-.043**	-.033*	.008	.046**	.057**	.025	1						
교육수준	-.156**	.040**	.105**	.138**	.234**	.099**	-.024	.227**	.188**	.045**	.143**	.132**	-.041**	-.242**	1					
부유급출산유가	-.027	-.042**	-.067**	-.001	-.179**	.132**	.044**	-.118**	-.178**	.059**	.000	-.012	.032*	-.312**	.151**	1				
모유급출산유가	-.118**	-.091**	-.072**	.103**	-.178**	.147**	.159**	-.124**	-.275**	.190**	.023	.049**	.015	-.117**	.061**	.776**	1			
공공가족급여 현금	-.057**	.035*	.074**	.159**	.099**	-.005	.023	.143**	-.045**	.173**	.074**	.096**	.046**	-.063**	.187**	-.092**	.246**	1		
공공가족급여 현물	-.004	.047**	.106**	.094**	.123**	.135**	.020	.168**	-.002	.041**	.116**	-.018	.059**	-.372**	.321**	.491**	.551**	.379**	1	
소득불평등도	.127**	.088**	.036*	-.196**	-.061**	-.155**	-.154**	-.051**	.137**	-.220**	-.026	-.073**	-.022	.299**	-.300**	-.593**	-.803**	-.621**	-.690**	1

\* : p<0.05, \*\* : p<0.01, \*\*\* : p<0.001

## 제2절 연구모형 분석

### 1 기초모형 분석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및 주관적 삶의 질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초모형은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과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으로 구분되며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대입하여 혼합 모형을 얻을 수 있다.

#### 1) 행복감 기초모형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Level-1 Model(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행복감}_{ij} = \beta_{0j} + r_{ij}$$

Level-2 Model(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행복감}_{0j} = \gamma_{00} + u_{0j}$$

Mixed Model(혼합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행복감}_{ij} = \gamma_{00} + u_{0j} + r_{ij}$$

<표 21> 행복감 기초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gamma_{00}$ )	3.183	0.056	56.828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tau_{00}$ )	0.175	0.030	278.131***
집단 내 변량( $\sigma^2$ )	0.626	0.391	
집단 내 상관계수(ICC)	0.071		

\* : p<0.05, \*\* : p<0.01, \*\*\* : p<0.001

집단 내 상관계수(ICC)=집단 간 변량( $\tau_{00}$ )/(집단 간 변량( $\tau_{00}$ )+집단 내 변량( $\sigma^2$ ))

행복에 대한 개인 및 국가수준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양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수준의 변량은 0.030, 개인수준의 변량은 0.391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071으로 행복의 전체 변량 중 7.16%가 국가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며 나머지 92.84%는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량 비율을 볼 때, 행복의 차이는 국가 수준에서보다는 국가 내 개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행복감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행복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통계적 필요성과 함께 행복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삶 만족도 기초모형

다음은 삶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Level-1 Model(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삶 만족도}_{ij} = \beta_{0j} + r_{ij}$$

Level-2 Model(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삶 만족도}_{0j} = \gamma_{00} + u_{0j}$$

Mixed Model(혼합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삶 만족도}_{ij} = \gamma_{00} + u_{0j} + r_{ij}$$

<표 22> 삶 만족도 기초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gamma_{00}$ )	7.209	0.158	45.472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tau_{00}$ )	0.495	0.245	291.388***
집단 내 변량( $\sigma^2$ )	1.842	3.393	
집단내 상관계수(ICC)	0.072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집단 내 상관계수(ICC) = 집단 간 변량( $\tau_{00}$ ) / (집단 간 변량( $\tau_{00}$ ) + 집단 내 변량( $\sigma^2$ ))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 및 국가수준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양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수준의 변량은 0.245, 개인수준의 변량은 3.393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072으로 행복의 전체 변량 중 7.2%가 국가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며 나머지 92.8%는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량 비율을 볼 때,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국가 수준에서보다는 국가 내 개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생활 만족도가 같다는 가설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삶 만족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통계적 필요성과 함께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개인 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 출산율 기초모형

다음은 출산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Level-1 Model(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출산율}_{ij} = \beta_{0j} + r_{ij}$$

Level-2 Model(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출산율}_{0j} = \gamma_{00} + u_{0j}$$

Mixed Model(혼합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출산율}_{ij} = \gamma_{00} + u_{0j} + r_{ij}$$

<표 23> 출산율 기초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gamma_{00}$ )	1.372	0.097	14.051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tau_{00}$ )	0.303	0.091	202.909***
집단 내 변량( $\sigma^2$ )	1.324	1.753	
집단 내 상관계수(ICC)	0.049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집단 내 상관계수(ICC) = 집단 간 변량( $\tau_{00}$ ) / (집단 간 변량( $\tau_{00}$ ) + 집단 내 변량( $\sigma^2$ ))

출산율에 대한 개인 및 국가수준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양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수준의 변량은 0.091, 개인수준의 변량은 1.753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049로 행복의 전체 변량 중 4.9%가 국가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며 나머지 95.18%는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량 비율을 볼 때, 출산율의 차이는 국가 수준에서보다는 국가 내 개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출산율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출산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통계적 필요성과 함께 출산율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중간모형 1 :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본 절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인 사회자본 변량 설명을 위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은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에만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에는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다층분석 모형이다.

## 1)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국가 내 모형)

$$\begin{aligned}
 \text{행복감}_{ij} = & \beta_{0j} + \beta_{1j} * (\text{주관적 재정만족도}_{ij}) + \beta_{2j} * (\text{주관적 건강만족도}_{ij}) + \beta_{3j} * (\text{결혼여부}_{ij}) + \beta_{4j} * (\text{종교}_{ij}) \\
 & + \beta_{5j} * (\text{교육수준}_{ij}) + \beta_{6j} * (\text{사적대인신뢰}_{ij}) + \beta_{7j}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beta_{8j} * (\text{사회조직신뢰}_{ij}) \\
 & + \beta_{9j} * (\text{정부조직신뢰}_{ij}) + \beta_{10j}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beta_{11j} * (\text{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beta_{12j} * (\text{규범}_{ij}) + r_{ij}
 \end{aligned}$$

Level-2 Model(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1j} &= \gamma_{10} \\
 \beta_{2j} &= \gamma_{20} \\
 \beta_{3j} &= \gamma_{30} \\
 \beta_{4j} &= \gamma_{40} \\
 \beta_{5j} &= \gamma_{50} \\
 \beta_{6j} &= \gamma_{60} \\
 \beta_{7j} &= \gamma_{70} \\
 \beta_{8j} &= \gamma_{80} \\
 \beta_{9j} &= \gamma_{90} \\
 \beta_{10j} &= \gamma_{100} \\
 \beta_{11j} &= \gamma_{110} \\
 \beta_{12j} &= \gamma_{120}
 \end{aligned}$$

Mixed Model(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행복감}_{ij} = & \gamma_{00} \\
 & + \gamma_{10} * \text{주관적 재정만족도}_{ij} \\
 & + \gamma_{20} * \text{주관적 건강만족도}_{ij} \\
 & + \gamma_{30} * \text{결혼여부}_{ij} \\
 & + \gamma_{40} * \text{종교}_{ij} \\
 & + \gamma_{50} * \text{교육수준}_{ij} \\
 & + \gamma_{60} * \text{사적대인신뢰}_{ij} \\
 & + \gamma_{70}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 + \gamma_{80} * \text{사회조직신뢰}_{ij} \\
 & + \gamma_{90} * \text{정부조직신뢰}_{ij}
 \end{aligned}$$

- +  $\gamma_{100}$ \*비공식적 집단관계망<sub>ij</sub>
- +  $\gamma_{110}$ \*공식적 집단관계망<sub>ij</sub>
- +  $\gamma_{120}$ \*규범<sub>ij</sub>
- +  $u_{0j} + r_{ij}$

OECD 9개국 여성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행복감에 대한 개인요인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개인요인	절편	3.183	0.059	53.602***
	사적대인신뢰	0.125	0.020	6.092***
	사회적대인신뢰	-0.038	0.014	-2.623**
	사회조직신뢰	0.006	0.019	0.317
	정부조직신뢰	0.052	0.017	2.992**
	비공식적집단관계망	0.098	0.029	3.297***
	공식적집단관계망	-0.134	0.046	-2.902**
	규범	0.011	0.005	1.989*
통제변수	주관적재정만족도	0.073	0.004	17.256***
	주관적건강만족도	0.218	0.011	18.467***
	결혼여부	0.097	0.018	5.255***
	종교여부	0.026	0.022	1.194
	교육수준	-0.012	0.005	-2.23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2$	
집단 간 변량	0.175	0.030	355.943***	
집단 내 변량	0.553	0.306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내 변량	0.391	21.73%		
투입 후 집단 내 변량	0.306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고정효과 분석결과 사회자본중 사적대인신뢰(t=6.092, p<.001), 사회적 대인신뢰(t=-2.623, p<.001), 정부 조직신뢰(t=2.992, p<.01), 비공식적 집단관계망(t=3.297, p<.001), 공식적 집단관계망(t=-2.902, p<.01), 규범(t=1.989, p<.05)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조직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주관적 재정만족도( $t=17.256$ ,  $p<.001$ ), 주관적 건강만족도( $t=18.467$ ,  $p<.001$ ), 결혼여부( $t=5.255$ ,  $p<.001$ ), 교육수준( $t=12.235$ ,  $p<.05$ )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무선효과 결과 집단간 별량은 0.306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chi^2=355.943^{***}$ ) 개인수준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복감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수준 변인 투입 전 0.391에서 투입 후 0.306으로 감소하여 행복감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의 설명량( $R^2$ )은 21.73%로 나타났다.

## 2)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다음은 삶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국가내 모형)

$$\text{삶 만족도}_{ij} = \beta_0 + \beta_1 * (\text{주관적 재정만족도}_{ij}) + \beta_2 * (\text{주관적 건강만족도}_{ij}) + \beta_3 * (\text{결혼여부}_{ij}) + \beta_4 * (\text{종교}_{ij}) + \beta_5 * (\text{교육수준}_{ij}) + \beta_6 * (\text{사적대인신뢰}_{ij}) + \beta_7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beta_8 * (\text{사회조직신뢰}_{ij}) + \beta_9 * (\text{정부조직신뢰}_{ij}) + \beta_{10}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beta_{11} * (\text{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beta_{12} * (\text{규범}_{ij}) + r_{ij}$$

Level-2 Model(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beta_0 &= \gamma_{00} + u_{0j} \\ \beta_1 &= \gamma_{10} \\ \beta_2 &= \gamma_{20} \\ \beta_3 &= \gamma_{30} \\ \beta_4 &= \gamma_{40} \\ \beta_5 &= \gamma_{50} \\ \beta_6 &= \gamma_{60} \\ \beta_7 &= \gamma_{70} \\ \beta_8 &= \gamma_{80} \\ \beta_9 &= \gamma_{90} \end{aligned}$$

$$\beta_{10j} = \gamma_{100}$$

$$\beta_{11j} = \gamma_{110}$$

$$\beta_{12j} = \gamma_{120}$$

Mixed Model(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삶 만족도}_{ij} = \gamma_{00} \\
 & + \gamma_{10} * \text{주관적재정만족도}_{ij} \\
 & + \gamma_{20} * \text{주관적건강만족도}_{ij} \\
 & + \gamma_{30} * \text{결혼여부}_{ij} \\
 & + \gamma_{40} * \text{종교여부}_{ij} \\
 & + \gamma_{50} * \text{교육수준}_{ij} \\
 & + \gamma_{60} * \text{사적대인신뢰}_{ij} \\
 & + \gamma_{70}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 + \gamma_{80} * \text{사회조직신뢰}_{ij} \\
 & + \gamma_{90} * \text{정부조직신뢰}_{ij} \\
 & + \gamma_{100}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 + \gamma_{110} * \text{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 + \gamma_{120} * \text{규범}_{ij} \\
 & + u_{0j} + r_{ij}
 \end{aligned}$$

OECD 9개국 여성의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요인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개 인 요 인	절편	7.209	0.167	42.944***
	사적대인신뢰	0.266	0.055	4.771***
	사회적대인신뢰	-0.058	0.040	-1.461
	사회조직신뢰	-0.040	0.053	-0.745
	정부조직신뢰	0.200	0.047	4.198***
	비공식적집단관계망	0.021	0.081	0.271
	공식적집단관계망	-0.321	0.125	-2.551*
	규범	0.032	0.015	2.092*
통 계 변 수	주관적재정만족도	0.398	0.011	34.166***
	주관적건강만족도	0.443	0.032	13.762***
	결혼여부	0.239	0.050	4.765***
	종교여부	-0.083	0.060	-1.381
	교육수준	-0.015	0.015	-0.989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2$
집단 간 변량	0.497	0.247	436.901***
집단 내 변량	1.504	2.263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내 변량	3.393	33.30%	
투입 후 집단 내 변량	2.263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고정효과 분석결과 사회자본 중 사적대인신뢰(t=4.771, p<.001), 정부조직신뢰(t=4.198, p<.01), 공식적 집단 관계망(t=-2.551, p<.01), 규범(t=2.092, p<.05)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대인신뢰, 사회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주관적 재정만족도(t=34.166, p<.001), 주관적 건강만족도(t=13.762, p<.001), 결혼여부(t=4.765, p<.001)가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무선효과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497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chi^2=436.901^{***}$ ) 개인수준변인에 따른 삶 만족도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 만족도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수준 변인 투입 전 3.393에서 투입 후 2.263으로 감소하여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의 설명량(R<sup>2</sup>)은 33.30%로 나타났다.

### 3. 중간모형 2 :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다음은 출산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에 대한 수식이 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국가내 모형)

출산율<sub>ij</sub> =  $\beta_{0j}$  +  $\beta_{1j}$ \* (주관적 재정만족도<sub>ij</sub>) +  $\beta_{2j}$ \* (주관적 건강만족도<sub>ij</sub>) +  $\beta_{3j}$ \* (결혼여부<sub>ij</sub>) +  $\beta_{4j}$ \* (종교<sub>ij</sub>) +  $\beta_{5j}$ \* (교육수준<sub>ij</sub>) +  $\beta_{6j}$ \* (사적대인신뢰<sub>ij</sub>) +  $\beta_{7j}$ \* (사회적대인신뢰<sub>ij</sub>) +  $\beta_{8j}$ \* (사회조직신뢰<sub>ij</sub>) +  $\beta_{9j}$ \* (정부조직신뢰<sub>ij</sub>) +  $\beta_{10j}$ \* (비공식적 집단관계망<sub>ij</sub>) +  $\beta_{11j}$ \* (공식적 집단관계망<sub>ij</sub>) +  $\beta_{12j}$ \* (규범<sub>ij</sub>) +  $r_{ij}$

Level-2 Model(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 $\beta_{0j} = Y_{00} + u_{0j}$
- $\beta_{1j} = Y_{10}$
- $\beta_{2j} = Y_{20}$
- $\beta_{3j} = Y_{30}$
- $\beta_{4j} = Y_{40}$
- $\beta_{5j} = Y_{50}$
- $\beta_{6j} = Y_{60}$
- $\beta_{7j} = Y_{70}$
- $\beta_{8j} = Y_{80}$
- $\beta_{9j} = Y_{90}$
- $\beta_{10j} = Y_{100}$
- $\beta_{11j} = Y_{110}$
- $\beta_{12j} = Y_{120}$

Mixed Model(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출산율<sub>ij</sub> =  $Y_{00}$   
 +  $Y_{10}$ \* 주관적 재정만족도<sub>ij</sub>  
 +  $Y_{20}$ \* 주관적 건강만족도<sub>ij</sub>  
 +  $Y_{30}$ \* 결혼여부<sub>ij</sub>  
 +  $Y_{40}$ \* 종교여부<sub>ij</sub>  
 +  $Y_{50}$ \* 교육수준<sub>ij</sub>  
 +  $Y_{60}$ \* 사적대인신뢰<sub>ij</sub>  
 +  $Y_{70}$ \* 사회적대인신뢰<sub>ij</sub>  
 +  $Y_{80}$ \* 사회조직신뢰<sub>ij</sub>  
 +  $Y_{90}$ \* 정부조직신뢰<sub>ij</sub>  
 +  $Y_{100}$ \* 비공식적 집단관계망<sub>ij</sub>  
 +  $Y_{110}$ \* 공식적 집단관계망<sub>ij</sub>  
 +  $Y_{120}$ \* 규범<sub>ij</sub>  
 +  $u_{0j}$  +  $r_{ij}$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출산율에 대한 개인요인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개 인 요 인	절편	1.372	0.103	13.267***
	사적대인신뢰	0.016	0.043	0.386
	사회적대인신뢰	0.025	0.031	0.821
	사회조직신뢰	-0.094	0.042	-2.236*
	정부조직신뢰	0.132	0.037	3.526***
	비공식적집단관계망	0.216	0.063	3.407***
	공식적집단관계망	-0.082	0.098	-0.832
	규범	0.009	0.012	0.767
통 제 변 수	주관적재정만족도	-0.025	0.009	-2.834**
	주관적건강만족도	-0.089	0.025	-3.532***
	결혼여부	1.127	0.039	28.568***
	종교여부	0.125	0.047	2.667**
	교육수준	-0.132	0.012	-10.95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2$	
집단 간 변량	0.304	0.092	255.874***	
집단 내 변량	1.179	1.390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내 변량	1.753	20.70%		
투입 후 집단 내 변량	1.390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고정효과 분석결과 사회자본중 사회조직신뢰(t=-2.236, p<.05), 정부 조직신뢰(t=3.526, p<.001), 비공식적 집단관계망(t=3.407, p<.001)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주관적 재정만족도(t=-2.834, p<.01), 주관적 건강만족도(t=-3.532, p<.001), 결혼여부(t=28.568, p<.001), 종교여부(t=2.667, p<.01), 교육수준(t=-10.955, p<.001)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무선효과 결과 집단 간 별량은 0.304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chi^2=255.874$ \*\*\*) 개인수준변인에 따른 출산율의 효과는 국가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출산율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수준 변인 투입 전인 1.753에서 투입 후 1.390으로 감소하여 행복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의 설명량( $R^2$ )은 20.70%로 나타났다.

#### 4. 중간모형 3 :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본 절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인 사회지출 변량 설명을 위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은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에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에만 변인을 투입하였다.

##### 1) 행복감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level-1 수준의 개인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책변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한다. 분석모형 함수는 다음과 같다.

Level-1(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행복감}_{ij} = \beta_{0j} + r_{ij}$$

Level-2(국가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Mixed Model(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행복감}_{i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G1_j + u_{0j} + r_{ij}$$

OECD 9개국 여성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행복감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3.183	0.013	244.023***
일가정 양립정책	부유급출산휴가	0.008	0.001	7.193**
	모유급출산휴가	-0.000	0.001	-0.097
	공공가족급여현금	0.426	0.033	12.663***
	공공가족급여현물	0.395	0.060	6.590**
통제변인	소득불평등도	-0.075	0.004	-16.654***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0.053	0.002	10.472*
집단 내 변량		0.626	0.392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 $R^2$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303	99.33%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02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주: 모형설명량( $R^2$ ) = (투입 전 변량 - 투입 후 변량) / 투입 전 변량 x 100

고정효과 분석 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중 부유급출산휴가( $t=7.139$ ,  $p < 0.01$ ), 공공가족급여현금( $t=12.633$ ,  $p < 0.001$ ), 공공가족급여현물( $t=6.590$ ,  $p < 0.01$ ), 소득불평등도( $t=-16.654$ ,  $p < 0.001$ )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유급출산휴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선효과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02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chi^2=10.472^*$ ) 개인수준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복감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수준 변인 투입 전 0.303에서 투입 후 0.002로 감소하여 행복감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의 설명량( $R^2$ )은 99.33%로 나타났다.

## 2) 삶 만족도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삶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level-1 수준의 개인요인들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한다. 분석모형 함수는 다음과 같다.

Level-1(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삶 만족도}_{ij} = \beta_{0j} + r_{ij}$$

Level-2(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Mixed Model(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삶 만족도}_{i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gamma_{1j} + u_{0j} + r_{ij}$$

OECD 9개국 여성의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삶 만족도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7.212	0.079	90.467***
일·가정 양립정책	부유급출산휴가	0.002	0.007	0.277
	모유급출산휴가	0.002	0.007	0.334
	공공가족급여현금	0.646	0.260	2.477
	공공가족급여현물	1.280	0.306	4.173*
통제변인	소득불평등도	-0.130	0.051	-2.561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0.400	0.160	64.885***
집단 내 변량		1.842	3.393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245	34.69%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160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고정효과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정책 중 공공가족급여현물(t=4.173, p<.01)은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출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소득불평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행복감과 비교해 보면 모유급출산휴가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기여 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소득불평등도는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공공가족급여 현물은 삶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무선효과 결과 집단간 별량은 0.160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chi^2=64.885^{***}$ ) 개인수준변인에 따른 삶 만족도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 만족도 집단 간 변량은 개인수준 변인 투입 전 0.245에서 투입 후 0.160으로 감소하여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의 설명량(R<sup>2</sup>)은 34.69%로 나타났다.

### 5. 중간모형 4 : 출산율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출산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level-1 수준의 개인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한다. 분석모형 함수는 다음과 같다.

Level-1(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출산율}_{ij} = \beta_{0j} + r_{ij}$$

Level-2(국가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Mixed Model(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출산율}_{i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text{GI}_j + u_{0j} + r_{ij}$$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9> 출산율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1.373	0.022	62.121***
일가정 양립정책	부유급출산휴가	0.016	0.001	8.897**
	모유급출산휴가	-0.006	0.001	-3.629*
	공공가족급여현금	0.457	0.075	6.053**
	공공가족급여현물	0.516	0.098	5.240*
통제변인	소득불평등도	0.104	0.013	7.977**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간변량		0.101	0.010	12.065**
집단내변량		1.324	1.753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91	89.01%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10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고정효과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중 부유급출산휴가( $t=8.897$ ,  $p<.01$ ), 모유급출산휴가( $t=-3.629$ ,  $p<.05$ ), 공공가족급여현금( $t=6.053$ ,  $p<.01$ ), 공공가족급여현물( $t=5.240$ ,  $p<.05$ ), 소득불평등도( $t=7.977$ ,  $p<.01$ ) 모두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행복감, 삶 만족도에 일·가정양립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모유급출산휴가는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선효과 결과 집단 간 별량은 0.010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나( $\chi^2=12.065^{***}$ ) 개인수준변인에 따른 출산율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출산율 집단 간 변량은 개인수준변인 투입 전 0.091에서 투입 후 0.010으로 감소하여 출산율에 대한 개인수준변인의 설명량( $R^2$ )은 89.01%로 나타났다.

## 6. 연구모형 1 :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본 절에서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대한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를 살펴해보았다.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절편모형을 통해 집단 내 모형에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집단 간 모형에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였다.

### 1)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다음은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절편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국가 내 모형)

$$\text{행복감}_{ij} = \beta_{0j} + \beta_{1j} * (\text{주관적재정만족도}_{ij}) + \beta_{2j} * (\text{주관적건강만족도}_{ij}) + \beta_{3j} * (\text{결혼여부}_{ij}) + \beta_{4j} * (\text{종교}_{ij}) + \beta_{5j} * (\text{교육수준}_{ij}) + \beta_{6j} * (\text{사적대인신뢰}_{ij}) + \beta_{7j}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beta_{8j} * (\text{사회조직신뢰}_{ij}) + \beta_{9j} * (\text{정부조직신뢰}_{ij}) + \beta_{10j} * (\text{비공식직집단관계망}_{ij}) + \beta_{11j} * (\text{공식직집단관계망}_{ij}) + \beta_{12j} * (\text{규범}_{ij}) + r_{ij}$$

2 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2(국가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beta_{10j} = \gamma_{100}$$

$$\beta_{11j} = \gamma_{110}$$

$$\beta_{12j} = \gamma_{120}$$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Mixed Model(혼합모형)

$$\text{행복감}_{i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 \gamma_{10} * \text{주관적재정만족도}_{ij} + \gamma_{20} * \text{주관적건강만족도}_{ij} + \gamma_{30} * \text{결혼여부}_{ij} + \gamma_{40} * \text{종교}_{ij} + \gamma_{50} * \text{교육수준}_{ij} + \gamma_{60} * \text{사적대인신뢰}_{ij} + \gamma_{70}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gamma_{80} * \text{사회조직신뢰}_{ij} + \gamma_{90} * \text{정부조직신뢰}_{ij} + \gamma_{100}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gamma_{110} * \text{공식적집단관계망}_{ij} + \gamma_{120} * \text{규범}_{ij} + u_{0j} + r_{ij}$$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동시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확장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모유급출산휴가는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불평등도( $t=3.318, p<.01$ )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모유급출산휴가는 출산기 여성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은 출산기 여성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관적재정만족도, 주관적건강만족도, 혼인여부, 종교, 교육수준 및 사회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그 영향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즉, 정부가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모유급출산휴가에 투자하는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출산기 여성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않았으며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과 관련한 지출 비율이 증가할 때 출산기 여성이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대인신뢰( $t=16.548, p<.001$ ), 사회적 대인신뢰( $t=2.329, p<.001$ ), 정부조직신뢰( $t=3.835, p<.001$ ),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t=4.449, p<.001$ ),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 $t=2.862, p<.001$ )이 모두 여전히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사회 조직신뢰는 출산기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효과에 관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3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13.668, p<.01$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도 행복감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집단 간 변량은 투입 전 0.030에서 국가수준 측정변인과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0.003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국가특성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의 설명량( $R^2$ )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행복감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3.185	0.021	147.289***
개인요인	사적대인신뢰	0.125	0.020	6.092***
	사회적대인신뢰	-0.038	0.014	-2.623**
	사회조직신뢰	0.006	0.019	0.317
	정부조직신뢰	0.052	0.017	2.992**
	비공식적집단관계망	0.098	0.029	3.297***
	공식적집단관계망	-0.134	0.046	-2.902**
	규범	0.011	0.005	1.989*
통제변수	주관적재정만족도	0.073	0.004	17.255***
	주관적건강만족도	0.218	0.011	18.467***
	결혼여부	0.097	0.018	5.255***
	종교여부	0.026	0.022	1.194
	교육수준	-0.012	0.005	-2.235*
국가요인	부유급출산휴가	0.008	0.002	3.828*
	모유급출산휴가	-0.000	0.002	-0.031
	공공가족급여현금	0.426	0.086	4.951*
	공공가족급여현물	0.392	0.085	4.602*
통제변수	소득불평등도	0.075	0.013	5.520*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0.058	0.003	13.668**
집단 내 변량		0.553	0.306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 $R^2$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30	90%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03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 $R^2$ )=(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 1)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다음은 삶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절편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국가내 모형)

$$\begin{aligned}
 \text{삶 만족도}_{ij} = & \beta_{0j} + \beta_{1j} * (\text{주관적 재정만족도}_{ij}) + \beta_{2j} * (\text{주관적 건강만족도}_{ij}) + \beta_{3j} * (\text{결혼여부}_{ij}) \\
 & + \beta_{4j} * (\text{종교}_{ij}) + \beta_{5j} * (\text{교육수준}_{ij}) + \beta_{6j} * (\text{사적대인신뢰}_{ij}) + \beta_{7j}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beta_{8j} * (\text{사회조직신뢰}_{ij}) \\
 & + \beta_{9j} * (\text{정부조직신뢰}_{ij}) + \beta_{10j}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beta_{11j} * (\text{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 + \beta_{12j} * (\text{규범}_{ij}) + r_{ij}
 \end{aligned}$$

2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2(국가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beta_{10j} = \gamma_{100}$$

$$\beta_{11j} = \gamma_{110}$$

$$\beta_{12j} = \gamma_{120}$$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Mixed Model(혼합모형)

$$\begin{aligned}
 \text{삶 만족도}_{ij} =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 \gamma_{10} * \text{주관적 재정만족도}_{ij} + \gamma_{20} * \text{주관적 건강만족도}_{ij} \\
 & + \gamma_{30} * \text{결혼여부}_{ij} + \gamma_{40} * \text{종교}_{ij} + \gamma_{50} * \text{교육수준}_{ij} + \gamma_{60} * \text{사적대인신뢰}_{ij} + \gamma_{70}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
 & \gamma_{80} * \text{사회조직신뢰}_{ij} + \gamma_{90} * \text{정부조직신뢰}_{ij} + \gamma_{100}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gamma_{110} * \text{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
 & \gamma_{120} * \text{규범}_{ij} + u_{0j} + r_{ij}
 \end{aligned}$$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동시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확장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공공가족급여현물 또한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이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 여성의 삶 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에 투자하는 지출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표 31> 삶 만족도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7.211	0.137	52.397***
개인요인	사적대인신뢰	0.264	0.055	0.386
	사회적대인신뢰	-0.060	0.039	0.821
	사회조직신뢰	-0.041	0.053	-2.236*
	정부조직신뢰	0.202	0.047	3.526***
	비공식직집단관계망	0.016	0.080	3.407***
	공식적직집단관계망	-0.327	0.125	-0.832
	규범	0.030	0.015	0.767
통제변수	주관적재정만족도	0.398	0.011	2.834**
	주관적건강만족도	0.443	0.032	3.532***
	결혼여부	0.239	0.050	28.568***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종교	-0.083	0.060	2.667**
	교육수준	-0.015	0.015	-10.955***
국가요인	부유급출산휴가	0.001	0.013	0.144
	모유급출산휴가	0.002	0.015	0.169
	공공가족급여현금	0.642	0.560	1.147
	공공가족급여현물	1.274	0.533	2.391
통제변수	소득불평등도	0.130	0.088	1.469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집단 간 변량		0.405	0.164	98.057**
집단 내 변량		1.504	2.263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245	33.06%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164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즉 사적 대인신뢰(t=16.548, p<.001), 정부 조직신뢰(t=3.835, p<.001),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t=2.862, p<.001)이 모두 여전히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조직신뢰, 비공식적집단관계망은 여성의 삶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도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변인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효과를 통제할 이후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정부 조직

신뢰였다. 즉, 정부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삶 만족도가 높아졌다.

사회자본 중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t=5.534, p<.001$ ).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함으로써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효과가 고루 통제됨으로써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여성의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본 중 사적 대인신뢰와 규범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함으로써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효과가 고루 통제됨으로써 사적 대인신뢰와 규범이 여성의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회자본들이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사회 조직신뢰와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국가수준을 통제한 후 여성의 삶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의 사회 조직신뢰와 공식적 집단관계망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 만족도, 결혼여부는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교와 교육수준은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에 관한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164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98.057, p<.01$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도 삶의 만족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집단 간 변량은 투입 전 0.245에서 국가수준

측정변인과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0.164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복감에 대한 국가특성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의 설명량(R<sup>2</sup>)이 3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 7. 연구모형 2 :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다음은 출산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절편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주된 관심이 아닌 회귀계수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국가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국가 내 모형)

$$\begin{aligned}
 \text{출산율}_{ij} = & \beta_{0j} + \beta_{1j} * (\text{주관적 재정만족도}_{ij}) + \beta_{2j} * (\text{주관적 건강만족도}_{ij}) + \beta_{3j} * (\text{결혼여부}_{ij}) \\
 & + \beta_{4j} * (\text{종교}_{ij}) + \beta_{5j} * (\text{교육수준}_{ij}) + \beta_{6j} * (\text{사적대인신뢰}_{ij}) + \beta_{7j}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beta_{8j} * (\text{사회조직신뢰}_{ij}) \\
 & + \beta_{9j} * (\text{정부조직신뢰}_{ij}) + \beta_{10j}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beta_{11j} * (\text{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 + \beta_{12j} * (\text{규범}_{ij}) + r_{ij}
 \end{aligned}$$

2 수준 모형(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2(국가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beta_{10j} = \gamma_{100}$$

$$\beta_{11j} = \gamma_{110}$$

$$\beta_{12j} = \gamma_{120}$$

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 Mixed Model(혼합모형)

$$\begin{aligned}
 \text{출산율}_{ij} = & \gamma_{00} + \gamma_{01} * (\text{부유급출산휴가}_j) + \gamma_{02} * (\text{모유급출산휴가}_j) + \gamma_{03} * (\text{공공가족급여현금}_j) + \\
 & \gamma_{04} * (\text{공공가족급여현물}_j) + \gamma_{05} * (\text{소득불평등도}_j) + u_{0j} + \gamma_{10} * \text{주관적재정만족도}_{ij} + \gamma_{20} * \text{주관적건강} \\
 & \text{만족도}_{ij} + \gamma_{30} * \text{결혼여부}_{ij} + \gamma_{40} * \text{종교}_{ij} + \gamma_{50} * \text{교육수준}_{ij} + \gamma_{60} * \text{사적대인신뢰}_{ij} + \gamma_{70} * \text{사회적대인신뢰}_{ij} + \\
 & \gamma_{80} * \text{사회조직신뢰}_{ij} + \gamma_{90} * \text{정부조직신뢰}_{ij} + \gamma_{100} * \text{비공식적 집단관계망}_{ij} + \gamma_{110} * \text{공식적집단관계망}_{ij} + \\
 & \gamma_{120} * \text{규범}_{ij} + u_{0j} + r_{ij}
 \end{aligned}$$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 및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동시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확장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불평등도는 여전히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건강만족도, 혼인여부, 종교, 교육수준 및 사회자본을 통제 한 후에도 그 영향력은 꾸준히 지속 되었으나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결과 그 영향력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출산율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면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출산율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에 투자하는 지출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회자본 중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들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모두 여전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대인신뢰, 공식적집단관계망, 규범은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효과에 관한 무선효과 분석결과 집단간 변량은 .092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tau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255.847, p<.01$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도 출산율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집단 간 변량은 투입 전 0.091에서 국가수준 측정변인과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 0.011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생율에 대한 국가특성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의 설명량( $R^2$ )이 87.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출산율에 대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순수효과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	1.373	0.040	33.855***
개인요인	사적대인신뢰	0.016	0.043	0.386
	사회적대인신뢰	0.025	0.031	0.821
	사회조직신뢰	-0.094	0.042	-2.236*
	정부조직신뢰	0.132	0.037	3.526***
	비공식적집단관계망	0.216	0.063	3.407***
	공식적집단관계망	-0.082	0.098	-0.832
	규범	0.009	0.012	0.767
통제변수	주관적재정만족도	-0.025	0.009	-2.834**
	주관적건강만족도	-0.089	0.025	-3.532***
	결혼여부	1.127	0.039	28.568***
	종교	0.125	0.047	2.667**
	교육수준	-0.132	0.012	-10.955***
국가요인	부유급출산휴가	0.016	0.003	4.047*
	모유급출산휴가	-0.006	0.004	-1.444
	공공가족급여현금	0.456	0.160	2.844
	공공가족급여현물	0.510	0.161	3.166*
통제변수	소득불평등도	0.104	0.025	4.116*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chi^2$

구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집단간변량		0.105	0.011	12.748**
집단내변량		1.179	1.390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sup>2</sup> )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91	87.91%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11		

\* : p<0.05, \*\* : p<0.01, \*\*\* : p<0.001  
\*주:모형설명량(R<sup>2</sup>)=(투입 전 변량-투입 후 변량)/투입 전 변량 x100

### 제3절 논의

본 연구는 OECD 국가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인 사회자본과 국가수준 요인인 일·가정양립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혼합된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의 변량을 구분하여 검증하기에, 개인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 증진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분석 방법이다.

OECD 국가 여성 4,113명을 대상으로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OECD 9개국별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 사회자본, 일·가정양립 정책 수준

OECD 9개국의 여성 행복감 전체 평균은 3.17점(백분위 75.00점), 생활 만족도 전체평균은 7.16(백분위 70.67점)으로 OECD 9개국 여성이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더 많은 사회적 배제와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관적 삶의 질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cDonald & Marsh, 2005; Pohl & Walther, 2007). 행복감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멕시코가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뉴질랜드, 호주, 독일 순이었으며 한국은 그리스와 더불어 최하위에 위치하였다. 삶 만족도 수준 또한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멕시코가 8.0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순이었으며 한국은 역시 터키, 그리스와 최하위에 위치하여 한국 여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인다는 지적(방성아, 2017)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OECD 9개국 여성의 사회자본 평균은 사적 대인신뢰 3.13, 사회적 대인신뢰 2.33, 사회조직 신뢰 2.41, 정부조직신뢰 2.35,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0.23개, 공식적 집단관계망 0.13개, 규범 8.61으로 특히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조직신뢰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범은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자본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났는데 사적 대인신뢰는 뉴질랜드가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대인신뢰는 호주가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가장 낮았다. 사회 조직신뢰는 뉴질랜드가 정부 조직신뢰는 터키가 가장 높았다.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독일과 미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고 멕시코가 가장 낮았다. 한국 여성의 사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는 중위권에 위치하였으나 사회적 대인신뢰, 비공식 집단 관계망,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은 하위권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대인신뢰와 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OECD 9개국은 유급출산휴가에서 평균 부유급출산휴가에 9.59주를 모유급출산휴가에 29.88주를 지원하며 공공가족급여 현금에 GDP의 평균 .54%, 공공가족급여 현물에 GDP의 평균 .63%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모유급출산휴가와 공공가족급여 현물에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유급출산휴가와 모유급출산휴가 지원 비율은 한국, 일본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가족급여 현금에 호주, 그리스가 공공가족급여 현물은 독일, 뉴질랜드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유급출산휴가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모유급출산휴가에 더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공공가족급여 현금과 공공가족급여 현물의 경우 국가별로 지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공공가족급여 현금과 공공가족급여 현물에 모두 활발히 지원하기 보다는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가족급여 현금 혹은 공공가족급여 현물을 택일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주관적 삶 만족도에 대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다층분석 타당성 검토

OECD 9개국 여성의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을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다층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에 대한 국가수준 변량을 분석한 결과 행복감의 전체 변량 중 7.1%, 삶 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7.2%, 출산율의 전체 변량 중 4.9%가 국가 간 차이로 설명되고 있어 국가 표본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상당한 변량 수준으로 간주되는 5%(Duncan & Raudenbush, 1999)를 초과하거나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hi^2$  검증 결과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이 지닌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이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다층분석을 실시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며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3.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본 연구에서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결과를 바탕으로 OECD여성의 사회자본 일·가정양립정책이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문제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OECD 9개국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변인 행복감과 주관적 삶 만족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독립적이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Diener & Diener, 1995, Şimşek, 2008, Pacek & Radcliff, 2008)의 타당함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변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사적 대인신뢰는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에게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적 대인신뢰가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Leung, et., al., 2011; 서정아, 2013; 방성아 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적 대인신뢰는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가족, 친족, 이웃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왔다. 그러나 최근의 개인주의 확산, 경쟁주의, 자원 부족, 고도성장은 한국 사회의 좋은 자원인 사적 대인신뢰를 일부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사적 대인신뢰 수준이 9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사적 대인신뢰는 가족, 이웃과 생계를 의존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취업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폭력,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부족, 소외, 무관심이 가족 내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어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대인신뢰는 여성의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대인신뢰가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Yip 등(2007)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자본이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하는데(Tisenkopfs, et., al., 2008; 박희봉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적 대인신뢰의 부정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대인신뢰가 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회구성원 전체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Poortinga, 2006).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9개 OECD 국가의 사회적 대인신뢰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 더불어 최근의 고도성장, 경쟁주의, 자원 부족, 개인주의 확산과 더불어 소속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 무관심, 폭력,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 부족으로 사회적 대인신뢰는 여성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긍정적인 사회적 대인신뢰의 형성을 위해 거시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사회 조직신뢰는 여성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사회 조직신뢰는 환경·여성·인권·자선 등의 사회단체, 신문·텔레비전 등 언론매체,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연구 결과로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 조직신뢰는 OECD 9개 국가 중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9개 OECD 국가의 사회조직 신뢰수준은 낮게 검증되었다. 특히 사회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언론매체,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낮은 신뢰도는 여성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긍정적인 사회조직 신뢰의 형성을 위해 거시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정부 조직신뢰는 여성의 행복감, 삶 만족도 및 출산율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주관적 여성의 삶의 질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정부 조직신뢰가 여성의 행복감, 삶 만족도 및 출산율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정부 조직신뢰가 여성의 다양한 삶의 영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부 조직신뢰의 형성을 위해 사회와 정부의 거시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노력의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더불어 모든 국가의 낮은 정부 조직신뢰 수준의 특성이 OECD 국가 여성의 행복감, 삶 만족도 및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여성의 행복감 및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 친구와의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여성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Lelkes 2006; Luengetal., 2011; Powdthavee 2008; Poortinga, 2006)와 일치하지만,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여성의 행복감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여성들의 다양한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활동,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교기관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이 올라가며 출산율 또한 증진될 수 있음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특히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참여 크기는 행복감보다 출산율에서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행복감과 삶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하위 요인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는데(Tisenkopfs, et, al., 2008; 박희봉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하위 요인인 공식적 집단관계망의 부정적 특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이슈형성, 의무, 정치활동, 정당, 소비자 보호단체, 전문가협회, 금전적 투자·정서·심리·시간을 필요로 하는 노동단체 등의 참여는 개인의 정서적 행복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행복감 및 삶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장려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곱째, 규범은 사회자본의 하위변인 중 행복감과 삶 만족도에 한정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사회자본의 다른 하위변인과 비교하여 규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규범이 행복 및 삶 만족도와 긍정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Leung et, al., 2011; 서정아, 2013; 방성아, 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높은 규범 수준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수준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혼인 여부와 교육수준은 행복감, 삶 만족도 및 출산율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는 삶 만족도 및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행복감, 삶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출산율에는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결혼여부는 행복감, 삶 만족도 및 출산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은 행복감, 삶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출산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가 행복감, 삶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출산율에는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

적 건강만족도가 현재의 삶의 행복에 대해 만족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의 미래나 목표에 영향을 받는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교육수준은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 모두와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삶과 미래나 목표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만족하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일·가정양립정책이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9개국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하여 부유급출산휴가는 행복감과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삶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모유급출산휴가는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복감, 삶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모유급출산휴가 보다 부유급출산휴 정책이 여성의 정서적 행복감과 출산율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공가족급여현금은 행복감,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공공가족급여현물은 행복감, 삶 만족도 및 출산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모유급출산휴가 보다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및 공공가족급여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삶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공공가족급여현물의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여성의 행복감과 삶 만족도 및 출산율 모두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유급출산휴가,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과 더불어 공공가족급여현물의 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국가수준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소득불평등도는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행복감 및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행복감 및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경험연구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의 효과를 개인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Clark(2003)와 Alesina 등(2004)은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불평등을 기회의 메시지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는, 유동성이 높다고 여기는 경우 소득불평등이 기회로 인식되는 반면, 유동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Dolan, et, al., 2008). 변화에 대한 기대, 가능성과 희망을 내포하는 시기에는 소득불평등은 또 한편에서 자신이 경제 상황과 사회적 지위가 나아질 경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기회와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면 누구나 현재보다 더욱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9개국 여성의 출산율,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개인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및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모두 국가수준 측정요인이 투입된 후에도 여전히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공식적 집단관계망 및 규범은 국가수준 측정요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사적 및 사회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집단관계망, 규범 모두 국가수준 요인을 투입한 후에도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회 조직신뢰는 국가수준요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개인수준 요인과 국가수준 요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차이가 없

었다. 이는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모두에서 함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요인들이 국가수준 요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부 요인은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가수준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효과를 통제된 이후에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했을 때와 국가수준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삶 만족도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조직신뢰가 있는데 이 요인들은 여성의 삶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요인이다.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개인수준 요인만을 살펴봤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요인을 통제된 이후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국가수준 요인을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국가효과가 고루 통제됨으로써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준 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동일 국가 내의 여성의 삶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히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 조직신뢰는 개인수준 요인인만을 검토했을 때에는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요인을 통제된 이후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가수준 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종교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신문, 텔레비전, 자선단체 등에 관한 사회 조직신뢰가 여성의 삶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는 살펴볼 수 있다. 국가수준 요인을 통제된 후 부적 영향이 나타난 사회조직 신뢰의 경우 국가수준의 요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향상함으로써 삶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가정양립정책 중 국가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개인

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지원급여현물은 개인수준 측정요인을 투입하여도 여전히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지원급여현물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정부가 특히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다.

다섯째, 일·가정양립정책 중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은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모유급출산휴가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여도 행복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급출산휴가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나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추가하였을 때에도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보면 모유급출산휴가 정책은 여성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 정부가 특히 고려해야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일·가정양립정책 중 국가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여전히 삶 만족도에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공공가족급여현물 또한 개인수준 요인을 투입하면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가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에 투자하는 지출 수준이 개인수준에서나 국가수준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 여성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개인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혼여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종교, 교육수준은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 여전히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되었다. 개인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혼여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교육수

준이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 여전히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개인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혼여부,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한 이후 여전히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되었다. 종교와 교육수준은 개인수준 측정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 삶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국가수준 측정요인을 투입한 이후 삶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수준 측정변인 중 공공가족지원급여현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덟째,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소득불평등도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국가수준측정 통제변인 소득불평등도는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수준측정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공공가족급여현물은 개인 측정변수가 함께 투입하였을 때 삶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던 소득불평등도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소득불평등도와 관련한 개인수준의 사회자본, 주관적 재정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결혼여부, 종교, 교육수준이 통제됨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도,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여성을 위한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 지출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양육정책은 조사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에 적극적인 투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출산율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던 모유급출산휴가 정책의 긍정적인 발현을 위해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현실적이고 보완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져 보인다. 특히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자본 요인, 일·가정양립정책 요인, 인구·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층분석을 실행 하면 일·가정양립정책 요인의 일부 영향력이 사라지는 반면, 사회자본 요인은 여전히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OECD 국가 여성에 있어서 일·가정양립정책 요인, 인구·경제적 요인이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는 하지만 개인수준 측정요인인 사회자본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개인수준 사회자본과 국가수준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수준 및 국가수준의 설명변인을 규명하고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및 정책적 방안 제시를 논의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출산율은 자녀수로 주관적 삶의 질은 행복감과 삶 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자본의 하위변인을 사적 및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및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하위변인을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사적 및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및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집단 관계망, 규범)은 OECD 국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감, 삶 만족도)과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자본이 여성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개인수준 측정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및 규범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인신뢰,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직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

망 및 규범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대인신뢰와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사회 조직신뢰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이 OECD 국가 여성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사적 및 정부 조직신뢰, 공식적 집단 관계망과 규범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삶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및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삶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국가수준 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검증한 결과 여전히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공식적 집단관계망 및 규범이 높아질수록 삶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자본이 여성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본 결과, 개인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정부 조직신뢰와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조직신뢰는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공식적 집단관계망 및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측정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정부 조직신뢰와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회 조직신뢰는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공식적 집단관계망 및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일·가정양립정책(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은 OECD 국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 삶 만족도)과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본 결과, 국가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및 공공가족급여현물이 커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모유급출산휴가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수준 요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모유급출산휴가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국가 여성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본 결과, 국가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공공가족급여현물이 높아질수록 삶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었다. 개인수준 요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는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및 공공가족급여현물 모두가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국가수준 요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졌으나 모유급출산휴가는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요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높아졌으나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해 설명하는 삶의 질 통합모델과 출산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사회, 가치관 및 욕구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이는 결정요인을 여성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에 관한 개념적 틀 제시의 모델의 명료성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욕구 분석의 실용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으며 실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OECD 국가 여성의 주관적 삶 만족도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본 논의가 갖는 이론적·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자본, 일·가정양립정책,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율의 실증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로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신가정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출산에 관한 개념적 틀과 삶의 질 통합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신가정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출산에 관한 개념적 틀과 삶의 질 통합모델이 각각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다루어져 왔던 여성의 삶의 질 및 저출산 현상을 개인의 의사결정 수준과 정책지원을 함께 고려하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이 기본적으로 개인을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기존 선행연구들은 거대이론 또는 중 범위 수준 이상에서 이론이나 분석 틀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주목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기존 거시 단위 논의들이 내포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개인단위 수준에서 OECD 국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인가지표 혹은 경제개발지표를 활용한 경험 연구들은 OECD 국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을 기술·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야기되는 욕구(needs)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논의가 갖는 설명력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삶의 질 연구와 합계출산율 중심의 논의들이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단위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에서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관점은 미시적, 거시적인 수준의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연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

하는 최근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경제적 요인들 위주로 설명되어 온 삶의 질 연구와 출산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나아가 여성이 실제 삶에서 체득하고 경험한 문화, 규범 및 가치적 요인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자 하였다. 삶의 질 연구와 국가출산율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경우 GNI, GDP, 평균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과 가임여성 인구수나 혼인율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더불어 최근의 논의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은 국가 단위의 실증 연구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소규모의 국가 간 사례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특히, 출산율과 관련한 미시단위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들도, 신가정경제학이라는 미시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주로 경제적 요인들만으로 설명되어 온 추세를 나타냈다. 신가정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가정의 생산(household production)이나 여성의 출산을 효용 극대화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Becker(1981)는 남녀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와 비교우위를 가정하여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은 시장에서 활동할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됨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Becker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근대화 이후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상승이 세계적 저출산 현상의 원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사회적 통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전의 지배적인 이론이나 사회 통념이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대안적 모델로서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오늘날 여성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개인 단위에서 출산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학문 분야별 관심변수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날 여성 삶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여성의 출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나는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 변수를 다층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별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여성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에 대한 인구학·사회학·경제학 분야 분야의 여러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각 분야에 따라 논의되어 온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들을 탐구하여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여성의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다층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혹은 최대효용을 개인의 행복으로 본다면, 본 연구가 개념적 틀에서 고려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 요인들은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추가적인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고(Stolle, 2001), 본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을 더 면밀하게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로 살펴보면 사회자본, 일·가정양립정책이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율에 미치는 방향성, 즉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지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재 삶의 질 통합모델과 출산에 관한 개념적 틀은 이러한 사항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섯째,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행동의 의도는 노력을 발휘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동기를 반영하며(Ajzen & Klobas, 2013),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인 또는 집단의 인식이 개인적인 동기와 결합하여 행동 규범이 형성된다. 이러한 행동 규범의 주요한 준거집단으로 배우자 부모, 친구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 규범의 주요한 준거집단으로 배우자, 부모, 친구인 사적 집단보다 사회조직, 정부조직, 비공식적 집단관계망 영향력의 유의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계획된 행동 이론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부모나 친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지만 사회모임, 단체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보면 분석자료 단위별로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어 개인수준 요인의 특성뿐 아니라 국가수준 요인의 특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삶의 질 통합모델 및 신가정경제이론모형 내에 다층 구조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덟째,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보면 주관적 삶의 질 하위영역으로써 행복감과 삶 만족도가 서로 다른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바 삶의 질 통합모델의 주관적 삶의 질 하위영역으로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과 인지적 요소인 삶 만족도를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삶 만족도를 구분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Gundelach & Kreiner, 2004; 서정아, 2013; Helliwell & Putnam,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과 인지적 요소인 삶 만족도를 구분하여 논의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 2.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사적 대인신뢰는 여성의 행복감에만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사적 대인신뢰 수준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대인신뢰는 여성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효과 측면에서도 사회자본의 다양한 하위영역 중

여성의 행복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사적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낮은 사적 대인신뢰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웃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역할을 지역사회, 이웃이 함께할 수 있다. 빈곤한 가족의 구성원일지라도 일상에 대해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다면 가족에서 부족한 자원을 이웃 또는 지역사회가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인신뢰는 여성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대인신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본 연구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해 본다면 일·가정 양립정책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욕구에 따른 공공자족 급여현금 및 현물 등과 같은 여성의 선택을 중시하고 이러한 여성의 선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되 기회와 유동성에 관한 가능성은 보장하고, 경찰·군대·사법·행정·입법 등 국가조직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사회적 대인신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수준의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조직신뢰는 삶 만족도와 출산율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 조직신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본 연구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정부 조직신뢰는 사회 조직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국가조직에 대한 신뢰회복이 보통의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더불어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의 활동 범주도 사회 조직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교기관,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사회 조직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이 긍정적 사회조직신뢰 증

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신뢰는 여성의 행복감, 주관적 삶 만족도, 출산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부조직신뢰를 향상시켜야 하는 데 정부조직신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과 더불어 모든 국가의 낮은 정부 조직신뢰 수준의 특성이 여성의 행복감, 주관적 삶 만족도 및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은 행복감과 출산율에는 정(+)의 영향을 삶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성의 삶 만족도를 위해서는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에 참여를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행복감과 출산율에 관해서는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조직적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성이 종교기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활동 등 비공식적 집단관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육아 정보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육아 품앗이, 자생적인 ·오프라인 육아 모임의 참여는 여성의 사회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취업 여성의 경우에 모성보호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수당, 직장탁아)를 활용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끄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업무로 인해 여가시간에 여유가 없다고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예술·음악 혹은 교육·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비공식적 집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다방면의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내에서 폭넓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행복감에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삶 만족도와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로 살펴보면 사회자본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에 따라

여성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 사회자본’과 개인에게 해가 되는 ‘부정적 사회자본’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여성의 공식적 집단 관계망은 ‘나쁜 사회자본’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여성의 관계망 참여에 있어서 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자본 논의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활동으로 인하여 효과에 견줘 많은 노력이 요구되거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자본과 그 외의 자원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 결과로 살펴보면 전문가협회, 노동단체, 정당,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 지나친 참여는 여성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행복감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성의 노동단체, 인권 혹은 자선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전문가협회, 소비자 보호단체에 참여하기보다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다양한 종교기관, 교육·문화 활동 및 예술·음악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결과로 살펴보면 여성의 행복감과 삶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규범 정립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은 한국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가 여성들의 다른 사회자본 하위영역과 비교해 상위권에 위치한 유일한 변인이다. 즉 여성은 무임승차, 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 탈세에 대해 높은 규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규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자본 논의에 비해 초기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연구 결과도 많지 않고 일정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 하였으나(서정아, 2013; 방성아, 2017) 본 연구 결과 여성의 행복과 삶 만족도에 규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규범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행복과 삶 만족도가 커진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규범이 통용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자신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같은 수준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3. 정책적 시사점

국가수준의 일·가정양립정책으로 측정된 사회정책이 개인의 행복감, 삶 만족도, 출산율에 미치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모유급출산휴가보다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에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공공가족급여현물은 행복감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유급출산휴가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적극적 공공가족급여정책 및 부유급출산휴가 정책이 여성의 행복감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의 삶 만족도 증진을 위해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보다는 공공가족급여현물에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가족급여현물은 주관적 삶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유급출산휴가,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적극적 공공가족급여현물 정책이 여성의 삶 만족도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의 출산율 증진을 위해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 보다는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에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금은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적극적 부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현물 정책이 여성의 출산율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소득불평등도는 삶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행복감과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는데 Clark(2003)와 Alesina등(2004)은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불평등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소득불평등이 행복감과 출산율을 증가시

킨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불평등을 기회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감 및 출산율 증진은 대다수의 여성의 정서적 인지적인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 공공가족급여정책 및 유급출산휴가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모유급출산휴가와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모유급출산휴가가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결과로 살펴보면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은 여성의 출산율과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가족급여 현물은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부유급출산휴가는 출산율과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를 줄이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율과 삶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를 줄이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 근무제의 활성화와 파트타임 근무제가 기본적인 전제이다. 취학아동의 방과 후 수업이 보편화되어 체계를 갖추고 보육시설이 폭넓게 공급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근무시간에 탄력성이 담보되어야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출산율, 행복감, 삶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 없는 여성의 고용을 유지에는 관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기여할 수 있다. 남성의 초과근로를 줄이는 대신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남녀 모두의 일·가정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성의 초과근로 감소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보면 국가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에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을 증진을 위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사회자본의 형성·확대와 여성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34개국 중 WVS데이터와 일·가정양립정책 통계를 제출하지 못한 국가가 있어 논의대상에 모든 OECD 국가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7회 차로 구성된 범세계적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회차별 조사국가 자료의 누락으로 주관적 삶의 질, 출산율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지 못하고 횡단적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에 그쳤다. 이후 WVS데이터 조사회차가 누적되면 종단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수를 축소시켜 종단적 변화추이를 검증해보려는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출산은 홀로 결정하거나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의사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머물러 왔다는 비판(신경아, 2010; 오민지, 2021)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가 여전히 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한정된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려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로서 출산 결정의 또 다른 행위자인 남편 또는 가족 단위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언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관련지출, 가사노동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는 OECD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최신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를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측정요인값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수준 데이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의 효과와 개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여성 관련 사회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인 혹은 지표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을 유급출산휴가, 공공가족급여의 측면에서만 살펴본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및 출산율과 관련하여 일·가정양립정책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관련 노력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여성의 삶에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해 검증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의 여가를 포함한 삶의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출산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론모델의 발전 측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여섯째, 2차 자료가 갖는 한계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검증에 있어 미국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WVS)자료와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개인 수준의 논의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표성을 갖는 개인 수준의 자료 활용은 필요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WVS의 경우 본 연구가 주된 관심 대상으로 여기는 출산·사회자본·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종단연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더불어 개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단위 수준의 일·가정양립정책 자료들을 매칭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함으로써 자료의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 여성의 가치관 및 욕구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2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변수의 상세한 구분이 적어 본 논문의 자료 간의 검증에서 더 많은 가능한 변수들을 규명하거나 제시된 수준 이상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뷰나 질적 연구의 논의를 통해 가능한 변수들의 논의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자본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종단연구의 시행을 통해 개개인 수준 변수, 주관적 삶의 질, 출산율의 인과적 연결고리에 대해 관찰·설명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못한 개개인 수준 변수와 주관적 삶의 질이 출산율 제고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민재, 최수찬, & 조영은. (2017). 기혼 근로자의 일-가정 전이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친화제도 유용성 인식의 조절효과.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52, 119-145.
- 강병구, & 조영철. (2019).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9-79.
- 고선강. (2016). 기업의 가족친화제도가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연령 집단별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151-171.
- 강이수. (2009). 여성의 일-가족에 대한 태도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5, 237-274.
- 강지원, 정홍원, 김태완, 이원진, 강희정, 여나금, ... & 노현주. (2022). 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 권구영. (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요인: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5), 101-137.
- 권혜원, & 권순원. (2013).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 관리자의 조직몰입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후원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3(3), 89-117.
- 김경미, & 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03-119.
- 김경아. (2017). 결혼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문화와 융합*, 39, 895-924.
- 김경희, 유승호, 정희태, 김혜영, & 박형준. (2018). 출산율은 삶의 질과 비례하는가? OECD 국가의 삶의 질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추이분석. *국제지역연구*, 22(1), 215-235.

- 김난주, & 권태희. (2009).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76, 43-70.
- 김도혜. (2022).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여성 관리자의 일-가정 갈등 (WFC) 과 정서적 조직몰입 간의 관계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동수, 정태연, 박준성, & 김현정. (2008). 동남아시아 이주여성의 결혼의 동기와 결혼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78-179.
- 김두섭. (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1-26.
- 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 김정석. (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 김리아. (2022). 미취학 자녀를 둔 여군의 정신건강과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명소, & 김혜원.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김선희. (2010). 공공조직에서 여성의 일-가정 (WFC)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 김성연, & 박미석. (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연희. (2022). 가족친화정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과 삶의 균형 요인과 직무만족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1), 151-175.
-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김은정, 이성림, 이완정, & 김한나. (2011).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91, 1-8.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4), 1291-1306.
- 김애련, & 채옥희. (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 회지*, 5(1), 49-60.
- 김준기, & 양지숙. (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0.
- 김준수, & 정미숙. (2021). 여성의 사회자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편 육아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3(3), 111-135.
- 김진욱. (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 복지정책*, 33, 239-260.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 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 150-169.
- 김태희, & 오민지. (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유효성과 조직문화. *현대사회와 행정*, 27(4), 147-168.
-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51-78.
- 곽현주, & 최은영. (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429-456.
- 남국현. (2022).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출산계획,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1), 166-182.
- 노유자. (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에 관한 분석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 도미향, & 이소희. (2000).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가족복지감에 미친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1), 1-16.
- 류덕현. (2007).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공공경제*, 12(1), 39-74.
- 류성민, & 안성익. (2012). 일-가정 균형에 대한 지원환경, 일-가정 균형에 대한 만족도, 종업원의 철회행위 및 맥락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영연구*, 27(2), 49-85.

- 류아현, & 김교성. (2022).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5-34.
- 마미정. (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 75-116.
- 문혁준.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 민혜영, & 정금희. (2015). 고령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건강관리 요구. KJWHN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4), 332-341.
- 박다운, & 유계숙. (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29-65.
- 박성민, & 김선아. (2015). 박영사.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305-332.
- 방성아. (2017). 사회자본과 사회복지지출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 박시내. (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통계연구, 22(1), 1-26.
- 박예송, & 박지혜. (2013). 일-생활 균형 (Work-Life Balance) 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2000 년 이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HRD 연구, 15(1), 1-29.
- 박종민, & 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박현옥, 박경숙, & 권오윤. (2018).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357-369.
- 박효진, & 은선경. (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 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1), 5-29.
- 박휴용, & 여영기. (2014).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5, 69-95.
- 박희봉. (2009). 사회 자본: 불신 에서 신뢰 로, 갈등 에서 협력 으로. 조명 문화사.

- 박혜신, 박경혜, & 윤승호. (2005). 무용학: 중년여성의 생활무용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5), 729-741.
- 배광일, & 김경신. (2011). 생태학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23-149.
-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대경.
- 배정연, & 홍석자. (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7, 131-150.
- 백소영, & 최자윤.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암환자와 암생존자의 특성비교. Asian Oncology Nursing, 18(1), 11-20.
- 서문기, & 오주현. (2011).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 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3, 111-138.
- 서정아. (2013). 사회자본과 사회지출이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OECD 16 개국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성미영, 서병태, 최민석, & 노미나. (2021).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COVID-19와 어린이집 휴원에 관한 주제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21(1), 67-80.
- 성혜연. (2021).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333-356.
- 손홍숙. (2004). 양성평등교육정책—주변에서 주류로?—. 교육사회학연구, 14, 129-150.
- 송건섭, 김영오, & 권용현. (2009).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247.
- 송민영. (2018). 일가정양립정책, 직무만족도가 부부관계를 매개하여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3(3), 5-32.
- 송헌재, &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1), 3-36.
- 신경아. (2007).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23(2), 5-45.
- 신창환. (2010).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2), 453-469.

- 양영철. (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7(47), 129-164.
- 엄명용, & 김호순. (2011).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한국인구학, 34(3), 179-209.
- 여정희. (2004). 중년여성의 폐경관리와 결혼만족도,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2), 261-269.
- 오금숙, & 김윤정.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3, 15-25.
- 오민지. (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수진. (2022). 기혼여성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영향요인: 간호근무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 오은영, & 나건. (2015). 지속가능 문화정착을 위한 지속가능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55-64.
- 왕이서. (2022).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일-가정 양립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경, & 이주일. (2010).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89-104.
- 유계숙. (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11-125.
- 유양숙, & 조옥희. (2001). 유방절제술 환자의 배우자 지지, 성생활 만족도 및 부부 친밀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148-156.
- 유현숙. (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의 인적자본·사회자본·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2), 225-259.
- 윤나라, & 김일옥. (2021). 간호조무사의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4), 295-312.
- 윤성호. (2012).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차기정부의 과제-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183-200.

- 우해봉. (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1), 23-36.
- 이도훈, 계봉오, 박종서, & 김세진. (202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제 2 부)-초저출산화 시대 출산 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 이두희, 고동수, & 김동수. (2013). 공유가치창출 (CSV) 을 통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 2013—677.
- 이명신, & 이훈구. (1997).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89-101.
- 이미영, & 이현옥.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애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1), 169-188.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 &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 이삼식, & 최효진. (2014).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53-184.
- 이삼식, 최효진, 계봉오, 김경근, 김동식, 서문희, ... & 천현숙.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이석환. (2014).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23-51.
- 이수애. (1999). 여성의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 여성연구, 7(9), 177-221.
- 이은주. (2017). 수술 후 암 환자가 인식한 간호의 질과 통증, 불안,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승주, & 문승현.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129-155.
- 이진숙, & 김태원. (2014). 독일의 저출산문제와 최근 대응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8(1), 3-26.
- 이혜정, & 유규창. (2011).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0, 37-79.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 년~ 2016 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 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장민영, & 박선희. (2021). 유아인구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개발 연구. *교육 과학연구*, 52(3), 95-116.
-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 권보라. (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9(2), 63-72.
- 장인수, & 우해봉. (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보건복지부.
- 전승봉. (2018). 행복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의 질, 신뢰,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8), 279-322.
- 정보람, & 이학준. (2021). 분야별 정부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문화 재정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4, 29-52.
- 정성호. (2009).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사회과학연구*, 48(2), 1-22.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 연구*, 8(2), 36-64.
- 정순돌. (1999).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망 치료. *노인복지연구*, 6, 177-205.
- 정순돌, &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 정은영. (2012).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 정혜원, & 전현정. (2015). 모의실험을 이용한 3-수준 다층성장모형과 3-수준 다중소속다층성장모형의 비교. *교육연구논총*, 36(3), 101-121.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04-139.
- 조명덕. (2010).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 조선주, 박선영, 김영숙, 김난주, 이동선, 권도연, & 황현숙. (2020). 근로자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실태조사, 2018.
- 조영주. (2015). 노인복지관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39(3), 193-221.
- 진미정, 노신애, & 소효종. (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건강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5(3), 113-126.
- 진미정, & 성미애. (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1-14.
- 차경호. (1995).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113-143.
- 최상준, & 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93-114.
- 최성재. (1986).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한국사회복지학*, 7, 147-165.
- 최성혁, & 오창섭. (2012). 경주시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과제. *경주연구*, 21(2), 59-83.
- 최윤희. (2019).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과 사용환경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 스트레스와 과몰입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891-910.
- 최은영. (2016). 한국 유아교육의 최근 동향과 정책 과제. *육아정책연구*, 10(1), 221-240.
- 최정화. (2022). 독일의 일가정양립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32(1), 77-106.
- 최하영. (2022). 일·생활 중첩시간을 고려한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과 일·생활 균형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통계청. (2021). KOSIS 국가통계포털.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0). KOSIS 국가통계포털. 대전: 통계청.
- 하민지, & 권기현. (2010). 보육서비스 이용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이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231-256.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사회복지연구*, 33, 237-272.
- 홍승아, 김은지, & 이영미. (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 황나미. (2007).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2), 122-141.
- 황보람, 조향숙, 김정자, & 오설미. (2018). 여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3), 99-124.
- 황성훈, 이효주, 김종호, & 우일웅. (2020).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환자의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특성 분석. *Crisisonomy*, 16(9), 13-23.
- 황정은, & 한송이. (2017).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과 사회적 지지, 가족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4), 75-103.
- 현정환. (2005). 저출산 시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 *한국보육학회지*, 5(2), 157-170.
- 홍성희. (202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5(2), 41-52.

## 2. 국외문헌

- Abendroth, A. K., & Den Dulk, L. (2011). Support for the work-life balance in Europe: The impact of state, workplace and family support on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34-256.
- Ahmad, W. I., & Atkin, K. (1996). "Race" and Community Care." *Race," Health and Social Care Series*. Open University Press, 1900 Frost Road, Suite 101, Bristol, PA 19007 (paperback: ISBN-0-335-19462-1; clothbound: ISBN-0-335-19463-X); Open University Press, Celtic Court, 22 Ballmoor, Buckingham, England, United Kingdom MK18 1XW.
-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 Alesina, A., Di Tella, R. D. and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10), 2009-2042.
-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
- Almond, G. A., & Verba, S. (1963). *Political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 Azar, O. H. (2004). What sustains social norms and how they evolve?: The case of tipp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1), 49-64.
- Balanchflower, David G. & Oswald, Andrew(2000).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7487.

- Balbo, N., Billari, F. C., & Mills, M. (2013).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A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eenne de demographie*, 29(1), 1-38.
- Bassani, C. (2009). Young people and social capital. In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pp. 90-96). Routledge.
- Beatton, D. A. (2011). *The economics of happiness: A lifetime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Beck, U. (2002). The cosmopolitan society and its enemies. *Theory, culture & society*, 19(1-2), 17-44.
- Beck, U. (2009). *Critical theory of world risk society: a cosmopolitan vision*. *Constellations*, 16(1), 3-22.
- Becker.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New York, N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istributed by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cker.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kkers, R., Völker, B., Van der Gaag, M., & Flap, H. (2008). Social networks of participants in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capital: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185-205.
- Bertolini, S., & Musumeci, R. (2022). *Doing research on work-life balance*. In *Research Handbook on Work - Life Balance*. Edward Elgar Publishing.
- Bian, M., &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 Billari, F. C. (2008).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oring the causes*

- and finding some surpris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2-18.
- Bjørnskov, C. (2003). Corruption and social capital (pp. 03-13). Aarhus: Aarhus School of Business.
- Bjø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1), 22-40.
- Boeckmann, I., Misra, J., & Budig, M. J. (2015). Cul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haping mothers'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in postindustrial countries. *Social Forces*, 93(4), 1301-1333.
- Bourdieu, P. (1986). The force of law: Toward a sociology of the juridical field. *Hastings LJ*, 38, 805.
- Bourque, L. B., Clark, V. A., & Clark, V. (1992). Processing data: The survey example (No. 85). Sage.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 Brown, S. L., Manning, W. D., & Payne, K. K. (2016).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economic well-being: Incorporating same-sex cohabiting mother famil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1), 1-21.
- Brubaker, T. H. (Ed.). (1990).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Vol. 64). Sage.
- Bryant, J. (2007).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and the evidence from development indicato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01-127.
- Bryk, A. S., & Raudenbush, S. W. (199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Clark, A.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323-351.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Clark, S. C. (2001). Work cultures and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48-365.
- Compton, W. C. (2001). The values problem in subjective well-being.
- Cons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 Farley, J. (2008). An integrative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Research, and Policy*. [Online], 1.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unney, K. A., & Perri III, M. (1991). Single-item vs multiple-item measur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 reports*, 69(1), 127-130.
- D'Addio, A. C., & d'Ercole, M.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7, 1-93.
- Daly, M. (2022). The resilience of maternalism in European welfare states.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13.
- Dasgupta, P. (2001).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tics. *Beijer international institute of ecological economics*.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Gohm, C. L., Suh, E., & Oishi, S. (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4), 419-436.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Diener, M. L., & Diener McGavran, M. B. (2008). What makes people happy?: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on family relationships and well-being.
- Dolan, P., Peasgood, T., &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94-122.
- Douglas, J., Douglas, A., & Barnes, B. (2006). Measuring student satisfaction at a UK university.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 Duncan, G. J., and Raudenbush, S. W. (1999). Assessing the effects of context in studies of child and youth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29-41.
- Dutt, A. K., & Radcliff, B. (Eds.). (2009).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Edward Elgar Publishing.
- Easterlin, R. A. (1968). The American baby boom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Population, labor force, and long swings in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experience* (pp. 77-110). NBER.
-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Edwards, B., & Foley, M. W. (1998).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beyond Putna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124-139.
- Ezra, M., & Deckman, M. (1996). Balancing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Flextime and child care in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 Administration Review, 174-179.
- Fahey, T., & Smyth, E. (2004). Do subjective indicators measure welfare? Evidence from 33 Europea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6(1), 5-27.
- Ferragina, E. (2019). Does family policy influence women's employment?: Reviewing the evidence in the field. *Political Studies Review*, 17(1), 65-80.
- Flores, F., & Solomon, R. (2001). Building trust: In business, politics, relationships, and life. Oxford Scholarship Online.
- Flouri, E. (2004). Subjective well-being in midlife: The role of involvement of and closeness to parents in childh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4), 335-358.
- Fordyce, M. W. (1972). Happiness, its daily variation and its relation to value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Fortier, D., Leung, A., & Verreault, E. (2015). The Truth about Trust: Psychology of Emotions, Actions and Inspiration., 97.
- Freedman, R. (1979).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A reappraisal. *Social forces*, 58(1), 1-17.
- Frone, M. R. (2000). Work - family conflict and employee psychiatric disorders: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888.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 74, 89.
- Gambetta, D. (198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 Gangl, M., & Ziefle, A. (2015). The making of a good woman: Extended parental leave entitlements and mothers' work commitment in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2), 511-563.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3), 323-346.
-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Goldstein, M. C., Jiao, B., Beall, C. M., & Tsering, P. (2002).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rural Tibet. *The China Journal*, (47), 19-39.
- Graham, Carol and Pettinato, Stefano(2001). Happiness, Markets, and Democracy: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237-268.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 - 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Grzywacz, J. G., Arcury, T. A., Marín, A., Carrillo, L., Burke, B., Coates, M. L., & Quandt, S. A. (2007). Work-family conflict: experiences and health implications among immigrant Latino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4), 1119.
-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Guttmacher, A. F. (1956). Factors affecting normal expectancy of concep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1(9), 855-860.
-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169-216.

- Hallgren, E., & Risman, B. J. (2022). Research on work-life balance: a gender structure analysis. *Research Handbook on Work - Life Balance*, 50-71.
- Havighurst, R. J. (1968).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 Helliwell, J. F., Huang, H., & Wang, S. (2019). Changing world happiness. *World happiness report, 2019*, 11-46.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oleyannavar, P. G., & Khadi, P. B. (2014). Interrelationship of marital and job satisfaction of University teachers. *Karnataka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s*, 26(2).
-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 Hughes, E. G., Fedorkow, D. M., & Collins, J. A. (1993). A quantitative overview of controlled trials in endometriosis-associated infertility. *Fertility and sterility*, 59(5), 963-970.
- Hughes, M., Morgan, R. E., Ireland, R. D., & Hughes, P. (2014). Social capital and learning advantages: A problem of absorptive capacity.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8(3), 214-233.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postmodern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risk.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3), 449-459.
- Inglehart, Ronald & Klingemann, Hans-Dieter(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d Diener & Eunkook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 Iwatsubo, Y., Derriennic, F., Cassou, B., & Poitrenaud, J. (1996).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st retired people in Paris. *International*

- Journal of Epidemiology, 25(1), 160-170.
- Johnston, K., Tanwar, J., Pasamar, S., Van Laar, D., & Bamber Jones, A. (2022). Blurring boundaries: work-life balance and unbounded work in academia. The role of flexibility, organisational support and gender. *Labour and Industry*, 1-17.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Kawachi, I., Kim, D., Coutts, A., & Subramanian, S. V. (2004). Health by association? Social capital,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health-Commentary: Reconciling the three accounts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82-690.
- Kennan, W. R., & Hazleton, V. (2006). Internal public relations, social capital, and the role of effectiv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theory II*, 311-338.
- Khodyakov, D. (2007). Trust as a process: A three-dimensional approach. *Sociology*, 41(1), 115-132.
- Kim, J., & Wiggins, M. E. (2011). Family friendly human resource policy: is it still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5), 728-739.
- King, G., & Zeng, L. (2001). Logistic regression in rare events data. *Political analysis*, 9(2), 137-163.
- Kline, R. B.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Kohler, H. P., Ortega, J. A., & Billari, F. C. (2001). Towards a theory of lowest-low fertility (No. WP-2001-032).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 Kohler, H. P., Billari, F. C., &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 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ohler, H. P., Billari, F. C., & Ortega, J. A. (2006).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48-109.
- Kunze, A. (2020). The effect of children on male earnings and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8(3), 683-710.
- Kutteh, W. H., Yetman, D. L., Carr, A. C., Beck, L. A., & Scott Jr, R. T. (1999). Increased prevalence of antithyroid antibodies identified in women with recurrent pregnancy loss but not in women undergoing assisted reproduction. *Fertility and sterility*, 71(5), 843-848.
- Lelkes, O. (2006). Knowing what is good for you: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preferences and the “objective good”.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285-307.
- Lesthaeghe, R., & Van De Kaa, D. (1986). *Bevolking: Groei en krimp*.
- Leung, S. O. (2011). A comparis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normality in 4-, 5-, 6-, and 11-point Likert scal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4), 412-421.
- Lewis, J. (2009). *Work-family balance, gender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 Lin, 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Lin, N., Cook, K. S., & Burt, R. S. (Ed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Transaction Publishers.
- Little, R. J., & Rubin, D. B. (2002). Bayes and multiple imputation.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200-220.
- Loury, G. C. (1987). Why should we care about group inequa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5(1), 249-271.
- L. Sousa and S. Lyubomirsky, Life satisfaction. In J. Worell. (Ed.),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2, pp.667-676, San Diego,

- CA: Academic Press. 2001.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616.
- Lutz, W. (2008). Has Korea's fertility reached the bottom? The hypothesis of a 'low fertility trap' in parts of Europe and East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4(1), 1-4.
- Lutz, W., O'Neill, B. C., & Scherbov, S. (2003). Europe's population at a turning point. *Science*, 299(5615), 1991-1992.
- Lutz, W., Testa, M. R., & Penn, D. J. (2006). Population density is a key factor in declining human fertility. *Population and Environment*, 28(2), 69-81.
-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 Lyubomirsky, S.,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85-510.
- MacDonald, R., and Marsh, J. (2005). *Disconnected Youth?: Growing Up in Britain's Poor Neighborhoods*. Palgrave Macmillan.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 Newton, K. (2007).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 North, D. C. (1990). A transaction cost theory of politic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4), 355-367.
- O'Connell, M. (2004). Fairly satisfied: Economic equality, wealth and satisfac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3), 297-305.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 Pacek, A., & Radcliff, B. (2008).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2), 267-277.
- Palmore, E., & Luikart, C. (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8-80.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erry Jenkins, M., & Gerstel, N. (2020). Work and family in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420-453.
- Pohl, A., and Walther, A. (2007). Activating the disadvantaged. Variations in addressing youth transitions across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long Education*, 26(5), 533-553.
- Poortinga, W. (2006). Social relations or social capital? Individual and community health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63(1), 255-270.
- Portes, A. (2000, March).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In *Sociological forum* (Vol. 15, No. 1, pp. 1-12). Kluwer Academic Publishers-Plenum Publishers.
- Powdthavee, N. (2008). Putting a price tag on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urs: Using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o value soci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4), 1459-1480.

- Priyanto, P. H. (2014). Subjective well-being pada remaja ditinjau dari kesadaran lingkungan. *Psikodimensia*, 13(1), 10.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4).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and K.A. Goss (2002) 'Introduction', in R. Putnam (ed.)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pp. 1-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udenbush, S. W., & Liu, X. F. (2001). Effects of study duration, frequency of observation, and sample size on power in studies of group differences in polynomial change. *Psychological methods*, 6(4), 387.
- Ream, R. K. (2005). Toward understanding how social capital mediates the impact of mobility on Mexican American achievement. *Social forces*, 84(1), 201-224.
- Reimer, B., Lyons, T., Ferguson, N., & Polanco, G. (2008). Social capital as social relations: the contribution of normative structures. *The Sociological Review*, 56(2), 256-274.
- Robertson, M., & Roy, A. S. (1982). Fertility,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An Empirical Test of the Easterlin Wachter Model on the Basis of Canadian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1(4), 339-350.
- Rodríguez-Pose, A., & Von Berlepsch, V. (2014).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happiness in Eur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2), 357-386.

- Rothstein, B., & Stolle, D. (2001, September). Social capital and street-level bureaucracy: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In "Trust in Government Conference" at the Centre for the Study of Democratic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 Rus, A. and Igllic, H. (2005). Trust, governance and performance: The role of institutional and interpersonal trust in SME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ology*, 20(3), 371-39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
- Sahu, K.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ale and female adults.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4), 525.
- Saltzstein, A. L., Ting, Y., & Saltzstein, G. H. (2001). Work family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family friendly policies on attitudes of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52-467.
- Schafer, J. L. (1999). Multiple imputation: a primer.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8(1), 3-15.
- Schneider, E. L., & Mitsui, Y. (1976). The relationship between in vitro cellular aging and in vivo human a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73(10), 3584-3588.
- Segageldin, Ismail · Grootaert, Christian,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 Segageldin (엮음),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The World Bank, 2000).
- Seligson, J. L., Huebner, E. S., & Valois, R. F. (2003).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BMSL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2), 121-145.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2002), 3-12.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 475-492.
- Simmel, G. (1950).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Vol. 92892). Simon and Schuster.
- Sirgy, M. J. (1986). A Quality of 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Quality'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a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5(3), 329-342.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 Spreitzer, E., & Snyder, E. E. (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4), 454-458.
- Sundström, M., & Stafford, F. P. (1992).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and public policy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eenne de Demographie*, 8(3), 199-215.
- Teitelbaum, M. S., Winter, J., & Longman, P. (2004). Demography Is Not Destiny-The Real Impact of Falling Fertility. *Foreign Aff.*, 83, 152.
- Thévenon, O.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57-87.
- Thompson, R. C., Montena, A. L., Liu, K., Watson, J., & Warren, S. L. (2022). Associations of Family Distress, Family Income, and Acculturation on Pediatric Cognitive Performance Using the NIH Toolbox: Implications for Clinical and Research Settings.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37(4), 798-813.
- Tisenkopfs, T., Lace, I., Mierina, I., Ploeg, J. D., & van der i Marsden, T. (2008). *Unfolding Webs: The Dynamics of Regional Rural Development*.

- Uphoff, 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215.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Available at SSRN 824504.
- Van Deth, J. W., & Zmerli, S. (2010). Introduction: Civicness, equality, and democracy – A “dark side”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5), 631-639.
- Van der Ploeg, J. D., Van Broekhuizen, R. E., Brunori, G., Sonnino, R., Knickel, K., Tisenkopfs, T., & Oostindië, H. A. (2008). Toward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regional rural development. In *Unfolding webs—the dynamics of regional rural development* (pp. 1-28). Koninklijke Van Gorcum.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59.
- Wadsworth, L. L., & Owens, B. P. (200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work - family enhancement and work - family conflict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75-87.
- Westoff, C. F. (1983). Fertility decline in the West: Causes and prospe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9-104.
- Whitley, R., & McKenzie, K. (2005). Social capital and psychiatry: review of the literatur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3(2), 71-84.
- Williams, M. (2001). In whom we trust: Group membership as an affective context for trust develop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3), 377-396.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World Bank, (2019), [elibrary.worldbank.org](http://elibrary.worldbank.org).
-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Wang, J., &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부록 1

설문지

I.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문항	구분
건강상태(Q47) All in all, how would you describe your state of health these days? Would you say it is...	1.- Very good
	2.- Good
	3.- Fair
	4.- Poor
	5.- Very poor
재정 만족도(Q50)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your household? If '1' means you are completely dissatisfied on this scale, and '10' means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here would you put your satisfaction with your household's financial situation?	10.- Satisfied
	9.-9
	8.-8
	7.-7
	6.-6
	5.-5
	4.-4
	3.-3
	2.-2
	1.- Dissatisfied
성별(Q260) Respondent's sex	1.- Male
	2.- Female
나이(Q262) This means you are XX years old? Numeric variable - numbers of years	
가구원수(Q270)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household, including yourself and children?	1.- 1
	2.- 2
	3.- 3
	4.- 4
	5.- 5
	6.- 6
	7.- 7 persons or more

결혼여부(Q273) Marital status Are you currently ....	1.- Married 2.- Living together as married 3.- Divorced 4.- Separated 5.- Widowed 6.- Single
교육수준(Q275) What is the highest educational level that you have attained?	0.-Early childhood education/no education 1.- Primary education 2.- Lower secondary education 3.- Upper secondary education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6.- Bachelor or equivalent 7.- Master or equivalent 8.- Doctoral or equivalent
주관적 계층의식(Q287) People sometimes describe themselves as belonging to the working class, the middle class, or the upper or lower class.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belonging to the	1.- Upper class 2.- Upper middle class 3.- Lower middle class 4.- Working class 5.- Lower class
종교(Q289) Do you belong to a religion or religious denomination? If yes, which one?	0.- Do not belong to a denomination 1.- Roman Catholic 2.- Protestant 3.-Orthodox (Russian/Greek/etc.) 4.- Jew 5.- Muslim 6.- Hindu 7.- Buddhist 8.- Other Christian (Evangelical/Pentecostal/Free church/etc.) 9.- Other

## II. 출산을 문항

자녀수(Q274) Have you had children? If yes, how many?	0.- No children
	1.- 1 child
	2.- 2 children
	3.- 3 children
	4.- 4 children
	5.- 5 children
	6.- 6 children
7.- 7 or more children	

## III. 행복감 문항

행복감(Q46) Taking all things together, would you say you are:	1.- Very happy
	2.- Quite happy
	3.- Not very happy
	4.- Not at all happy

## IV. 삶 만족도 문항

삶 만족도(Q49)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	10.- Completely satisfied
	9.-9
	8.-8
	7.-7
	6.-6
	5.-5
	4.-4
	3.-3
	2.-2
	1.- Completely dissatisfied

## V. 사회자본 문항

	사적 대인신뢰(문항)	구분
신뢰 Q58 I 'd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Your family		1.- Trust completely
		2.- Trust somewhat
		3.- Do not trust very much
		4.- Do not trust at all

	Q59 I 'd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Your neighborhood	1.- Trust completely
		2.- Trust somewhat
		3.- Do not trust very much
		4.- Do not trust at all
	Q60 I 'd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People you know personally	1.- Trust completely
		2.- Trust somewhat
		3.- Do not trust very much
		4.- Do not trust at all
	사회적 대인 신뢰	구분
신뢰	Q61 I 'd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People you meet for the first time	1.- Trust completely
		2.- Trust somewhat
		3.- Do not trust very much
		4.- Do not trust at all
	Q62 I 'd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People of another religion	1.- Trust completely
		2.- Trust somewhat
		3.- Do not trust very much
		4.- Do not trust at all
	Q63 I 'd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People of another nationality	1.- Trust completely
		2.- Trust somewhat
		3.- Do not trust very much
		4.- Do not trust at all

	사회 조직신뢰(문항)	구분
신 뢰	Q64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he Churches (mosque, temple etc.)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66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he pres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67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elevision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68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Labour Union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77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Major Companie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79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80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Women's organization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81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Charitable 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신뢰	정부 조직 신뢰(문항)	구분
	Q65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he armed force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69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he police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70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he court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71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The government (in your nation's capital)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72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Political Parties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Q73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Parliament	1.- A great deal
		2.- Quite a lot
		3.- Not very much
		4.- None at all
관계망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문항)	구분
	Q94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Church or religious organization	0.- Don't belong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95	0.- Don't belong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Sport or recreational organization, football/baseball/rugby team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96	0.- Don't belong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Art, music or educational organization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관 계 망	공식적 집단 관계망(문항)	구분
	Q97	0.- Not a member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Labour Union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98	0.- Not a member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Political party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99	0.- Not a member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Environmental organization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100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Professional association	0.- Not a member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101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Humanitarian or charitable organization	0.- Not a member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Q102 Now I am going to read out a list of voluntary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 member,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type of organization? Consumer organization	0.- Not a member
		1.- Inactive member
		2.- Active member
규 범	문항	구분
	Q177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whether you think i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 using this card. - Claiming government benefits to which you are not entitled	1.- Never justifiable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Always justifiable		

Q178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whether you think i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 using this card. - Avoiding a fare on public transport	1.- Never justifiable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Always justifiable
Q180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whether you think i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 using this card. Cheating on taxes if you have a chance	1.- Never justifiable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Always justifiable
Q181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whether you think i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 using this card. Someone accepting a brib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1.- Never justifiable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Always justifiable

설문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WVS2020(World Value Survey)자료 중 2020년 7차 조사표의 일부를 발췌하여 2020년 제7차 조사 시점으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